

발 간 등 록 번 호

11-1051000-000112-09



#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

-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
-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
-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



대한민국정부

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



#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

-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사정에 따라 시행일자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



대한민국 정부  
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



# 목 록

## ◇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◇

### 1. 세 제 ..... 3

-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 / 3
- 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/ 4
-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 중 기본교육 사전 이수 의무 폐지 / 5

### 2. 금융 ..... 6

-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 / 6
-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및 이용한도 합리화 / 7
- 「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」 시행 / 8
-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 / 9

### 3. 산업(중소기업·특허) ..... 10

-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산업 단지제도 개선 / 10
-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/ 11
-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향조정 / 12
- 외국 리콜제품에 대한 사업자보고 의무화 / 13
- 우정서비스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 확대 / 14

-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사업 확대 / 15
- 동업종 또는 이업종간의 소규모 협동 조합에 협업사업 지원 / 17
-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/ 18
-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 확대 및 자동화기기(ATM) 납부 특허 수수료 확대 / 19
- 특허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청 인증체계 개선 / 20

### 4. 환경·국토 ..... 21

-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 / 21
- 「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」 시행 / 22
- 수시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시행 / 23
-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확인검사대행자를 전문정비사업으로 통합 / 24
-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 / 25
- 미세먼지 예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 / 26
- 자원순화사회 구축을 위한 음폐수 해양 배출 금지 / 27
- 감정평가의 투명성·객관성 제고를 위한 “감정평가기준” 명확화 / 28

-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시행 / 29
- 국민이 참여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공개 시스템 도입 / 30
-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 / 32
-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/ 33
- 소형 · 저가주택의 청약 가점제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/ 34
-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 요건 완화 / 35
-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/ 36
-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 (<http://nhf.mltm.go.kr>) 서비스 개시 / 37
- 아파트 관리,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 / 38
- 공동주택 주민공동 시설 총량제 도입 / 39
-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 / 40
-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/ 41
- 지도 · 영상이 중첩된 PDF 방식의 지도 제작 및 배포 / 42
- 감리전문회사의 입찰 부담 완화 및 선정 기준의 공정성 제고 / 43
- 감리원 복지향상 및 합리적인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정립 / 44
-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 사용 기준 마련 / 45
- 행정복합도시 예정 지역 내 외국교육 기관 설립 허용 / 46
- 기업도시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 / 47
-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 조정 / 48
-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‘새만금개발청’ 신설 / 49
- 도시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 / 50
- 민간자본을 이용한 도시공원조성 활성화 / 51
- 반쯤으로 말소 등록된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반쯤차량임을 구매자에게 고지의무 신설 / 52
-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 · 정비 · 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에 통지의무 신설 / 53
- 자동차에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 (TPMS) 설치 의무화 / 54
-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대상 확대 / 55
-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/ 56
-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/ 57
-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20년 (1회 연장)까지 국유지 임대 / 58
-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 / 59
-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제도 시행 / 60
-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/ 62
- 복합물류터미널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 방식 전환 / 63
- 과징금 · 벌금 병과 제도 개선 / 64
- 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 / 65
- 직접운송의무비율제,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 / 66
-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시행 / 67

- 회전익항공기의 크기에 따라 헬기장 활주로 길이·폭을 변경 / 68
- 육상헬기장 갯길 설치 의무화 삭제 / 69
-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공항시설물 지정 및 비상 대처계획 수립 / 70
- 공항운영 민간운영자도 가능해 진다 / 71
-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/ 72
-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 관리 시행 / 73
- 육상발생폐기물 중 해양배출 허용대상 폐기물 축소 / 74

## 5. 보건복지·여성(법무) ..... 75

-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/ 75
-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항목 확대 / 76
- 의료급여 회귀난치성 질환 추가 및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/ 77
-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/ 78
- 음식점 외부가격 표시 등 가격 표시제도 개선 / 79
-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등 / 80
-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/ 81
-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/ 82
-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/ 83
-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기관 확대 / 84
-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/ 86
- 만 3~5세 어린이 쏠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 / 87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 완화 / 88

-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보고 기관 통합 운영 / 90
- 국립중앙청소년디딤 센터 운영 / 91
- 청소년지도사·청소년 상담사 보수교육 의무화 / 92
-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/ 93
-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/ 94
-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/ 95
-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·관리 강화 / 97
-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 변호인 제도 시행 / 99
- 성폭력 피해 아동·장애인 위한 진술 조력인 제도 도입 / 100
- 자녀의 복리를 위한 친권제도의 개선 / 101
- 아동의 복리를 위한 입양제도의 개선 / 102

## 6. 고용노동 ..... 103

-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원대상 업종 확대 / 103
-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/ 104
- (예비)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비율 변경 / 105
-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화 / 106
-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및 산정 기준 세분화 / 107
- 장애대학생에게 기업 직무체험 기회 제공 / 109
- 특수학교(급)학생에게 일반사업체에서 현장실습 훈련 지원 / 110

- 워크투게더센터 전국 확대 운영 / 111
  -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/ 112
  - 최저임금액 인상 / 113
  -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법정퇴직금 수준으로 상향 적용 / 114
  -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/ 115
  - 안전인증·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·기구 확대 조정 / 116
  -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 / 117
  - 석면해체·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/ 118
  -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/ 119
  -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확대 / 120
- 7. 행정안전(소방·경찰) ..... 121**
-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 시행 / 121
  -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 및 시험과목 변경 / 122
  - 개정 경범죄 처벌법 시행 / 123
- 8. 보훈·국방 ..... 124**
-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/ 124
  - 군 책임운영기관 확대 지정 / 125
  - 평시 예비역 장교·부사관의 현역 재임용 / 126
  - 한시계약군무원 채용제도 마련 / 127
  - 병 진급 최저복무 기간 조정 / 128
  - 여성군인의 모성보호 강화제도 마련 / 129
  - 예비군훈련 통지방법 개선 / 130
  -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시행 / 131
  - 연대급 통합예비군 훈련장 시험 운영 / 132
  - 병 봉급 인상 / 133
  - 군인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/ 134
  - 현역병 복무기간 중 건강검진 전면 확대 / 135
  - 군 병원 외래진료 셔틀 운행 확대 / 136
  - A형간염백신 접종 확대 / 137
  - 군 작전차량 유료도로 통행절차 개선 / 138
  - 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적용 / 139
  - 방산원가 계산 시 생산성경영 인증에 대한 추가이윤 보상 / 140
  - 방산원가 계산 시 상용품 적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/ 141
  -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·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/ 142
  -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방산수출에 대한 지원 확대 / 143
  -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확대 / 144
  - 「군용항공기 비행 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」 개정 / 145
  - 업체 생산 및 정비 능력 확인체계 강화 / 146
  - 중앙신체검사소 대구 혁신도시 이전 / 147
  - 장애인 등록자에 대한 병역감면 절차 강화 / 148
  - 해양경찰순경(전환복무) 모집 및 선발 업무 해양경찰청 이관 / 149
  - 자녀가 있는 사람의 상근예비역 편입 범위 확대 / 150
  - 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 분야 선택기준 조정 / 151
  -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 및 절차 개선 / 152



- ‘유학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  
연령 상향 조정 / 153
- 국외여행허가자의 국내 장기체재시  
허가 취소 / 154
- 「병역명문가 찾기」 접수 3월에서  
2월로 변경 / 155
- 병역명문가, 남성이 없는 경우 군복무  
마친 여성 등 포함 / 156

## 9. 교육·문화(방송통신) ..... 157

- 교육감 소속 교육 전문직원의 지방직화  
/ 157
- 시·도교육청 총액 인건비 전면 시행  
/ 158
- 5세 누리과정을 만 3-4세까지 확대  
시행 (‘13.3월) / 159
- 저소득층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  
절차 개선 / 160
- 방과후학교 자유수 강권 지원 확대 / 161
- 교직 적합한 인재 양성 및 선발을 위해  
교원자격 검정 강화 및 신규채용  
제도 개선 / 162
-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 
사업 추진 / 163
-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문화  
예술교육사 제도 시행 / 164
- 유상포인트 및 전자 대금지급 관련  
콘텐츠 이용자보호 강화 / 166
-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전면 실시 / 167
- 청각·언어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  
서비스 ‘107 손말이음’ 개통 / 168
- 700MHz 주파수 대역 에서 동작하는 무선  
마이크의 사용 종료 / 169
-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도 강화 / 170
-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 
정보 보호 인증 강화 / 171

## 10. 농식품·산림 ..... 172

-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을 통한 열악한  
농어촌 주거여건개선 / 172
-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·운영 / 173
- ‘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’로 우수기업에  
다양한 혜택 제공 / 174
-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 및  
표시 방법 등 개선 / 175
- 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 / 177
-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농어업  
관련 지원 우대 확대 / 178
-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시 연령  
규제 개선 / 179
- 농지은행사업 지원 대상자의 연령  
제한을 완화 / 180
- 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단계적  
(‘13~’16년)으로 전환하고, 축산업  
등록 대상 축종을 확대 / 181
- 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 
추진 / 182
-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/ 183
-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확대 시행 / 184
- 어선표지판 부착제도를 전국단위로  
일원화 및 부착대상 확대 / 185
-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시범사업  
대상 범위 확대 / 186
- 친환경수산물 인증 제도 개편 / 187
- 어촌관광 활성화 및 어촌지역 경제  
활성화를 위한 어촌·어항법 개정 / 188
- 수협중앙회의 정상 조합에 대한 부실  
예방 대책 강화 / 189

- 서해5도 백령도 대 · 소청도 주변어장 확장 / 190
-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기준 완화 / 191
- 친환경 농식품 인증 제도 통합 · 일원화 / 192
- 비료 생산 · 수입업자 비료 제조 원료 장부기재 의무화 / 193
-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/ 194
-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 / 195
- 농어업 FTA 보완대책 성과 및 투융자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 / 196
- 벌채·제재·유통 등 목재생산업 등록 제도 도입 / 197
- 산림교육전문가(숲해설가, 유아숲지도사, 숲길체험 지도사) 자격증 발급 / 198
-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 지정범위 축소(3 → 2km) / 199

## ◇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◇

### ○ 기획재정부 ..... 203

### ○ 교육과학기술부 ..... 203

1.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지방직화 / 203
2. 시·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시행 / 203
3. 5세 누리과정을 만 3·4세까지 확대 시행 / 204
4. 저소득층 초·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/ 204
5.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/ 204
6. 교원자격 검정 강화하고, 신규채용제도 개선 / 205

### ○ 법무부 ..... 206

1.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/ 206
2.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/ 206
3. 친권제도 개선 / 206
4. 입양제도 개선 / 207

### ○ 국방부 ..... 207

1. 군 책임운영기관 추가지정 / 207
2. 평시 예비역 장교·부사관의 현역 재임용 / 207
3. 한시계약군무원 채용제도 마련 / 207
4. 병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 / 208
5. 여성군인 모성보호 강화제도 마련 / 208
6. 예비군훈련 통지방법 개선 / 208
7.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시행 / 208
8. 연대급 통합예비군훈련장 시험운영 / 209
9. 병 봉급 인상 / 209
10.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/ 209
11. 현역병 복무기간 중 건강검진 전면 확대 / 209

12. 군 병원 외래진료 서틀 운행 확대 / 210

13. A형간염백신 접종확대 / 210

14. 군 작전차량 유료도로 통행절차 개선 / 210

### ○ 행정안전부 ..... 210

1.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 / 210
2. 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/ 211

### ○ 문화체육관광부 ..... 211

1.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/ 211
2.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 / 211
3. 유상 포인트 및 전자 대금지급 관련 콘텐츠 이용자보호 강화 / 211

### ○ 농림수산식품부 ..... 213

1.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을 통한 열악한 농어촌 주거여건개선 / 213
2.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·운영 / 213
3.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로 우수기업에 다양한 혜택 제공 / 213
4.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 방법 등 개선 / 214
5. 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 / 214
6.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지원 우대 확대 / 214
7.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시 연령 규제 개선 / 215
8. 농지은행사업 지원대상자의 연령제한을 완화 / 215
9. 축산업 허가제 시행 및 가축사육업 등록제 대상 확대 / 215

10. 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  
사업 추진 / 216
11.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시행 / 216
12.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, 돼지에  
확대 / 216
13. 어선표지판을 전국단위로 개선하고,  
부착대상을 확대 / 216
14.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범위  
확대 / 216
15.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 / 217
16. 어촌어항법 개정 / 217
17. 수협중앙회의 정상조합에 대한 부실  
예방 대책 강화 / 217
18. 서해5도 백령, 대·소청도 주변어장  
확장 / 217
19.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기준  
완화 / 218
20.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·  
일원화 / 218
21. 비료 생산·수입업자 비료 제조 원료  
장부 기재 의무화 / 218
22.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/ 218
23.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 
체계적으로 지원 / 219
24. FTA 지원대책 성과 및 투융자계획  
국회 제출 / 219

#### ○ 지식경제부 ..... 219

1.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산업  
단지제도 개선 / 219
2.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  
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/ 220
3.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 
비율 상향조정 / 221

4. 외국 리콜제품에 대한 사업자보고  
의무화 / 221
5. 우정서비스의 업무전문성 제고를  
위해 업무위탁 확대 / 221

#### ○ 환경부 ..... 221

1.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  
/ 221
2. 「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 
등에 관한 규정」 시행 / 221
3. 수시점검 방법 추가 / 222
4.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제도 / 222
5.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 / 222
6. 미세먼지 예보 / 222
7.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/ 223

#### ○ 보건복지부 ..... 223

1.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취약  
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/ 223
2.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/ 224
3.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추가 및  
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/ 224
4. PC방 흡연 전면 금지 / 224
5. 음식점 외부가격 표시등 표시제도 개선  
/ 225
6.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확대 / 225
7.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 
/ 225
8.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등록  
시행 / 227
9. 장애인가동 재활치료 서비스 대상 확대  
/ 227
10.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/ 227
11.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/ 227

12. 만 3~5세 어린이 쏠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 / 228
13.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완화 / 228

#### ○ 국토해양부 ..... 229

1. 감정평가기준 명확화 / 229
2.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 / 230
3.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도입 / 230
4.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 / 230
5. 국민주택기금 대출소득요건 조정 / 231
6. 소형·저가주택의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/ 231
7.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 요건 완화 / 231
8.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/ 231
9. 국민주택기금 관련 정보통합제공으로 국민편익 증대 / 232
10. 아파트 관리,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 / 232
11.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/ 232
12.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 / 232
13.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/ 232
14. 지도·영상이 중첩된 PDF 방식의 지도 배포 / 233
15. 감리전문회사의 입찰부담 완화 및 선정기준의 공정성 제고 / 233
16.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정립 / 234
17.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 사용 기준 마련 / 234
18.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/ 235
19. 기업도시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 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 / 235
20. 기업도시 개발 재투자율 하향 조정 / 235
21. 새만금개발청 설립 / 235
22. 도시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조성 / 235
23. 민간공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다양화 / 236
24. 반품차량 판매시 반품차량 고지의무 신설 / 236
25. 차량 판매·정비·폐차 내역 통지 의무 신설 / 236
26.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/ 236
27. 최고속도제한장치 적용대상 확대 / 236
28. 보행자보호를 위한 상해기준 강화 / 237
29.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제도 도입 / 237
30. 향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예게 국유지 임대 / 237
31. 향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 / 237
32.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제도 시행 / 238
33.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/ 239
34.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방식으로 전환 / 239
35. 과징금·벌칙 병과 제도개선 / 239
36. 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 / 239
37. 직접운송의무비율제,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실제고제 / 240
38.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일부 변경 / 240
39. 헬기장 활주로 길이·폭 / 240
40. 육상헬기장 갯길 / 241
41.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공항시설물 지정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/ 241

42. 공항운영자 / 241
43.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/ 241
44.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 / 242
45.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상에 배출가능한 폐기물 / 242

#### ○ 여성가족부 ..... 243

1.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/ 243
2. 청소년지도사 ·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의무화 / 243
3. 저소득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/ 243
4.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무기관 확대 / 243
5. 성폭력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/ 243
6.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 · 관리 강화 / 244

#### ○ 고용노동부 ..... 245

1. 고용창출지원 사업 중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대상 업종 확대 / 245
2.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/ 245
3.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 변경 / 245
4.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규모 확대 / 245
5.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요건 차등적용 / 246
6. 장애인 부담기초액 인상 / 246
7. 장애인 부담기초액 산정기준 세분화 / 246
8. 장애인 고용부담금 최저임금액 부과 대상 확대 / 246
9.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실시 / 247

10.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 / 247
11. 워크투게더센터 운영 전국 확대 / 247
12.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/ 247
13. 최저임금액 인상 / 247
14.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 상향 / 247
15.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/ 248
16. 안전인증 대상 확대 / 248
17.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확대 / 248
18.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사업 도입 / 248
19. 석면해체 · 제거업자 안전성평가 실시 / 249
20.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('12.11.22. 국회 본회의 통과, 12월 중 공포 예정, 공포일부터 시행) / 249
21.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 보험 적용 확대 / 249

#### ○ 방송통신위원회 ..... 249

1.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 완전 종료 / 249
2. 통신중계서비스 번호 통합 및 명칭 변경 / 250
3.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 사용 종료 / 250
4.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강화 / 250
5.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화 / 251

#### ○ 국가보훈처 ..... 251

1.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/ 251

#### ○ 금융위원회 ..... 251

1.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 / 251

2.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및 이용  
한도 합리화 / 252
3. 「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」 시행 / 252
4.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 
관한 법률 시행 / 252

## ○ 관세청 ..... 252

1.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 중 기본교육  
사전 이수제도를 폐지 / 252

## ○ 병무청 ..... 253

1. 중앙신체검사소 대구혁신도시 이전 / 253
2. 장애인 등록자 병역감면 후속처리  
강화 / 253
3. 해양경찰 선발업무 해양경찰청  
이관 / 253
4. 자녀가 있는 사람의 상근예비역  
편입 범위 확대 / 253
5. 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 분야 선박  
기준 조정 / 253
6.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 및  
절차 개선 / 254
7. ‘유학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  
연령 상향 조정 / 254
8. 국외여행허가자의 국내 장기체재 시  
허가취소 / 254
9. 「병역명문가 찾기」 접수시기 변경 / 254
10. 병역명문가 선정기준 조정 / 254
11. 예술경연대회 공동수상자 등에 대한  
예술요원 추천기준 명확화 / 255
12. 사회복지시설 장의 직계비속 복무  
기관 지정 개선 / 255

## ○ 방위사업청 ..... 255

1. 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 
적용 / 255
2. 방산원가 계산 시 생산성경영 인증에  
대한 추가이윤 보상 / 255
3. 방산원가 계산 시 상용품 적용 등에  
대한 인센티브 제공 / 256
4.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·  
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/ 256
5.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방산수출에  
대한 지원 확대 / 256
6.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확대 / 256
7. 「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 
법률」 개정 / 257
8.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체계  
강화 / 258

## ○ 경찰청 ..... 258

1. 경범죄 처벌법 개정시행 / 258

## ○ 소방방재청 ..... 259

1.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 / 259
2.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  
및 시험과목 변경 / 259

## ○ 산림청 ..... 260

1.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도입 / 260
2. 산림교육 전문가자격증발급 / 260
3.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 
금지구역 지정범위 축소 / 260
4. 목재펠릿 보급 대상 확대 / 261

## ○ 중소기업청 ..... 261

1.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협력 기술  
개발사업 확대 / 261

2.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/ 261

○ 특허청 ..... 262

1. 중견기업 특허수수료감면제도 도입 / 262
2.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 확대 및 자동화기기(ATM) 납부 특허 수수료 확대 / 262
3. 특허청 인증체계 개선 / 262

○ 식품의약품안전청 ..... 262

1.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보고 기관 일원화 / 262



## ◇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◇

### '12년 하반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.

-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및 이용한도 합리화/7
-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용 상향조정/12
- 외국 리콜제품에 대한 사업자보고 의무화/13
- 우정서비스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 확대/14
-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/32
-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 (<http://nhf.mltm.go.kr>) 서비스 개시/37
-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/41
- 반품으로 말소 등록된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반품차량임을 구매자에게 고지의무 신설/52
- 국제물류추진업의 등록기준 신고제도 시행/60
- 국립중앙청소년디딤 센터 운영/91
-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화/106
-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/119
-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확대/120
- 군 작전차량 유료도로 통행절차 개선/138
- 업체 생산 및 정비 능력 확인체계 강화/146
- 중앙신체검사소 대구 혁신도시 이전/147
- 장애인 등록자에 대한 병역감면 절차 강화/148

- 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 조정/151
-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 및 절차 개선/152
- ‘유학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 연령 상향 조정/153
- 국외여행허가자의 국내 장기체재시 허가 취소/154
-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기준 완화/191
-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 구역 지정범위 축소(3→2km)/199

### '13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.

#### 1월

-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/3
- 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/4
-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/6
-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/9
- 동업종 또는 이업종간의 소규모 협동 조합에 협업사업 지원/17
-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/18
-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 확대 및 자동화기기(ATM) 납부 특허 수수료 확대/19
- 특허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청 인증체계 개선/20
-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/21

- 자원순화사회 구축을 위한 음폐수 해양 배출 금지/27
- 감정평가의 투명성·객관성 제고를 위한 “감정평가기준” 명확화/28
-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/33
- 소형·저가주택의 청약 가점제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/34
-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 요건 완화/35
-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/36
- 아파트 관리, 입주인 자율 크게 확대/38
- 감리전문회사의 입찰 부담 완화 및 선정 기준의 공정성 제고/43
- 감리원 복지향상 및 합리적인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정립/44
-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 사용 기준 마련/45
- 기업도시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/47
-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 조정/48
- 도시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/50
- 자동차에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 (TPMS) 설치 의무화 /54
-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/56
-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/57
- 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/65
- 직접운송의무비율제,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/66
-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시행/67
-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공항시설물 지정 및 비상 대처계획 수립/70
- 육상 발생 폐기물 중 해양배출 허용 대상 폐기물 축소/74
-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 표시 제도 개선/79
-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연금 지원 확대 등/80
-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/81
-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/82
-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/83
-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/86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 완화/88
-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보고기관 통합 운영/90
- 청소년지도사·청소년 상담사 보수교육 의무화/92
-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/93
-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원대상 업종 확대 /103
-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/104
- (예비)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 비율 변경/105
-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및 산정기준 세분화/107
- 장애대학생에게 기업 직무체험 기회 제공 /109
- 특수학교(급)학생에게 일반사업체에서 현장 실습 훈련 지원/110
- 워크투게더센터 전국 확대 운영/111
-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 요건 조정/112

- 최저임금액 인상/113
-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 
법정퇴직금 수준으로 상향 적용/114
-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/115
-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/117
- 석면해체·제거작업 안전성 평가/118
-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/124
- 군 책임운영기관 확대 지정/125
- 병 진급 최저복무 기간 조정/128
- 여성군인의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 
마련/129
- 예비군훈련 통지방법 개선/130
-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시행/131
- 병 봉급 인상/133
- 군인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/134
- 현역병 복무기간 중 건강검진 전면 확대  
/135
- 방산원가 계산 시 생산성경영 인증에  
대한 추가이윤 보상/140
-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방산수출에  
대한 지원 확대/143
- 자녀가 있는 사람의 상근예비역  
편입 범위 확대/150
- 시·도교육청 총액 인건비 전면 시행/158
-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 
사업 추진/163
-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전면 실시/167
- 청각·언어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  
서비스 ‘107 손말이음’ 개통/168
-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도 강화/170
-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을 통한 열악한  
농어촌 주거여건개선/172
-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·운영/173

- ‘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’로 우수기업에  
다양한 혜택 제공/174
-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농어업  
관련 지원 우대 확대/178
-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시 연령  
규제 개선/179
- 농지은행사업 지원 대상자의 연령  
제한을 완화/180
- 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 
추진/182
-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/183
- 어선표지판 부착제도를 전국단위로  
일원화 및 부착대상 확대/185
-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시범사업  
대상 범위 확대/186
- 수협중앙회의 정상 조합에 대한 부실  
예방 대책 강화/189
- 서해5도 백령도 대·소청도 주변어장  
확장/190
-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 
체계적으로 지원/195
- 농어업 FTA 보완대책 성과 및 투융자  
계획을 투명하게 공개/196

## 2월

- 수시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동차  
배출가스 원격측정 시행/23
-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확인검사대행자를  
전문정비사업으로 통합/24
-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/25
- 공항운영 민간운영자도 가능해 진다/71
-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 시행  
/121
- 한시계약군무원 채용제도 마련/127

- 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적용 / 139
- 방산원가 계산 시 상용품 적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/ 141
-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·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/ 142
-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확대 / 144
- 「병역명문가 찾기」 접수 3월에서 2월로 변경 / 155
- 저소득층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/ 160
-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문화 예술교육사 제도 시행 / 164
- 유상포인트 및 전자 대금지급 관련 콘텐츠 이용자보호 강화 / 166
-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보 보호 인증 강화 / 171
- 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단계적('13~'16년)으로 전환하고, 축산업 등록 대상 축종을 확대 / 181

### 3월

-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산업 단지제도 개선 / 10
-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/ 72
-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항목 확대 / 76
- 만 3~5세 어린이 숲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 / 87
- 안전인증·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·기구 확대 조정 / 116
- 개정 경범죄 처벌법 시행 / 123
- 「군용항공기 비행 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」 개정 / 145

- 5세 누리과정을 만 3·4세까지 확대 시행('13.3월) / 159
- 교직 적합한 인재 양성 및 선발을 위해 교원자격 검정 강화 및 신규채용 제도 개선 / 162

### 4월

-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기관 확대 / 84
- A형간염백신 접종 확대 / 137
- 어촌관광 활성화 및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·어항법 개정 / 188
- 비료 생산·수입업자 비료 제조 원료 장부기재 의무화 / 193

### 5월

-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확대 시행 / 184
- 별채·제재·유통 등 목재생산업 등록 제도 도입 / 197

### 6월

- 「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」 시행 / 8
- 지도·영상이 중첩된 PDF 방식의 지도 제작 및 배포 / 42
- 향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20년(1회 연장)까지 국유지 임대 / 58
- 향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 / 59
-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/ 62
-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/ 78
-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/ 94
-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/ 95

-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·관리 강화 / 97
-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 변호인 제도 시행 / 99
- 성폭력 피해 아동·장애인 위한 진술 조력인 제도 도입 / 100
- 평시 예비역 장교·부사관의 현역 재임용 / 126
-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 방법 등 개선 / 175
-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도 개편 / 187
- 친환경 농식품 인증 제도 통합·일원화 / 192
-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/ 194

## 7월

- 민간자본을 이용한 도시공원조성 활성화 / 51
- 복합물류터미널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 방식 전환 / 63
- 과징금·벌금 병과 제도 개선 / 64
-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 관리 시행 / 73
-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추가 및 건강 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/ 77
- 자녀의 복리를 위한 친권제도의 개선 / 100
- 아동의 복리를 위한 입양제도의 개선 / 102
- 군 병원 외래진료 셔틀 운행 확대 / 136

## 8월

-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 국시행 / 29
-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대상 확대 / 55

## 9월

- 「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」 시행 / 22
- 국민이 참여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공개 시스템 도입 / 30
-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‘새만금개발청’ 신설 / 49
-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·정비·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관리 정보 시스템에 통지의무 신설 / 53

## 10월

-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 보험 보장성 확대 / 75
- 700MHz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 마 이크의 사용 종료 / 16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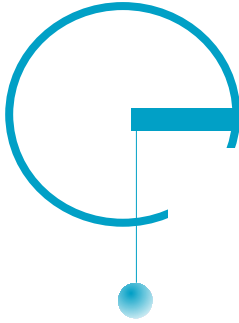
## 12월

-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/ 11

**구체적인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'13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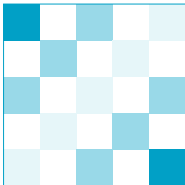
-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 중 기본교육 사전 이수 의무 폐지 / 5
-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 확대 / 15
- 미세먼지 예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 / 26
- 공동주택 주민공동 시설 총량제 도입 / 39
-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 / 40
-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/ 46

- 회전익항공기의 크기에 따라 헬기장  
활주로 길이·폭을 변경 / 68
- 육상헬기장 갯길 설치 의무화 삭제 / 69
-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 및  
시험과목 변경 / 122
- 연대급 통합예비군 훈련장 시험 운영 / 132
- 해양경찰순경(전환복무) 모집 및 선발  
업무 해양경찰청 이관 / 149
- 병역명문가, 남성이 없는 경우 군복무  
마친 여성 등 포함 / 156
- 교육감 소속 교육 전문직원의 지방직화  
/ 157
-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/ 161
- 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 / 177
- 산림교육전문가(숲해설가, 유아숲지도사,  
숲길체험 지도사) 자격증 발급 / 198



##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

|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|
| 1. 세 제         | 3   |
| 2. 금 융         | 6   |
| 3. 산업(중소기업·특허) | 10  |
| 4. 환경·국토       | 21  |
| 5. 보건복지·여성(법무) | 75  |
| 6. 고용노동        | 103 |
| 7. 행정안전(소방·경찰) | 121 |
| 8. 보훈·국방       | 124 |
| 9. 교육·문화(방송통신) | 157 |
| 10. 농식품·산림     | 172 |







## 1. 세 제

###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

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
(☎ 02-2100-3916)

□□공정과세구현을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

- 단순 착오로 지방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율이 현재 □□에서 □□로 인하되고□위법□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현재 □□에서 □□로 변경됩니다
- 법인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물건을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기록□비치하여야 하고□장부의 기록·비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의무위반에 따른 가산세□□□가 부과됩니다
- 또한□지방교육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폐지합니다□ 이는 지방교육세가 취득세·등록면허세·레저세 등의 부가세로서□이미 본세인 취득세 등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세에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

#### <2013년도 지방세 가산세 제도개선>

- ▶ 추진배경 : 납세자 의무해태 정도에 따른 가산세율 차등화로 공정과세 구현
- ▶ 주요내용
  - ① 일반무신고 가산세(20%), 과소신고 가산세(10%), 부정 무신고·과소신고 가산세(40%)
  - ② 장부 기록·비치 의무 위반 가산세(10% 신설)
  - ③ 지방교육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폐지
- ▶ 시행일 : 2013.1.(잠정, 개정안 국회심의중)

**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 
지방세 감면기한 연장**

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
(☎ 02-2100-3926)

□□행정안전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국내 경기□  
상황을 감안하여 서민지원을 통한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해  
□□년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완료하고 □□□□부터 지방  
세제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□

- 모든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해 감면을 확대□취득세 □□□□  
□□□□하고□알뜰주유소 관련된 감면□재산세 □□□□감면□을□  
신설하는 등 서민생활 및 물가 관련 일부 감면을 신설□확  
대하였습니다□

\* 현재 상점 밀집지역의 슈퍼마켓 협동조합(32개, '12.5월 기준)에 대해서만  
75% 적용, 기타(50개) 50% 적용 중

- 다자녀가구□□세 미만 □자녀 이상□의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 
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□승용차는 최대 □□□만원  
까지□□감면일몰 기한을 □□□□년말에서 □□□□년말까지 □년간  
연장하였습니다□

-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·보유하는  
임대주택에 해당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도 □□□□년  
말에서 □□□□년말까지 □년간 연장 조치하였습니다□

□□□□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내수  
활성화□중산층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자녀양육 부담 해소  
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□

□□□□시행일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잠정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현재 법사위 계류중□

**보세사 자격증  
취득요건중 기본교육  
사전이수 의무 폐지**

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
(☎ 042-481-7906)

□□보세사 시험 응시자격 요건인 기본교육 사전 이수 의무 제도를 폐지하여 수험자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

- 지금까지 일반인이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□년 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로서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하여 보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
- □□□□년부터는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□년 이상의 보세화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있으면 보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

**<2013년도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 중 기본교육 이수요건 폐지>**

- ▶ 추진배경 :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 완화를 통한 수험생 편의제공
- ▶ 주요내용
  - ①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인 기본교육 사전 이수 제도를 폐지함
- ▶ 시행일 : 2013년(잠정, 개정안 국회 심의중)

## 2. 금융

###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

금융위원회 보험과  
(☎ 02-2156-9831)

□□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□□ 자기부담금 다양화□□ 보험료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 단축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경제적인□표준형 단독실손의료보험□을 제시합니다□

\*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: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80%를 보장 (기존 90%, 100%)하는 상품으로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가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

-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 상품만을 원할 경우 가입□변경할 수 있도록 단독상품 출시를 □□□□월부터 의무화하고□□
-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기부담금 □□□의 실손의료보험 상품 외에 자기부담금 □□□□ 상품을 출시하여□□ 의료이용량이 적은 소비자 기호에 부합하는 보험료□보장수준을 제공 하도록 하였습니다□□
- 또한□□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변경주기를 □년에서 □년으로 단축하여 의료환경 변화내용 등을 보험료에 적기 반영하고□□ 비현실적인 보험기간□보장내용 변경주기□을 최대 □□년 등으로 현실화하여 과장광고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□□

☞ (참고) 금융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위원회소식>보도자료/실손의료보험 종합 개선대책  
금융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위원회소식>보도자료>보험업감독규정 개정

#### <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>

- ▶ 추진배경 :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요인 · 과잉진료 억제 등
- ▶ 주요내용
  - ①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
  - ② 보험료 변경(갱신)주기 단축, 보험기간 현실화
  - ③ 자기부담금 선택권 확대 등
- ▶ 시행일 : 2013.1.
  - ※ 단, 기존 특약형태로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제도 시행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'13.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

##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및 이용한도 합리화

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 
(☎ 02-2156-9856)

□□신용카드 남발□남용 등 제반 문제점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 
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이용한도 책정기준을 합리화  
하였습니다□

- 일정한 신용도□개인신용 □□등급□가 있는 민법상 성년자□만  
□□세 이상□□□□□월부터 □□세 이상□에 한하여 카드가 발급  
됩니다□□신규발급시부터□

□□□□다만□□저신용자□개인신용 □등급 이하□에 해당되더라도□  
□□□□□□□□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 및 채무정보 등에 의해 산  
출된□월 가처분소득□월 소득□월 채무상환금□이 □□  
만원 이상□이거나

□□□□□□□직불기반 검용카드□체크□소액신용□의 경우 최고 □□만원  
까지 신용한도가 부여된 카드가 발급 가능합니다□

- 가처분소득에 근거하여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책정됩니다□□  
□신규발급 및 기존 회원의 카드 갱신시부터□

□□□□카드 발급 이용한도는 □□가처분소득에 근거한 이용한  
도액과 □□직전 □개월간 월 최고 이용금액 중 큰 금액  
으로 산정되며□

□□□□결혼□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요건  
충족시 한시적으로 월 이용한도를 초과하는 한도 상향  
조정이 허용됩니다□

☞ (참고) 금융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 
합리화 대책 등 시행

### <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방안>

- ▶ 추진배경 : 신용카드 남발·남용 등 신용카드를 둘러싼 제반 문제  
점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건전한 소비 유도
- ▶ 주요내용
  - ① 일정한 신용도(개인신용 1~6등급)가 있는 민법상 성년자에 한  
하여 신용카드 발급
  - ② 가처분 소득에 따른 월 평균 결제능력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 
이용한도 책정
- ▶ 시행일 : 2012.10.15. (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여신전문금융업  
감독규정)

**「대부중개수수료  
상한제」 시행**

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
(☎ 02-2156-9475)

□□대부업체와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를 대부 금액의 □□□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□

- 높은 중개수수료 부과□다단계 대부중개행위 등이 대부 시장에서 서민들이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
- 정부는□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□시행을 통해 높은 중개 수수료가 서민들의 과도한 금리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□

□□□□다만□대통령령□시행령□상 한도는 □□□상반기 중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□

※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해당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대부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(다만, 여신금융 기관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.)

**<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>**

- ▶ 추진배경 : 과도한 대출금리 부담의 구조적 원인이 되는 높은 중개수수료율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
- ▶ 주요내용
  - ① 대부중개수수료를 5%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로 제한
- ▶ 시행일 : 2013.6. 12

**전자단기사채등의  
발행 및 유통에  
관한 법률 시행**

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
(☎ 02-2156-9874)

□□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□□이 □□□□년 □월 □□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□□

- 동 법은 기업어음의 문제점□□실물발행으로 위조의 가능성이□□있으며□□어음법 적용 등으로 분할유통 및 초단기발행이 곤란□□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상품인□□전자단기사채□□를 도입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□□
-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시행으로 현행 기업어음증권□□□□의 단점인 실물발행으로 인한 비효율성□□정보의 불투명성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□□이에 따라 유통시장도 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□□

□□□ 전자등록 및 유통을 통해 실물□□□ 발행으로 인한 문제 해결

□□□□ 위·변조 및 분실 등 실물□□□□발행과 관련된 기업의 위험과□□사무부담이 해소되며 증권·대금 동시결제가 가능하여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결제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음

□□□□초단기물의 발행이 가능해져 기업 자금운용이 고도화·정밀화되고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 □□이용이 어려웠던 지역적 한계 극복

□□□□자유로운 분할유통을 통해 유통시장 발전 및 투자자 확대

□□□□ 어음법이 적용되어 권면분할이 불가능했던 □□와 달리 □□억원 단위로 자유로운 분할유통이 가능하여 유통성이 크게 제고

□□□□ 유통 활성화시 투자자 기반이 확대되고 발행기업은 투자자 모집이 보다 용이해져 시장규모 확대 기대

□□□□정보공개에 따른 시장 투명성 강화

□□□□ 투자자는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가 확대되어 신용리스크 관리가 쉬워지며 정책당국은 시장상황의 정확한 파악 및 분석이 가능

☞ (참고) 금융위원회 홈페이지>보도자료>전자단기사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

### 3. 산업(중소기업·특허)

####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산업 단지제도 개선

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 
(☎ 02-2110-5302)

□□산업의 융·복합화□□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 등 최근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

- 지금까지는 지식서비스업종 중 자연과학 연구개발업□□출판업 등을 비롯한 □□개 업종에 대해서만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하였으나□□□□년 □□월부터는 공학 연구개발업□□경영컨설팅업 등에 대해서도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입주가 확대됩니다
- 아울러□□□□년 □□월부터는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□개 이상의 업종이 동일한 입주구역에 배치되도록 산업단지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

#### <2013년도 산업단지제도 개선>

- ▶ 추진배경 : 산업의 융·복합화, 지식서비스산업 발전 등 산업구조변화 반영
- ▶ 주요내용
  - ① 지식서비스산업의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입주 확대(2012.12월 시행)
  - ②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업종의 통합배치 허용(2013.3월 시행)



**유전자변형미생물  
및 생산공정이용시설  
안전관리 제도화**

지식경제부 바이오헬스과  
(☎ 02-2110-5661)

□□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미생물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□□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이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□

- 지금까지□□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□이하 □□□법이라 함□□상에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 조항이 없었으나□

\* 국내 C기업에서 “당” 생산공정 중에 촉매제로 이용하는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개발(유전자변형미생물 활용 국내 첫 사례), 식약청에 위해 **성심사를 요청하였으며, 식약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위해성심사**를 완료하고, 생산승인한 바 있음(’11.6월)

- ’□□년 □□월부터는 개정 □□□법 제□□조의□과 제□□조의□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·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□□이용하려는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이용승인을 받아야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이 가능합니다□

\* LMO법 제22조의3(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) :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 또는 신고, LMO법 제22조의4(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) :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승인

□□그 밖에□□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자도 위해성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□□개정안 제□□조의□□□

□□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연구시설을 폐쇄할 때 폐쇄신고를 하도록 하며□□개정안 제□□조□□

□□국내에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가 연구□□생산시설□□보관장소□□주변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 하였습니다□□개정안 제□□조의□□□

**<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>**

▶ 추진배경 : 생산공정 중에 촉매제 등으로 활용하는 유전자변형 미생물 이용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안전 관리 제도화

▶ 주요내용

- ①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허가 및 신고제도 신설
- ②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이용승인(위해성심사 포함) 제도 신설

▶ 시행일 : 2013.12.

**강원랜드의 폐광지역  
개발기금 납부비율  
상향조정**

지식경제부 석탄산업과  
(☎ 02-2110-5495)

□□ 폐광지역 내 카지노사업자[강원랜드]가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이익금의 □□□분의 □□에서 □□□분의 □□로 올려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

- 지금까지는 강원랜드 이익금 중 □□□분의 □□을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납부하였으나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을 높이기 위해 □□□분의 □□로 납부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

**<2013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>**

- ▶ 추진배경 :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지원
- ▶ 주요내용
  - ①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향조정(기존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20%→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25%)
- ▶ 시행일 : 2012.11월

### 외국 리콜제품에 대한 사업자보고 의무화

지식경제부 안전품질정책과  
(☎ 02-509-7238)

□□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이 이행된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그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□

- 이는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외국에서 리콜된 제품\*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□

\* 리콜이행 실적 : 미국 ('08) 564건, ('09) 466건, ('10) 402건  
일본 ('08) 106건, ('09) 94건, ('10) 103건

- 해당사업자가 동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□

#### <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사업자보고 의무화>

▶ 추진배경 : 외국 리콜제품에 대한 국내유통 방지를 통해 국내소비자 보호

▶ 주요내용

- ① 외국에서 자발적 또는 강제적 리콜 조치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수입한 사업자
- ② 외국에서 자발적 또는 강제적 리콜 조치된 제품을 수출한 국내 사업자

▶ 시행일 : 2012.8.24.

**우정서비스의 업무  
전문성 제고를 위해  
업무위탁 확대**

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과  
(☎ 02-2195-1115)

□□글로벌 경제 불안 등 우정사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등의 외부 위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

- □우체국예금보험 자금의 운용 지원□ 등 높은 수준의 업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등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\*에 업무를 위탁하여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노력하고 있으나

\* 한국우편사업진흥원, 우체국금융개발원, 우체국물류지원단, 우체국시설관리단

- 글로벌 경제 불안 등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에게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현재와 같이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업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추가로 발굴하여 업무위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

\*\* 업무위탁 확대 내용

- 공익사업운영, 우체국보험 계약관리, 우체국전산시스템 개발, 결산·회계 등 다수
- 세부내용 : 『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』 제14조(업무의 위탁) 참고

☞ (관련법령) [www.law.go.kr](http://www.law.go.kr)에서 “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” 검색 (제14조)

**<우정서비스의 업무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 위탁 확대>**

▶ 추진배경 : 우정사업 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업무 전문성 제고 필요

▶ 주요내용

- ①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추가 위탁\*확대(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\*\*에 위탁)

\* 공익사업운영, 우체국보험 계약관리, 우체국전산시스템 개발, 결산·회계 지원 등

\*\* 한국우편사업진흥원, 우체국금융개발원, 우체국물류지원단, 우체국시설관리단

▶ 시행일 : 2012.11.6.

###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확대

중소기업청 공정혁신과  
(☎ 042-481-4453)

□□중소기업이 대학·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□□□를 지원하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을 □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으로 개편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□

- 기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은 지역사업□□ 전국사업□□ 국제사업□□ 중점사업□□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□

- □□□년 □월부터는 첫걸음기술개발□□ 도약기술개발사업으로 단순화하여 지원합니다□

\*산학연 첫걸음기술개발 : 국가 R&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동일 지역내 대학·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할 경우,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(기존 지역사업을 개편)

\*\*산학연 도약기술개발 : 성장정체 또는 혁신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학·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도약·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개발 비용을 지원(기존 전국, 국제, 중점,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사업을 통합 개편)

□□수요자 선택방식을 도입합니다□□

- 기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은 대학·연구기관이 중소기업을 모집하여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나□□ □□□년 □월부터는 중소기업이 신청한 후 공동연구 할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□

□□중소기업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□

-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비용만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□□기술역량 등을 진단전문가들이 진단하여□□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현재 여건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□□

- 중소기업은 간단한 기업현황과 하고자 하는 기술개발 내용을 작성한 사업계획서[쪽]를 지방중소기업청[지역] 중소기업진흥공단[신용보증기금]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청 건강관리 진단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
- 또한[기존에는 연 회 지원사업 신청을 받았으나 년 부터는 월월까지 매월 신청·접수를 받아 중소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]

**동업종 또는 이업종간의  
소규모 협동조합에  
협업사업 지원**

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
(☎ 042-481-4491)

□□소상공인들이 자발적인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협업 사업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을 거쳐 공동구매□□공동마케팅□□공동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□

- 그간 나들가게□동네슈퍼□에 대한 공동구매□□시설개선 등□가시적인 조직화 지원 성과에 따라□□□□년 □월부터는 동 내빵집□세탁소□꽃집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해 협업사업을 통한 공동의 이익과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□

□□□□ 자발적인 협업체에 대해서는 교육과 진단지도 코칭을 실시하고□□협동조합 설립이후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□

**<2013년도 협업화 지원사업>**

▶ 추진목적 : 동업종 또는 이업종간의 소규모 협동조합에 공동의 이익창출 도모

▶ 주요내용

- ① 지원분야 : 공동브랜드, 공동마케팅, 공동설비, 공동구매, 기술 개발 등
- ② 지원업종 : 빵집제과, 세탁소, 꽃집, 이미용, 공예, 가구 등 10~20개 업종 우대(시범운영)
- ③ 지원규모 : 협동조합 당 일정규모(예시 : 1억원 한도) 한도 내 (국비 80%, 자부담 20%)
- ④ 지원절차 : 자발적협업체 신청 → 교육·컨설팅 → 조합설립 → 사업신청 → 선정 → 지원 → 성과

▶ 시행일 : 2013.1.

※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운영계획 수립직후 공고 후 즉시 시행 예정

##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

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 
(☎ 042-481-5195)

□□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지식재산 창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에 대해 출원료 등 특허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합니다

- 「1조 달러 경제와 희망 일자리 만들기 중견기업 □□□□ 프로젝트」 추진전략 지원을 위해 「산업발전법」상의 중견기업에 대하여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의 출원료·심사청구료 및 최초 □년분의 등록료 □□□를 감면할 계획입니다

※ 중견기업: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의 소속회사가 아닌 기업

- 중견기업의 감면혜택은 '□□□□□□시행 후 출원□□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

### <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>

- ▶ 추진배경 :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지식재산 창출을 장려하고,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에 대해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
- ▶ 주요내용
  - ① 산업발전법상의 중견기업에 대하여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의 출원료·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 30% 감면
  - ② 2013.1.1.부터 출원, 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하는 것부터 적용
- ▶ 시행일 : 2013.1.1.



**특허수수료 자동납부  
신청 금융기관 확대  
및 자동화기기(ATM)  
납부 특허수수료 확대**

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 
(☎ 042-481-5195)

□□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을 현재 기업은행에 농협은행을 추가하여 확대합니다

- 현재 특허청에서는 사전에 ‘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’를 제출한 고객의 금융기관[기업은행]예금계좌에 한해 ‘모든 특허수수료’를 국고로 이체하는 자동납부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□□고객이 출원서□□심사청구서□□납부서 등을 제출할 때 자동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

※ (A type) 출원료, 심사청구료, 설정등록료, 연차등록료, 심판청구료 등을 1회에 한하여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는 경우

(B type) 4년차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매년 1년분씩 정상납부기간 만료일에 자동납부하는 경우

- 고객의 특허수수료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‘□□□□□□부터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을 점포 수가 많은 농협은행으로 추가 확대할 예정입니다

□□자동화기기□□□□에서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를 현재의 연차등록료 뿐 아니라 설정등록료도 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□□

- 현재 농협 자동화기기□□□□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는 연차등록료뿐입니다
- 고객의 특허수수료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‘□□□□□□부터 농협 자동화기기□□□□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를 설정등록료까지 추가 확대할 예정입니다

**<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 확대 및  
자동화기기(ATM)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>**

▶ 추진배경 : 지식재산 대중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허수수료 납부 다양화 및 고객의 납부편의 제고

▶ 주요내용

- ①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을 현재 기업은행에서 농협은행으로 추가 확대
- ② 농협 자동화기기(ATM)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를 현재 연차등록료에서 설정등록료로 추가 확대

▶ 시행일 : 2013.1.1.

특허고객의 지식재산권  
보호를 위한 특허청  
인증체계 개선

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 
(☎ 042-481-8238)

□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자출원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 
신청시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하여 종전의 특허청 사설인증서  
발급을 폐지하고□등록된 인증 업체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  
로만 신청을 허용할 계획입니다

- 지금까지는 사전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해 특허청에서 자체적으로 인증서를 발급해 드렸으나[ ] 본인 대면 없이 신분증 첨부만으로 발급이 가능하여 명의도용 등에 취약하였습니다[ ]
- 이에 따라[ ]년 [ ]월부터는 인증체계를 강화하여[ ] 특허청에서 자체적인 인증서 발급은 중단하고 공인인증서[ ] 범용[ ] 은행용 등[ ]를 등록해야만 전자문서 이용신고가 가능합니다[ ]

\* 특허청인증서와 동일하게 PCT 인증서도 2013년 1월부터 발급이 중단  
 □□□□다만□□기준에 발급받은 특허청 인증서는 □□□□년까지  
 하시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□□

□□□□또한□□보다 안전한 공인인증서 사용을 위하여 특허청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‘특허청 전용 공인인증서’를 별도로 제공□□유료□□하고 있습니다□□

### <특허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청 인증체계 개선>

- ▶ 추진배경 :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하여 특허청 인증체계 강화
- ▶ 주요내용
  - ① 특허청 자체 인증서 발급 폐지(기존 발급자는 '13년 한시적으로 이용가능)
  - ② 공인인증서로만 전자문서 이용신고 가능
- ▶ 시행일 : 2013.1.1.

## 4. 환경 · 국토

###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

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
(☎ 02-2110-6822)

☐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기준 항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☐☐

- 사람의 건강보호항목에 ☐☐☐☐다이옥세인☐☐포름알데히드☐☐헥사클로로벤젠 등 ☐개 항목을 추가하고☐☐☐☐
- 또한☐☐생활환경기준에 총유기탄소량☐☐☐☐☐☐항목을 추가하여 난분해성 유기물질 관리를 강화 하였습니다☐☐

#### <2013년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>

- ▶ 추진배경 :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기준 항목 확대
- ▶ 주요내용
  - ① 사람의 건강보호항목 3개 추가(17개 → 20개)
    - 1,4-다이옥세인, 포름알데히드, 헥사클로로벤젠
  - ② 생활환경기준 총유기탄소량(TOC) 항목 추가
    - 신속·정확한 난분해성 유기물질 측정방법을 추가
- ▶ 시행일 : 2013.1.

**「어린이용품 환경  
유해인자 사용제한  
등에 관한 규정」 시행**

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
(☎ 02-2110-6960)

□□□□□□년 □월 □□부터 □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□의 시행으로 유해 어린이용품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

-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□중 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노닐페놀 □에 대해 어린이가 입에 물거나 손으로 만져도 안전한 수준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제정 □  
※ DNOP(Di-n-Octylphthalate, 다이-n-옥틸 프탈레이트), DINP(Di-isononylphthalate,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), TBT(Tributyltin compounds, 트라이뷰틸 주석), 노닐페놀(Nonylphenol)

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의 경우에는 위해성 평가를 거쳐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질 때 노출되는 양인 전이량 □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□□

\* 전이량 : 제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가 경구(빠는 행위), 피부, 흡입을 통해 사람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양

□□□ □□□□□□노닐페놀은 이미 위해성이 확인되어 □유해화학물질 관리법 □의 취급제한 □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그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

\* 취급제한물질 :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돼 그 용도로의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, 저장,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한 물질(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5호)

- 이에 따라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에 고시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어린이 용도로 판매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제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□□
- 동 제도의 시행으로 어린이용품내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

**<「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」 시행>**

- ▶ 추진배경 : 유해 어린이용품 관리 강화
- ▶ 주요내용
  - ① 환경유해인자 4종(DNOP, DINP, TBT, 노닐페놀)의 사용제한 기준 설정
    - DNOP, DINP : 전이량(경구, 경피) 기준, TBT, 노닐페놀 : 함량기준
- ▶ 시행일 : 2013.9.27.

**수시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 
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 
원격측정 시행**

환경부 교통환경과  
(☎ 02-2110-6859)

□□도도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배출가스 원격측정제도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

- 이를 통해 기존 수시점검(측정장비 단속 및 비디오 단속)의 비효율성(강제정차로 인한 국민 불편, 사고위험 등) 및 지자체 단속실적 저조 문제를 개선·보완할 계획입니다
- □□□□년 □월부터 환경부는 수도권 등 정밀검사 지역의 회발유 및 가스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을 실시하며 □□□□년 이후 대상차량 및 지역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

□□□□ 참고로 □□ 지자체(특·광역시 및 시·군·구)에서는 기존의 수시점검 방법인 측정장비 단속과 비디오 단속을 실시합니다

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법령/정책>법령정보>입법·행정예고>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

**<수시점검 개선 주요내용>**

- ▶ 추진배경 : 측정장비를 이용한 강제정차식 수시점검의 국민 불편·불만, 차량정체 유발, 교통사고 위험 및 지자체의 단속률 저조 문제 개선·보완
- ▶ 주요내용
  - ①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방법으로 원격측정을 추가(수도권 시범실시)
    - 변경전 : 측정장비 노상단속, 비디오 단속(지자체)
    - 변경후 : 측정장비 노상단속, 비디오단속(지자체) + 원격측정기 추가(환경부)
- ▶ 시행일 : 2013.2.2.

**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 
확인검사대행자를 전문  
정비사업으로 통합**

환경부 교통환경과  
☎ 02-2110-6859)

□□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확인검사대행자를 통합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

- 정밀검사 결과 2회 이상 부적합차량 및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전문정비사업장에서 정비·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
- 전문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을 구비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

□□□ 전문정비사업자는 정비·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관할 특·광역시 및 시·군·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정밀검사 지역의 경우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

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법령/정책>법령정보>입법·행정예고>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

**<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제도 주요내용>**

- ▶ 추진배경 :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확인검사대행자를 통합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제도 시행
- ▶ 주요내용
  - ① 정밀검사 결과 2회 이상 부적합차량 및 수시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담당하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제도 시행
- ▶ 시행일 : 2013.2.2.

##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

환경부 교통환경과  
(☎ 02-2110-6809)

□□ 비도로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□□  
농민 건강보호 및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기계  
배출가스 규제가 새롭게 도입됩니다

- 이동오염원 총 배출량의 □□□□이상을 차지하는 비도로  
이동오염원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는 건설기계에 국한되는  
등 미흡하였으나□□농업기계에 대한 국내 환경기준 신설은  
통하여 □□□□년 □월부터는 농업기계에도 배출가스 규  
제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

※ 이동오염원 총 배출량의 NOx 34%, PM 43%가 비도로이동오염원  
(건설기계, 농업기계 등)에서 배출( '09년 CAPSS 자료)

□□□□이에 따라 □□□□년에는 트랙터□□콤바인 □종에 대하여 □□□□□□  
기준을 우선 적용하고□□□□□□년에 □□□□□□기준으로 강화  
하며□□규제대상 또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

- 따라서 농업기계 제작□수입업체는 □□□□년 □월부터 제작□  
수입 전에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여부 등을 국립환경  
과학원으로부터 환경인증을 받아야 합니다

☞ (참고) [환경부 홈페이지>알림홍보>보도자료>농업기계 배출가스, 2013년 2월부터  
단계적 규제 시행](#)

### <2013년도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도입>

- ▶ 추진배경 : 비도로 이동오염원 배출가스 관리 강화 등 통한 대기질  
개선을 위해 농업기계에 대한 규제제도 도입
- ▶ 주요내용
  - ① 트랙터, 콤바인 Tier-3 기준 적용(원동기 출력별 적용시기 차등)
  - ② 업체는 농업기계 제작·수입전에 환경인증 의무화(인증기관 :  
국립환경과학원)
- ▶ 시행일 : 2013.2.

## 미세먼지 예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

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 
(☎ 02-2110-6778)

□□□□□□년부터 수도권 대상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□□

향후 단계적으로 대기오염 예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□

-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는 □대 시도에서 환경부의 지원을 일부 받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□□□□□□년부터 수도권에 한해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 예보를 직접 수행하게 되었습니다□

□□□□□□□□년 한해 동안 먼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□□□□□□년 이후

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예보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□

- 또한□□ 예보항목을 미세먼지□□□□□□에서 초미세먼지□□□□□□□□ 및 오존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□

※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(대기오염 예측 발표) :

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·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.

### <2013년도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사업 추진>

- ▶ 추진배경 : 국가 대기오염 예보제 전국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
- ▶ 주요내용
  - ① 미세먼지 당일 예보
  - ② 병원, 학교 등 유관기관에 예보내용 전파 (특히, 대기오염 취약계층 다중이용 시설)
- ▶ 시행일 : 2013년중(상반기 중 시스템 구축완료 예정)
- ▶ 근거 :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(대기오염 예측·발표)



**자원순화사회 구축을  
위한 음폐수 해양배출  
금지**

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
(☎ 02-2110-6943)

□□□□□년 □월 □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(음폐수)에 대한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될 계획입니다□□□□

- 그 동안 정부에서는 □□□□년 런던의정서 발효에 따라 육상 폐기물의 해양배출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
- 이의 일환으로 □□□□년 □□월 음폐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□□□□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□□□□년 □월부터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가 시행됩니다

□□□□향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 저감을 유도함은 물론 음폐수 자원화시설 설치를 통한 에너지화를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

**<음폐수 해양배출 전면 금지>**

- ▶ 추진배경 :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감축,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 저감 유도
- ▶ 주요내용
  -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(음폐수)의 해양배출 금지 및 전량 육상처리 전환
- ▶ 시행일 : 2013.1.1.



###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 시행

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 
(☎ 044-201-3480)

□□□□□□년부터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전국  
□□□개 지역에 확대·실시됩니다

- 부동산 서류를 하나로□□‘일사천리’로 업무를 끝낸다는 의미로  
□□일사편리□□를 설정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 갈  
수 있게 됩니다
- 지금까지 토지대장□□임야대장□□지적도□□임야도□□건축물 대장□□  
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의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 개별  
적으로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 
낭비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
-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  
하여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 
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한번에 확인 할  
수 있도록 개선됩니다
- 또한□□다양한 부동산정보 중 원하는 정보만을 선택하여 발급  
하도록 하여 부동산거래□□금융□□창업□□건축□□경매□□거래 등의  
국민의 경제활동이 보다 편리해지며□□행정기관 방문 절차  
및 인·허가 첨부서류의 간소화 등 편의를 도모하고 서류  
발급에 따른 수수료 절감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서비스

#### <2013년도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>

- ▶ 추진배경 : 다수 공부의 분산관리 및 중복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 
국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 개선
- ▶ 주요내용
  - ① 개별 부동산 공적 장부를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관리
  - ②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기반으로 부동산종합공부 내용 열람
  - ③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
- ▶ 시행일 : 2013.8. (예정)
  - ※ 관계 법률개정 후 부동산 종합공부 전국확산 실시

**국민이 참여하는 지적  
재조사사업 공개  
시스템 도입**

국토해양부 지적재조사기획단  
(☎ 044-201-465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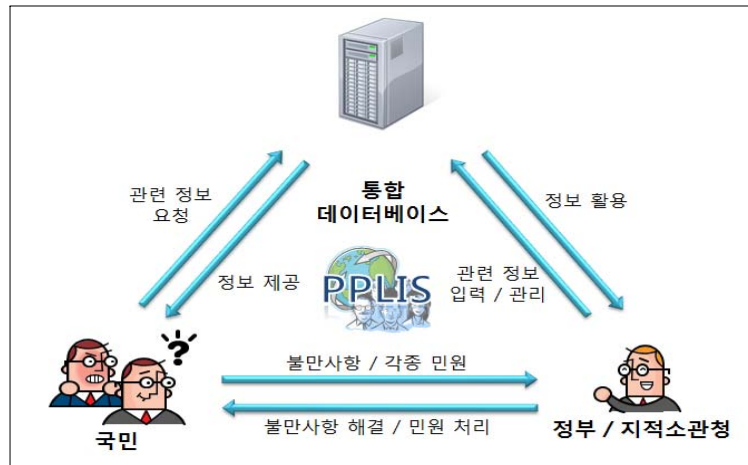
□□ 새로운 지적공부 등록관리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내용을 인터넷 등으로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할 계획입니다

- 지금까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상황 등에 대한 공개 정보가 없었으나□□□□□□년도부터는 지적재조사 사업관리 및 행정정보 공동 활용체계 마련과 토지소유자 등에게 추진 사항 등을 공개하기 위한 특화된 독립시스템이 구축·운영 됩니다

□□□□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사업지구 지정□□추진현황 경계결정 등 일련의 업무를 시스템화 하여 사업관리와 함께□□새로운 지적공부□□일필지조사서 등을 국민에게 제공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입니다

- 국민참여형 지적정보시스템□□□□□□을 도입하여□□사업수행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의견제출□□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양방향 공유시스템을 소관청에 구축하여 갈등 요인을□□사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

\* PPLIS(Public Participation Land Information System, 국민참여형 지적정보시스템)



<PPLIS 운영계획 모델>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

<국민이 참여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공개시스템 도입>

- ▶ 추진배경 : 새로운 지적공부 등록관리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내용을 인터넷 등으로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
- ▶ 주요내용
  - ① 지적재조사 사업관리 및 행정정보 공동 활용체계 마련
  - ② 토지소유자 등에게 추진사항 등을 공개하기 위한 특화된 독립 시스템 구축
- ▶ 시행일 : 2013.9.(잠정)

###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

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 
(☎ 044-201-3338)

-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0.5%p 내외로 인하하고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의 금리도 0.5%p 내려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부터 시행됩니다
-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예금 금리가 낮아진 상황을 감안하여 근로자서민전세자금(현행 연□□□□□□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(현행 연□□□□□□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(현행 연□□□□□□의 대출금리를 0.5%p 내외로 인하하였으며

| 구 분 |            | 변경전        | 변경후    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주요자 |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| 4.0%       | 3.7%       | <우대금리 조정><br>- 다자녀(1.0→0.5%), 다문화·장애안고령자 등(0.5→0.2%)<br>(신규분부터 적용) |
|     |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| 5.2%       | 4.3%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생애최초 구입자금  | 4.2%       | 3.8%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업자 | 공공분양 건설자금  | 5.0 ~ 6.0% | 3.8 ~ 4.0% | 민간사업자 4.8%(60㎡이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공공임대 건설자금  | 3.0 ~ 4.0% | 2.7 ~ 3.7% | 민간사업자 2% 지원중( '13년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국민임대 건설자금  | 3.0%       | 2.7%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청약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) 포함 □□ 금리도 가입기간별로 각각 □□□□씩 인하하였습니다

| 구 분 | 가입기간 1년미만 | 1년이상 2년미만 | 2년이상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
| 변경전 | 연 2.5%    | 3.5%      | 4.5% |
| 변경후 | 연 2.0%    | 3.0%      | 4.0% |

\* 「주택공급에관한규칙」 개정(12.21) \* 기존계좌는 금리 인하일부터 변경금리 적용

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국토해양뉴스)보도자료)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

#### <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 >

- ▶ 추진배경 :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및 시중금리 추세 반영
- ▶ 주요내용
  - ① 근로자서민전세자금(현행 연 4.0%),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(현행 연 4.2%),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(연 5.2%) 등 대출금리 0.5%p 내외 인하
  - ② 청약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) 이자율 0.5%p 인하
- ▶ 시행일 : 2012.12.21.

###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

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 
(☎ 044-201-3338)

-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·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·조정되어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
- 그간 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산정시 상여금·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고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세대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
  - 제도개선으로 상여금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하여 기금을 지원함에 따라 실제 가구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고 직종간 소득산정상 불평등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

#### 〈국민주택기금 자금별 대출 소득요건 조정〉

| 구 분            | 변 경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 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   | 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 이하<br>* 신혼부부 3천5백만원 이하 | 부부합산 연소득(상여금포함)<br>4천만원 이하<br>* 신혼부부 4천5백만원 이하 |
| 근로자 서민<br>구입자금 |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<br>* 신혼부부 4천만원 이하  | 부부합산 연소득(상여금포함)<br>4천만원 이하<br>* 신혼부부 5천만원 이하   |
| 생애최초 구입자금      |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                  | 부부합산 연소득(상여금포함)<br>5천5백만원 이하                   |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

#### <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>

- ▶ 추진배경 : 실제 가구소득 반영 및 직종간 소득산정의 불평등 해소
- ▶ 주요내용
  - ①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·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·조정
- ▶ 시행일 : 2013.1.2

**소형·저가주택의 청약  
가점제 무주택 인정  
기준 완화**

국토해양부 주택공급과  
(☎ 044-201-3338)

□□□□□□년 □월부터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의 무주택 인정기준이  
완화됩니다

- 현행 가점제\*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청약기회 확대가  
원칙이나□□유주택자라도 소형·저가주택\*\*□□보유자는 무주택  
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

\* 가점항목(84점) : 무주택기간(32점), 부양가족수(35점), 입주자저축 가입  
기간(17점)

\*\* 무주택 인정기준 : 전용60㎡이하 + 공시가격 5천만원이하 + 10년이상 보유

- 무주택 인정기준 중 주택공시가격 요건은□□'5천만원 이하'로  
상향하고□□'10년이상 보유'□□요건은 폐지하였습니다

□ 이는 □□□□년에 정한 무주택 인정기준을 현실화하여 대상자  
권익을 보호하고□□주거상향등 교체수요 발굴을 통한 거래활  
성화를 도모하기 취지입니다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**<소형·저가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>**

- ▶ 추진배경 : 소형·저가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현실화
- ▶ 주요내용
  - ①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소형·저가주택의 가점제 무주택  
인정기준을 완화
    - (주택공시가격) 5천만원이하→7천만원이하, (보유요건) 10년  
이상 보유→폐지
    - (전용면적) 60㎡이하→존치
- ▶ 시행일 : 2013.1.(잠정,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중)



**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 
대한 제재요건 완화**

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 
(☎ 044-201-3338)

□ 2013년 1월부터 주택청약 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요건이 일부 완화됩니다

- 지금까지는 착오기재\*에 대한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당첨취소□당첨자로 관리 및 청약통장 효력상실 등의 제재\*\*를 부과해 왔으나

\* 착오기재 사례: 청약순위, 주택소유여부,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, 재당첨제한 등

- 착오기재의 고의여부 판단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□당첨취소 외에도 청약통장 효력상실 등의 불이익이 과도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

□ 앞으로는 청약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부적격 당첨된 경우□본인의 소명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취소와 일정기간 청약제한만을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하였습니다

\* 당첨은 취소하되, 당첨사실을 삭제하고, 청약통장 효력은 유지, 다만, 일정기간 청약제한(당첨일로부터 1년(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2년))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**<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>**

▶ 추진배경 : 착오기재 당첨자에 대한 과도한 청약 제한 완화

▶ 주요내용

- ① 착오로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인 경우 소명여부에 따라 제재조치를 차등화하여 운영
- ② 착오기재의 고의과실여부 등의 판단 등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착오기재 소명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기간 청약 제한

▶ 시행일 : 2013.1. (잠정,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중)

**외국인 주택단지에  
입주할 수 있는  
외국인 범위 확대**

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 
(☎ 044-201-3338)
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‘영주’하고 있는 개인·재외동포도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
- 지금까지는 외국인 주거안정을 위해 별도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‘외국의 국적을 보유’하고 있는 개인에 한해 우선 공급하여
- ‘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’ 개인·재외동포은 입주가 불가능했습니다
- 이는 해외 영주권자에 대한 안정적 국내정주 지원을 통해 국내 경제·투자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**<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>**

- ▶ 추진배경 :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
- ▶ 주요내용
  - ① 외국인 주택단지에는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만이 우선공급 대상이었으나, 동 대상을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까지 확대
- ▶ 시행일 : 2013.1. (잠정,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중)

**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**  
(<http://nhf.mltm.go.kr>)  
서비스 개시

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 
(☎ 044-201-3338)

- 앞으로는 국민주택기금과 관련된 정보를 「국민주택기금 온라인 포털」을 통해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
- 국토해양부에서는 전세자금 대출·청약제도·주택채권 등 복잡한 국민주택기금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「국민주택기금 온라인 포털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
- 그간 주택기금 관련 정보는 국토부기금 취급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찾기 어렵고·이마저도 정확도가 낮아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많았으나
- 「국민주택기금 온라인 포털」을 통해 정확한 주택기금 관련 정보가 통합 제공됨에 따라 국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
- 이와 함께 전세자금 등 기금 대출시·상품별 대출조건·절차·필요서류 등을 이용자 중심으로 설명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
- 그간 제도가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웠던 청약가점제도 이용자가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문답식으로 개편·서비스 하고 있습니다
- 또한·주택 매물·시세정보·분양정보·내집마련 도우미 등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민주택기금온라인포털 구축

**<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 서비스 개시>**

- ▶ 추진배경 : 국민주택기금 관련 정보 통합제공으로 국민편의 증대
- ▶ 주요내용
  - ① 전세자금 대출, 청약제도, 주택채권 등 복잡한 국민주택기금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「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」 구축 및 서비스 제공
- ▶ 시행일 : 2012.12. 오픈(<http://nhf.mltm.go.kr>)

**아파트 관리, 입주민  
자유 크게 확대**

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 
(☎ 044-201-3369)

□□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입주민의 자유가 크게 확대됩니다

- 지금까지 □□세대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 
감사는 입주민의 직선제로만 선출이 가능하였으나

□□앞으로는 관리규약에 정하게 되면□□동별 대표자들의  
모임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간선제로도 선출할 수 있게  
되어 선거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입니다

□□아울러 그간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는 최대 □회□□년간만  
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었으나□□입주민의 자율성 확대로  
앞으로는 □회□□년간 재임 후 □회 쉬게 되면 다시 동별  
대표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아파트 관리, 입주민 자유  
크게 확대

**<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 서비스 개시>**

- ▶ 추진배경 : 아파트 선거비용을 절감하고, 입주민의 자율성 확대
- ▶ 주요내용
  - ①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·감사의 간선 선출허용  
(관리규약에 정할 경우에 한함)
  - ②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(다만, 계속 재임은 2기에 한함)
- ▶ 시행일 : 2013.1.(잠정,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의중)

## 공동주택 주민공동 시설 총량제 도입

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 
(☎ 044-201-3367)

□□공동주택 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의 수요에 따라 자유로운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□

- 지금까지 단지내 복리시설은 시설별 설치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설치□활용이 곤란하였습니다□

□□특히□□복리시설은 규정 범위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  
□주택법□하야□□거주자 특성 변화에 대응 한계가 있었으며□□이용률과 선호도가 낮은 일부 시설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□

\* 예 : 주민운동시설(실외)은 인근 동(棟)에서 소음민원 등이 빈번히 발생, 작은 도서관은 방치되거나 독서실 등으로 활용

□□앞으로 주민공동시설 총량제가 시행되면□□지역 및 단지 특성 등에 따라 총량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입주민의 수요에 맞는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□

□□아울러 기존의 주택단지도 총량제를 만족하는 경우 주민 공동시설을 자유롭게 활용□용도변경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토부 22년만에 주택건설 기준 전면개편

### <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>

- ▶ 추진배경 : 지역 및 단지특성에 맞는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
- ▶ 주요내용
  - ① 경로당, 보육시설 및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총량의 범위내에서 입주자가 자유롭게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
- ▶ 시행일 : 2013년 하반기(잠정)
  - ※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절차 진행중

##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

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 
(☎ 044-201-3367)

□□ 공동주택의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하게 됩니다

- 지금까지 공동주택에는 획일적인 휴게시설 설치□□안내표지판 규격 및 설치위치 규정 및 주택의 평면을 □□센티미터 단위로 설계토록 하는 등 디자인을 제약하는 요소가 많았습니다

□□특히□□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만 허용하고 주택용도는 허용하지 않아□□층 세대 알파룸□취미□작업 공간 등□□등 다양한 주택개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

- 앞으로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이 정비되면□□지역 및 단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주택개발이 이루어져 공동주택 및 도시경관이 수려해질 것입니다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국토해양뉴스)보도자료)국토부 22년만에 주택건설 기준 전면개편

### <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>

- ▶ 추진배경 : 공동주택 및 도시경관을 고려한 설계기준 마련
- ▶ 주요내용
  - ① 공동주택의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을 정비하여 다양한 주택 개발 도모
- ▶ 시행일 : 2013년 하반기(잠정)
  - ※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절차 진행중

##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

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 
(☎ 044-201-3392, 3386)

□□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있어 조합원<sup>※</sup>의 부담이 크게 줄어 듭니다

- 지금까지 □□□□년 □월 □□일 이후<sup>※</sup>비수도권은 '□□□□□□이후'□□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□인당 평균이익이 □천만원이상인 경우에 재건축부담금을 부과 하도록 규정하였으나
- 앞으로는 □□□□년 □□월 □□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어 조합원<sup>※</sup>의 부담이 줄게 되고 최근 부진한 재건축 사업이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

□□□□□□□□단□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 이후 □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

<sup>※</sup>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국토해양뉴스)보도자료)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,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

### <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도 개선>

- ▶ 추진배경 : 재건축 부담금제도는 주택가격 급등기에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, 주택시장의 안정추세와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등을 감안, 경기회복시까지 일정기간 재건축 부담금 부과 면제
- ▶ 주요내용
  - ①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은 부담금 부과 면제  
(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(종료일) 이후 4개월이 경과 하지 않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)
- ▶ 시행일 : 2012.12.18.

**지도·영상이 중첩된  
PDF 방식의 지도  
제작 및 배포**

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 
(☎ 031-210-2720)

☐☐스마트폰이나 ☐☐에서 나만의 맞춤형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전자문서☐☐☐☐형식의 지도가 제작되어 서비스될 계획입니다☐☐

- 지금까지 전자지도는 전자설계도면☐☐☐☐☐☐ 형식 등으로 되어 있어 이용에 제약이 많이 있었고☐☐ 종이지도 역시 한정된 종이에 인쇄되어 다양한 활용이 어려웠습니다☐☐

- 새롭게 제작되는 전자지도는 높은 해상도를 갖춘 항공영상과 중첩하여 제공함에 따라 국토형상을 입체적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☐☐

☐☐또한☐☐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추가하거나 원하는 지역에 대한 편집 기능으로 나만의 맞춤형 지도 제작이 가능해 등산로☐☐자전거지도 등 국민편의 생활 지원에 까지 널리 이용될 수 있습니다☐☐

- ☐☐☐☐년에는 우선 세계지도 및 대한민국전도 등을 ☐☐☐로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☐☐☐☐☐☐년에는 국가기본도☐☐☐☐☐☐까지 확대됩니다☐☐

☐☐ 더불어☐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툴바☐☐☐☐☐☐ 등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할 계획입니다☐☐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등산로·자전거길 “나만의 맞춤형지도” 만든다.

**<지도·영상이 중첩된 PDF 방식의 지도 제작 및 배포>**

▶ 추진배경 : 전자지도는 높은 해상도를 갖춘 항공영상과 중첩하여 제공함에 따라 국토형상을 입체적으로 분석이 가능

▶ 주요내용

- ① 세계지도 및 대한민국전도 등을 PDF로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, 2013년에는 국가기본도(1/5,000)까지 확대
- ② 툴바(S/W) 등을 개발하여 무료 배포 계획

▶ 시행일 : 2013.6.



### 감리전문회사의 입찰 부담 완화 및 선정 기준의 공정성 제고

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 
(☎ 044-201-3581)

□□발주청의 건설공사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감리전문회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부담 경감□□공정성 및 변별력 확보를 위해 평가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□

- 감리업무 특성상 설계용역과 달리 특별한 기술제안 내용이 없어 변별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평가□□□□·□□□를 의무 시행됨에 따라 업계의 경제적 부담과 행정 수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□

□□이에 따라□□감리용역에 대한 기술제안서□□□□제도는 폐지하고□□기술자평가□□□□□는 임의규정으로 전환하되□□대상 용역비□□현행 □□억원□□를 □□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□

- 또한□□발주청마다 정부에서 제시된 감리실적 및 경력 등의 예시를 여과 없이 따름으로 인해 발주청의 재량권을 제한하고□□특정업체에 유리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입찰과정에서 부작용을 초래하였습니다□

□□이에 따라 발주청 재량확대 및 역량강화를 위해 예시를 삭제하고□□□□평가기준 마련 시 관계자 의견수렴 및 설계자문위 심의□□지자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회□□를 거쳐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□□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,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개정

#### <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및 감리전문회사 PQ기준 주요개정>

- ▶ 추진배경 : 감리용역 PQ의 공정성 강화, 입찰부담 완화, 공생발전 및 변별력 제고
- ▶ 주요내용
  - ① 기술제안서 평가 폐지, 기술자평가서 임의규정 전환 및 예시삭제
  - ② PQ평가기준 마련 시 심의절차 도입 및 책임감리원 역량평가 비중 확대(2점→4점)
- ▶ 시행일 : 2013.1. (건기법 시행규칙), 2013.4. (감리용역 PQ기준)

### 감리원 복지향상 및 합리적인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정립

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 
(☎ 044-201-3581)

□□공무원에 준하는 감리원의 책임 및 역할을 감안하여 법정공  
휴일에 해당하는 기간은 대가 감액을 제한하도록 명문화하고□□  
저가낙찰 현장에 대해서는 감리원을 추가 배치하도록 의무화  
할 계획입니다□

- 공공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공무원에  
준하여 청렴의무 및 처벌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 
있는 반면□□감리원이 법정공휴일로 인한 근무일수□□개월  
□□일이 부족한 경우 대가를 감액하고 있어□□근로조건  
차별 등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□

□□이에 따라□□현행 법정교육과 더불어 법정공휴일로 인해  
근무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가를 감액하지 못하도록  
명문화하여 감리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게 될 전망입니다□

- 또한□□□□미만의 저가낙찰 현장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 
하는 건설업체의 특성상 부실공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
□□발주청에서 부실우려를 판단하여 감리원 추가배치를  
자의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□

□□이에 따라□□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하자보수  
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가낙찰로 절감된  
공사비만큼 감리원의 추가 배치를 통해 관리·감독을  
강화하도록 현행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하여  
운영될 계획입니다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

#### <건설공사 감리대가 일부개정 주요내용>

- ▶ 추진배경 : 감리원의 복지향상 및 부실감리 방지
- ▶ 주요내용
  - ①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기간은 대가 감액대상에서 제외
  - ② 저가낙찰 현장 감리원 추가배치 의무화
- ▶ 시행일 : 2013.1.

##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 사용 기준 마련

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 
(☎ 044-201-3577)

□□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사용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게 됨에 따라 □□□□년부터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이 기준에 맞추어 안전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

□□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있어 비용기준을 제시 하였고□□ 발파·굴착 등의 공사장 주변 시설물 피해방지 대책 기준과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

-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에 대한 세부적 사용 기준을 마련함 으로서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산업안전보건비와 건설공사안전관리비 사용에 혼선을 없애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

### <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주요개정>

- ▶ 추진배경 :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강화
- ▶ 주요내용
  - ①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② 발파·굴착 등으로 인한 주변건축물 피해방지 대책 비용
  - ③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 대책 비용
- ▶ 시행일 : 2013.1.

**행정복합도시 예정  
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 
설립 허용**

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 
(☎ 044-201-3689)

□□앞으로□행정도시건설 특별법□의 개정으로 외국학교법인이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□

- 그 동안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지역\*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외국교육기관□외국법령에 근거하여 설립·운영되는 학교□□설립 및 부지매입□□설립·운영자금 등의 제공 등이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에도 가능하게 됩니다□

\* 경제자유구역, 제주특별자치도, 기업도시(전문대학 이상으로 한정) 등

- 예정지역 내 외국인 교육여건 개선 및 장기 거주여건 개선을 통한 해외 우수인력 및 외자유치를 촉진하여
- 행복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및□국토의 균형발전을 제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□행정도시건설 특별법□개정을 통하여 외국교육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 기관 설립 허용

**<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>**

- ▶ 추진배경 : 행복도시 자족성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
- ▶ 주요내용
  - ① 외국학교법인이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에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
- ▶ 시행일 : 2013년 중 시행예정

**기업도시 개발이익  
감소시 재투자비용  
사후조정 기준 개선**

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 
(☎ 044-201-3691)

□□기업도시 개발시 최초 개발계획 승인시와 비교하여 준공시 개발이익이 □□□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도 개발이익 재투자 비용에 대한 사후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

- 지금까지는 최초 개발계획 승인시와 비교하여 준공시 개발 이익이 □□□□이상 차이나는 경우에 개발이익 사후조정이 가능하였습니다

□□이로 인하여 기업도시 시행자는 개발이익이 당초보다 □□□□미만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당초 계획대로 과도하게 개발이익을 재투자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

-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이익이 □□□이상 감소 하는 경우에도 사후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업 도시 시행자의 적정한 이익보전이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

☞ 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권 개선 대책 시행

**<기업도시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>**

- ▶ 추진배경 : 준공시 개발이익이 개발계획 승인시 보다 20%미만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당초 계획대로 과도한 개발이익 재투자자를 해야 하는 부담 발생
- ▶ 주요내용
  - ① 개발계획 승인시와 비교하여 준공시 개발이익이 20%이상 증가 하거나 5%이상 감소하는 경우 사후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
- ▶ 시행일 : 2013.1.1.

###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 조정

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 
(☎ 044-201-3691)

□□기업도시 개발시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□□□□□□하향 조정하여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될 계획입니다□

- 기업도시는 지역별 낙후도에 따른 적정개발이익을 초과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역 밖의 간선시설 등에 재투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□

□□개발이익 재투자율은 최소 □□□□ 이상으로 타 사업에 비하여 과도하여 민간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□□

-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□□□□□□하향조정함으로써 민간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□

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 대책 시행

#### <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 조정>

- ▶ 추진배경 :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이 과도하여 민간의 투자 의욕 저하
- ▶ 주요내용
  - ① 적정 개발이익 산출비율을 개정하여 재투자율을 12.5% 하향 조정
- ▶ 시행일 : 2013.1.1.

###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‘새만금개발청’ 신설

국토해양부 새만금개발팀  
(☎ 044-201-3696)

□□새만금사업 소관부처 분산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□□새만금개발에 관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□

\* 새만금사업은 '11년 3월 확정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(Master Plan)에 따라 30%를 농지로, 70%를 산업·관광·과학연구·신재생에너지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

□□그동안 새만금사업은 토지용도에 따라 □개 부처□농식품·국토·지경·환경·문화·교과부□에서 각각 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유사사업 중복□□용지별 사업내용 상충 등 전반적인 추진체계에 효율성이 저하 되어왔습니다□

□□새만금 특별법□제정에 따라 □□□□년 □월 ‘새만금개발청’을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□

• □개 부처에서 분산 수행 중이던 새만금 개발업무를 일원화하고□

•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·조정·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□

□□원형지□□선수공급 등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를 도입 합니다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> 정보마당 > 법령정보 >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#### <새만금 사업추진 전담기구 설립>

▶ 추진배경 : 추진체계 분산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효율성 저하를 해소하고,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,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『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』을 여·야 국회의원 172명 공동발의를 통하여 제정('12.11.22)

▶ 주요내용

- ① 국무총리실 새만금기획단 폐지, 새만금개발청 신설(국토부 산하)
- ② 외국인전용카지노 설립 가능 등

▶ 시행일 : 2013.9.11.

### 도시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

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 
(☎ 044-201-3751)

□□도시공원에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조치가 시행되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안전한 여가□휴식공간으로 조성됩니다

- 도시공원에서 범죄예방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□□도시공원의 범죄예방 안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

□□공원을 조성할 때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원내 조명□나무의 식재방법□□□□□폐쇄회로 텔레비전□□설치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

- 또한□□소규모공원에 철봉·평행봉 등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공원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도시공원법시행규칙

#### <도시공원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>

- ▶ 추진배경 : 도시공원에서 범죄예방 및 사회적 변화에 맞는 공원 시설의 설치
- ▶ 주요내용
  - ① 범죄예방 계획수립, 범죄예방 일반원칙 제시
  - ② 소공원·어린이공원에 운동기구 설치
- ▶ 시행일 : 2013.1월



**민간자본을 이용한  
도시공원조성 활성화**

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 
(☎ 044-201-3751)

□□□만□□이상의 도시공원에서 민간자본으로 조성되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방식이 다양화 되어 사업추진이 쉬워집니다

- 지방자치단체에 공원조성비·조성비·토지비 등의 □□□□이상을 예치하면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됩니다
- 사업추진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가 어려워 사업추진 부진했으나□□제도개선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

※ (민간공원제도) 10만㎡ 이상의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80%이상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20%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허용(도시공원법 제21조의2)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도시공원법시행규칙

**<민간공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다양화 내용>**

- ▶ 추진배경 : 10만㎡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서 민간공원조성 활성화
- ▶ 주요내용
  - 도시공원에서 민간공원조성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다양화
    - ☞ (현행) 토지면적 2/3 소유, 토지소유자 1/2 동의 → (개정) 기존 요건에 '공원조성비 4/5 예치' 요건 추가
- ▶ 시행일 : 2013.7월

**반품으로 말소 등록된  
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 
반품차량임을 구매  
자에게 고지의무 신설**

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 
(☎ 044-201-3843)

□□자동차 제작·판매자 등이 반품으로 말소 등록된 차량을 신조차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

-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반품되었던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반품된 차량임을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어 반품 차량임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판매함으로써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분쟁 발생 우려가 있었으나

□□□□□□년 □□월 □□일부터는 반품으로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품차량임을 고지하여야 합니다

- 이를 위반시에는 □□□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됨에 따라 소비자가 반품 차량임을 모른 채 구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자동차관리법

**<반품차량 판매시 고지의무 신설>**

- ▶ 추진배경 : 반품으로 말소 등록된 차량을 신조차로 판매함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
- ▶ 주요내용
  - ① 반품으로 말소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반품 차량 사실 고지 의무 신설
    - \* 고지의무자 : 자동차 제작·판매자 등
  - ② 고지의무 위반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
- ▶ 시행일 : 2012.12.18.

**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·정비·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통지의무 신설**

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 
(☎ 044-201-3844)

□□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·정비·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즉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(교통안전공단)에 정비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의무화 하고□□입력된 정보를 차량소유자에게 제공 함으로써 중고자동차 거래 시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게 됩니다□

- 지금까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자동차를 매매□□정비□□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정비내역 등을 통지할 의무가 없었으나□

□ □□□년 □월부터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관련 정비내역 등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하여□□월□□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□

-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·사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의 중고자동차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□□과잉 정비·중고부품 사용 여부 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□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자동차관리법

**<자동차 정비내역 등 통지의무 신설>**

▶ 추진배경 : 자동차 정비이력 통합정보 관리 및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

▶ 주요내용

- ①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·정비·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정비내역 등 전송의무 신설

\* 전송의무를 위반하여 전송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▶ 시행일 : 2013.9.1.



##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대상 확대

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 
(☎ 044-201-3851)

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고 속도 제한장치 의무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

-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높고 연료소모량도 절감되는 이중 효과가 있어 차량 총중량 4톤 이상 승합자동차와 총중량 4톤 이상 화물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토록 규정하여 왔으며

- 국민의 생명보호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승합자동차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

###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설치 대상 확대

총중량 4톤이상 승합차 □ 모든 승합차 시행일 '□□□□□□□□

\* 최고속도제한장치 : 승합차(110km/h), 화물자동차(90km/h)

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

### <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대상 확대>

- ▶ 추진배경 :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대상 확대
- ▶ 주요내용
  - ① 시행일부터 새로 제작되는 모든 승합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설치
- ▶ 시행일 : 2013.8.16.

###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

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 
(☎ 044-201-3851)

□□자동차가 보행하는 사람과 충돌 하였을 때 보행자의 피해  
□□□□를 감소시키기 위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합니다□□

- 차 대 보행자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□□□□이상으로  
매년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□□차 대 보행자  
충돌사고시 보행자 상해를 최소화하여 사회적 비용과  
문제점 해결하기 위해 보행자머리 및 보행자다리 상해  
기준을 마련하여□□□□□□년 □월부터 승용자동차에 의무 적용  
하게 됩니다□□
- 앞으로 단계별로 승합차□□화물자동차에도 확대 적용할  
예정이며□□안전기준 강화에 따라 차 대 보행자 사고시  
보행자의 사망사고나 상해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 
있습니다□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

#### <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>

- ▶ 추진배경 : 차 대 보행자 사고시 보행자의 상해감소를 위해 안전  
기준 강화
- ▶ 주요내용
  - ① 시행일부터 제작되는 승용자동차는 보행자 상해기준에 적합하게  
제작하여야 함
- ▶ 시행일 : 2013.1.1.

##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

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 
(☎ 044-201-4602)

☐☐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☐☐

- 지금까지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는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☐☐☐☐☐☐년 ☐월부터 응시원서 접수 당시☐국민기초생활보장법☐에 따른 수급자 또는☐한부모가족지원법☐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☐☐☐☐감면할 수 있게 됩니다☐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시행지침

### <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>

- ▶ 추진배경 :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
- ▶ 주요내용
  - ①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해 응시수수료 50% 감면
- ▶ 시행일 : 2013.1.1

**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20년(1회 연장)까지 국유지 임대**

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  
(☎ 044-201-4177)

□□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□□년□□회 연장□까지 국유지를 임대 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투자비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□

- 지금까지 사업시행자가 비관리청인 경우 항만재개발 사업 구역 안에 있는 국유지에 대한 과도한 매입비용 및 사용 기간 제한□□년 이내□□등으로 항만재개발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었습니다□
-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가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재개발사업에 보다 많은 개발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항만법

**<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의 국유재산 임대 특례 마련 내용>**

- ▶ 추진배경 : 사업시행자 초기 투자비 부담 완화로 항만재개발사업 참여 촉진
- ▶ 주요내용
  - ①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20년(1회 연장)까지 국유지 임대
  - ② 임대 받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
- ▶ 시행일 : 2013.6.



##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

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 
(☎ 044-201-4145)

□□항만공사 시행 관련 타 법률에 따른 인·허가 등의 의제 시점을 항만공사 실시계획 수립 공고 시점으로 변경하고□□ 협의요청 후 □□일 이내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항만공사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 하여 사업시행자의 불편이 감소되도록 할 예정입니다□

- 지금까지 사업시행자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타 법률에 의한 인·허가 등에 대하여 시행허가 고시한 경우에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하였으며□□타 기관과의 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시행자의 불편이 많았습니다□
- 이에 대해 타 법률에 의한 의제시점을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되는 실시계획 수립 단계로 변경하고□□타 기관 협의시 □□일 이내 의견회신이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며□□ 의제처리 사항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일괄협의회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항만법

### <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절차 개선 내용>

- ▶ 추진배경 : 항만공사 관련 의제처리 등에 대한 사업시행자 불편 해소
- ▶ 주요내용
  - ① 항만공사 의제처리 시점을 시행허가 고시에서 실시계획 수립 공고시점으로 변경
  - ② 관계기관 협의시 20일 이내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
- ▶ 시행일 : 2013.6.

###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기준 신고제도 시행

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 
(☎ 044-201-4003)

□□ 국제물류주선업과 관련한 각종 등록 및 신고제도가 대폭적으로 개선되어 시행됩니다□

국제물류주선업 :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서 “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·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, 일반적으로 ‘포워딩(forwarding)’업이라 부름

-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업체는 등록일부터 □년이 경과할 때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□

□□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해 등록을 한 지 □년 □개월 이상이 경과한 업체는 □□□□년 □월 □□일까지 일제 신고하여야 합니다□

- 또한□□ 그동안 변경등록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던 벌금□□천만원 이하□이 과태료□□□□만원 이하□로 경감됩니다□

□□ 변경등록 신고기간은 종전 □□일에서 □□일로□□양도·양수·상속·합병·휴업 신고기간은 종전 □□일에서 □□일로 연장됩니다□

□□ 휴업제한 기간도 종전 □개월에서 □년으로 늘어나며□□ 사업을 폐업할 경우에는 더 이상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□

- 아울러□□ 아포스티유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정책기본법

<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신고제도 개편>

▶ 추진배경 : 국제물류주선업자 부담 완화 및 국제물류주선업계 시장  
기능 활성화

▶ 주요내용

- ① 등록기준의 주기적(등록일부터 3년마다) 신고제도 시행
- ② 변경등록 신고의무 위반 시 벌칙 완화(벌금 → 과태료)
- ③ 변경등록 신고기간 연장(30일 → 60일)
- ④ 양도·양수, 상속, 법인 합병, 휴업 신고기간 연장(15일 → 30일)
- ⑤ 휴업제한 기간 연장(6개월 → 1년)
- ⑥ 폐업 시 신고의무 폐지
- ⑦ 외국인·외국법인에 대한 아포스티유(Apostille) 확인제도 시행

▶ 시행일 : 2012.12.3.('12.12.3 공포 및 시행)

###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

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 
(☎ 044-201-4007)

- 년부터 물류단지 지정·개발시 □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□을 준용함에 따른 물류업계의 애로를□ 해소하기 위하여 동 내용을 □물류시설법□에 직접 규정하고
-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및 물류단지 입주업체에 부과된 불합리한 부담 등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□을 일부 개정 추진합니다」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#### <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완화 주요 사항>

##### ▶ 주요 내용

- ① 복합물류터미널 폐업 또는 법인 해산시 직권말소제도 도입
- ② 물류터미널공사 시행인가 및 물류단지계획승인 처리기간 명시 및 자동 인·허가제도 도입
- ③ 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준용규정을 물류시설법에서 직접 규정
- ④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자에서 수분양자 제외 및 부과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신설 등
- ⑤ 물류단지계획 인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되, 국가는 물류정책상 필요할 때 개발토록 함

##### ▶ 시행일 : 2013.6.

\*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('12.10)

## 복합물류터미널 등록 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

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 
(☎ 044-201-4007)

□□국민 중심의 예측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□□□□년도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를 원칙허용·예외적금지(네거티브)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

※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 추진('12.12월 개정안 국회제출)

- 따라서□□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누구나□□등록을□□할 수 있도록 하고□□등록할 수 없는 자를 명확히 규정하여□□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원칙허용 방식으로 개선합니다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### <등록 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 주요 사항>

#### ▶ 주요 내용

- 국민 중심의 예측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를 원칙허용·예외적금지(네거티브) 방식으로 전환
  -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등록할 수 없는 자를 명확히 규정

▶ 시행일 : 2013.7. (국회제출 추진)

\* 개정법률안 입안('12.12~)

### 과징금·벌금 병과 제도 개선

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 
(☎ 044-201-4007)

□□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사항 임의변경 및 공사  
임의시행시 과징금□벌금 제도가 개선됩니다□

- 지금까지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사항 임의변경 및□  
공사 임의시행시 과징금과 행정형벌□징역 또는 벌금□을  
병과하고 있으나□
- □□□년부터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형벌을  
폐지하고 과징금만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□

※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 추진('12.12월 개정안 국회제출)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 
법률

#### <과징금·벌금 병과제도 개선 주요 사항>

- ▶ 주요 내용
  -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하  
거나,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  
행한 자에 대하여는
    -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
    - 1년이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병과  
제도를
  - 벌금 규정을 폐지하고 과징금만 부과하는 제도로 개선
- ▶ 시행일 : 2013.7. (국회제출 추진)
- \* 개정법률안 입안('12.12~)

**물류창고업등록관리  
대국민 민원 서비스  
실시**

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 
(☎ 044-201-4011)

□ □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□ 개정에 따라 □ □ □ □ 년 □  
□ 월부터 물류창고업등록 업무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  
연계하여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□

- 전국 지방자치단체 □ □ □ □ 개 □ □ 창고시설 인·허가업무 정보화를  
통해 창고시설관리 및 정보서비스가 강화됩니다 □

\* '12.12월현재 물류창고업 등록현황(3,612건) : 수도권 1,570건, 지방  
2,042건

-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서는 위 시스템의 구축과 연계를  
통해 각종 정보를 가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□ □ 신고  
· 변경·취소업무 민원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'□ □ 년 □ 월부터  
제공 실시할 계획입니다 □ 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 
법률

**<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서비스 실시>**

▶ 추진배경 :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 
국가물류정보센터에 연계 민원신청 및 각종 가공정보를  
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함

▶ 주요내용

① 물류창고업등록관리시스템 구축(2012년 11월)

▶ 시행일 : 2013.1.

\*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('12.8.4.)에 따라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 
물류창고업등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('12.11)하고, 12월말까지 시범운영을  
통해 '13년 1월부터 정상 운영

**직접운송의무비율제,  
최소운송기준 및 화물  
운송실적신고제 시행**

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 
(☎ 044-201-4018)

☐☐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거래 구조 개선 및 운송업체의 운송  
기능 회복을 위한 제도가 시행됩니다☐

- 첫째☐☐ 화물운송시장의 불필요한 다단계 발생을 차단하기  
위해 직접운송의무비율제가 시행되어☐☐

☐☐ 일반화물운송사업자☐소유대수 ☐대 이상☐는 운송계약  
화물의 ☐☐☐☐ 운송·주선 겸업자는 ☐☐☐☐ 이상을 직접  
운송하여야 합니다☐

- 둘째☐☐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을 회복하고 부실업체의  
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운송기준을 설정하여☐

☐☐ 최소한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☐☐☐☐’☐☐년은 ☐☐☐☐  
’☐☐년부터는 ☐☐☐☐를 운송하여야 합니다☐

- 마지막으로☐☐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한 각종 제도 시행의  
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☐

☐☐ 화물운송실적신고제가 시행되어 운수사업자는 운송 및  
주선 실적을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형태로 신고  
하여야 합니다☐

☐☐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는 우수업체 인증☐☐ 운송능력 평가☐☐  
직접운송의무비율 및 최소운송기준 준수여부 검증 등에  
활용될 예정입니다☐

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화물자동차 운수사업

**<2013년도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 시행>**

- ▶ 추진배경 :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방지 및 운송업체의 운송기능  
회복
- ▶ 주요내용
  - ① 직접운송의무비율제,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
- ▶ 시행일 : 2013.1.1.



- 사무실은 주사무소 10제곱미터 이상10영업소 10제곱미터 이상에서 “영업에 필요한 면적”으로10이사화물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은 100만원 이상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 가입에서 “적재물배상보험 가입”으로 의무화시켰으며10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화물자동차 운수사업

- ▶ 추진배경 : 화물운송 주선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와 이사화물사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의 허가기준 일부 변경
- ▶ 주요내용
  - ① 사무실은 일정면적 확보에서 “영업에 필요한 면적”으로 이사화물 피해보상은 이행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보험 가입에서 “적재물배상보험 가입”으로 의무화
- ▶ 시행일 : 2013.1.1.

**회전익항공기의 크기에  
따라 헬기장 활주로  
길이·폭을 변경**

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 
(☎ 044-201-4349)

□□헬기장의 활주로 길이□폭을 항공기 크기\*의 □□배 이상으로서□  
최소 □□□□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]

\* 항공기 크기란 해당 헬기장에 사용 예정인 가장 큰 회전익항공기의  
주 회전날개를 포함한 전체 길이와 폭 중 큰 값을 말함

- 육상헬기장의 활주로 길이□폭에 대하여 등급을 폐지하고  
모든 헬기장은회전익항공기의 제원에 따라 활주로의 크기를  
변경하였습니다]
- 금번 개정으로 헬기장 크기가 국제기준과 일치함으로써  
헬기장 시설 제도가 선진화 되고 규제완화에 따른 민원  
만족도 향상이 기대됩니다]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항공법

**<헬기장 활주로 크기 변경>**

- ▶ 추진배경 : 활주로 크기를 회전익항공기의 제원에 관계없이  
일률적으로 정하여 현실과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
- ▶ 주요내용
  - ① 활주로의 길이 및 폭에 대하여 등급(A~D)을 폐지
  - ② 활주로의 길이와 폭을 항공기 크기의 1.2배 이상으로서 최소  
15m 이상으로 변경
- ▶ 시행일 : 2013.1.(예정)

## 육상헬기장 갓길 설치 의무화 삭제

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 
(☎ 044-201-4349)

□□육상헬기장의 활주로 및 유도로 양측과 계류장의 가장자리에 갓길 설치를 의무화하던 것을 폐지하였습니다

- 향후□□헬기장 설치기준을 국제기준 및 외국과 비교·분석하고 민원내용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
- 금번 개정으로 육상헬기장 갓길 규정이 국제기준과 일치함으로써 헬기장시설 제도가 선진화 되고 민원 서비스 향상이 기대됩니다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항공법 시행규칙

### <육상헬기장 갓길 설치 의무화 폐지>

- ▶ 추진배경 : ICAO는 육상헬기장의 활주로·유도로 양측에 갓길 설치 규정이 없으나, 우리나라는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아 개정이 필요
- ▶ 주요내용
  - ① 육상헬기장의 활주로·유도로 갓길 설치 의무화 폐지
- ▶ 시행일 : 2013.1.(예정)

###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공항시설물 지정 및 비상 대처계획 수립

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 
(☎ 044-201-4350)

□□지진으로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피해경감을 위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항 시설물을 지정하여 고시하게 되었습니다□□

- 지진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항시설물은 많은 사람들이 상주하고 건축구조가 복잡하여 지진발생시 대규모 피해가□□우려되는 전국 □□개공항□□여객터미널입니다□□

\* 인천, 김포, 김해, 제주, 청주, 군산, 무안, 광주, 여수, 원주, 양양, 대구, 울산, 포항, 사천공항

□□□□개공항 여객터미널에 대하여 지진대비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지진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□□

- 지진대비 지진위험평가□□교육 및 훈련계획□□비상상황관리□□피해유형별 조치사항□□비상대피계획□□재해구호계획 등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합니다□□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자연재해대책법

#### <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공항시설 지정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>

- ▶ 추진배경 : 지진으로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전국 15개 공항여객터미널을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공항시설물로 지정하여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
- ▶ 주요내용
  - ①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공항시설 지정(전국 15개공항 여객터미널)
  - ② 지진분야 공항시설 비상대처계획 수립
- ▶ 시행일 : 2013.1.

## 공항운영 민간운영자도 가능해 진다

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 
(☎ 044-201-4355)

□□ 항공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운영자도 공항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

- 지금까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을 운영 해 왔으나 □□ 관련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공항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얻게 됩니다

□□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취득하면 공항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

\* “공항운영증명”은 공항운영자가 인력, 시설, 장비 및 운영절차 등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음을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임

□□ 국내 최초로 공항에 민간 경영 기법 및 공항 간 서비스 경쟁체제가 도입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항공법 시행규칙

### <공항운영자 신설>

- ▶ 추진배경 :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민간경영 기법 및 공항운영자간 경쟁 체제 도입
- ▶ 주요내용
  - ① 「인천국제공항공사법」, 「한국공항공사법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
  - ② 또는 공항운영권한을 부여 받은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·이전받은 자
- ▶ 시행일 : 2013.2. (예정)

### 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

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  
(☎ 044-201-4377)

□□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개발하기 위해 사후활용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

- □□□□년 □월 □일 확정된 박람회장 사후활용 계획에 따라 박람회장을 민간 주도로 개발하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정부가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

□□ 이에 따라 □□□□년 □□월부터 박람회장 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□년간은 □□□□□□ 이후 □년간은 □□□□감면할 계획입니다

□ 또한 여수박람회 사후활용특별법이 전면개정되는 □□□□년□ 상반기에는 박람회장을 해양박람회특구로 지정하여 박람회장 입주기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□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여수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

#### <여수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>

- ▶ 추진배경 : 여수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
- ▶ 주요내용
  - ① 박람회장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(법인세, 소득세를 3년간은 100%, 이후 2년간은 50% 감면)
  - ② 해양박람회특구 지정
- ▶ 시행일
  - ① 박람회장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: 2013.1.
  - ② 해양박람회특구 지정 : 2013.3.

- 2025년까지 시화호의 수질을 화학적산소요구량(COD)을 100mg/L 이하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화호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2025년까지 50% 이상 줄일 것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.

□□ 이를 위하여 안산·화성·시흥·군포시는 개발계획 조정□□  
하수관거 정비 등을 통하여 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 일□ □□□  
□□□□□□□□ 일을 삭감할 계획입니다□

### <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>

- ▶ 추진배경 : 오염된 시화호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시화호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
- ▶ 주요내용
  - ① 관리대상 항목 및 계획기간 : 화학적 산소요구량, 총인 / '13.7.1~'17.12.31
  - ② 관리구역 : 시화호 해역 및 인근 유역(안산·시흥·화성·군포시) 482.94km<sup>2</sup>
  - ③ 목표수질 : 화학적 산소요구량(3.3mg/L), 총인(0.065mg/L)
  - ④ 할당부하량 : 화학적 산소요구량(7,241.3kg/일), 총인(193.00kg/일)
  - ⑤ 삭감부하량 : 화학적 산소요구량(1,462.2kg/일), 총인(58.54kg/일)
- ▶ 시행일 : 2013.7. (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시행계획 승인 후 시행)
  - ※ 2012년 12월까지 「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」 수립 예정

**육상 발생 폐기물 중  
해양배출 허용 대상  
폐기물 축소**

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 
(☎ 044-201-4427)

□□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이 대폭 축소됩니다□

- □□해양환경관리법□제□□조에서는 폐기물을 원칙적으로 해양에 □ 배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□□국토해양부령□시행규칙□이 정하는 폐기물□에 한하여 해양배출을 허용하고□있습니다

\*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(음폐수), 분뇨, 분뇨오니, 폐수, 폐수오니, 수산 가공 잔재물, 원료용 동·식물 잔재물, 준설토사, CO2 스트림

- 그러나□□해양환경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주변국과의 환경 분쟁 예방□□국제협약과의 조화□□□□국제협약 가입국으로서의 의무 이행□□□□등을 위하여 해양배출 가능폐기물을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□□

\* 배출해역은 한일, 한중 공동 어업수역에 위치하고 있고 분쟁소지가 있음

\*\* 런던협약/의정서에서는 음폐수, 분뇨, 폐수는 해양배출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

\*\*\* 런던협약/의정서 가입국 중 유기성오니를 해양에 배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함

- 이에 따라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을 단계적으로 축소조정 하고 있으며 □□□□년부터는 음폐수□□분뇨 및 분뇨오니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□

\* 가축분뇨, 하수오니 : '12.1.1부터 해양배출 금지 (완료)

\* 산업폐수, 폐수오니 : '14.1.1부터 해양배출 금지 (예정)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해양환경관리법

**<육상 발생 폐기물 중 해양배출 허용 대상 축소>**

- ▶ 추진배경 :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주변국과의 환경분쟁 예방
- ▶ 주요내용
  - ①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축소
  - ② '13년부터 음폐수 및 분뇨·분뇨오니가 해양투기 금지
- ▶ 시행일 : 2013.1.1



## 5. 보건복지 · 여성(법무)

**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**

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
(☎ 02-2023-7418, 8756)

□□ 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의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

- 치료에 필요하지만 약값이 비싸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되었던 간암[넥사바]□□ 위암 약제[□□□□□□]에 대해 □□년부터 본인부담을 □□로 크게 낮추고□□
- 암□□ 심뇌혈관 질환 진단□□ 검사 및 수술 후 상태확인 등에 필수적이나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‘초음파 검사’도 □□□□년 □□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

□□또한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던 □□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 혜택이 □□□□년 □□월부터 □□□□의 본인부담으로 부분틀니까지 확대됩니다

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내년 건강보험료 1.6% 인상

### <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>

- ▶ 추진배경 : 중증질환으로 인한 「재난적 의료비」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
- ▶ 주요내용
  - ① 간암치료제(넥사바) 본인부담 경감(기존 50% → 5%)
  - ② 위암치료제(TS-1) 본인부담 경감(기존 100% → 5%)
  - ③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(비급여 → 건강보험 급여적용)
  - ④ 어르신 틀니 (완전틀니 → 부분틀니까지 확대)

###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항목 확대

보건복지부 예방접종관리과  
(☎ 043-719-7369)

□□영유아 및 □□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

- 지금까지 □□□□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□□ 예방접종은□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□ □□□년 □월부터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되어 □천원□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
- 또한□□□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□□□□년 □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

☞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(<http://nip.cdc.go.kr>)

#### <2013년도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>

- ▶ 추진배경 : 아동 및 65세 이상 성인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
- ▶ 주요내용
  - ① Hib(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)백신 필수예방접종 도입  
(전액 본인부담 → 5천원 본인부담)  
※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영유아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용 추가 지원으로 무료접종 가능(추가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)
  - ② 65세 이상 성인 폐렴구균 보건소 접종 지원  
(전액 본인부담 → 무료접종)
- ▶ 시행일 : 2013.3. (65세 이상 성인 폐렴구균 접종비 지원은 5월)

**의료급여 희귀난치성  
질환 추가 및 건강  
생활유지비 추가 지원**

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
(☎ 02-2023-8257)

☐☐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을 현재 ☐☐개에서 ☐☐☐☐년부터 ☐☐☐개로 확대하고☐☐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☐☐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☐

-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된 분들은 등록일로부터 ☐년 간 병원 외래 및 입원☐☐약국 이용시 의료급여비용☐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며☐

☐☐☐☐☐년 고시 개정을 통해 약 ☐만명의 희귀난치질환을☐☐ 앓고 있는 수급자분들에게 총 ☐☐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☐

- 또한☐☐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‘포인트’ 형태로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연간 ☐만원씩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☐

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의료급여제도 개선으로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

**<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>**

- ▶ 추진배경 : 사회적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자들의 의료보장성 강화 및 자발적 건강관리 유도
- ▶ 주요내용
  - ①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확대(107개→144개)
  - ② 자발적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추가지원(5만원/년)
- ▶ 시행일 : 2013.7월 이후(잠정)

##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

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
(☎ 02-2023-7848)

☐☐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☐☐☐년 ☐월부터 ☐☐방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☐

- 이전에는 ☐☐방을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금연구역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나☐☐☐년 ☐월부터 종전 금연구역이 폐지되고 ☐☐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☐
- 다만☐☐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\*을☐ 설치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☐

\*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되어 밀폐되어야하며,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

☞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 '15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 못 피운다

### <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>

- ▶ 추진배경 : 공중이용시설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 및 청소년 흡연 유인 차단
- ▶ 주요내용
  - ① 청소년게임제공업소, 일반게임제공업소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 PC방 내 전면 금연 실시
- ▶ 시행일 : 2013년 6월 8일

##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 표시 제도 개선

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 
(☎ 02-2023-7785)

- 음식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가격 표시 제도가 개선 됩니다.
-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' 13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.
- 음식점,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(위탁급식영업 제외)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, 봉사료 등을 포함 하여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.
-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에 대해서는 기존 단위당 가격 표시를 구체화하여 100그램당 가격 표시를 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.
- 또한 면적 150㎡이상(약 45평)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(8만여개)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. (' 13년 1월 31일 시행, ' 13년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)
- 외부 가격표시는 가격과 메뉴(5개 이상 권장)를 표시하되, 옥외광물 관련 법령(조례 포함)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(주출입구 등)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

☞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음식점 메뉴판, 소비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

### <음식점,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 표시 제도 개선>

- ▶ 추진배경 :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 및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
- ▶ 주요내용
  - ① 모든 음식점 최종 지불가격표시 및 식육 100그램당 가격 표시
  - ② 음식점 외부 가격표시(대상 : 신고면적 150㎡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)
- ▶ 시행일 : 2013년 1월 (외부 가격표시는 ' 13년 4월 30일 까지 계도 기간 운영)

**생활이 어려운  
중증장애인에 대한  
장애인연금 지원  
확대 등**

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
(02-2023-8672.8654 ☎)

- 2013년도에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(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·재산 기준)이 2012년 55.1만원(부부 88.1만원)에서 58만원(부부 92.8만원)으로 3만원 인상될 예정입니다.
- 또한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2012년 43만원에서 2013년 45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
- 아울러, 2013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 드리기 위하여
-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을 2만원 인상하여 지급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집니다.

**<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>**

- ▶ 추진배경 :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
- ▶ 주요내용
  - 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: ' 12년 55.1만원(부부 88.1만원)  
→ ' 13년 58만원(부부 92.8만원)
  - ②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 범위 확대 : ' 12년 43만원→  
' 13년 45만원
  - ③ 부가급여액 인상 : '12년 부가급여액 대비 2만원 인상
    - \* 기초 : (18~64세) 6만원→8만원 / (65세 이상) 15만원→17만원
    - \* 차상위: 5만원→7만원
    - \* 차상위 초과 : (18~64세) 0만원→2만원 / (65세 이상) 2만원→4만원
- ▶ 시행일 : 2013년 1월 1일

##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자격 및 급여 확대

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 
(☎ 02-2023-8204)

☐☐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 
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등급이 ☐급인 사람까지☐  
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활동지원 급여도 확대할  
계획입니다☐

- 지금까지 장애등급이 ☐급인 사람에게만 활동지원급여  
신청자격을 부여하였으나☐ ☐☐☐년에는 장애등급이 ☐급인  
사람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☐
- 또한☐ 장애아동 및 취약가구 등에 대한 활동지원급여의  
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확대하고☐ 심야 또는 공휴일에  
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과 원거리교통비를 인상  
확대됩니다☐

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 
및 급여 확대

### <2013년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주요 개정사항>

- ▶ 추진배경 :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2급 장애인까지 신청자격을  
확대하고 활동지원급여 인상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  
생활 지원 강화
- ▶ 주요내용
  - ① 신청자격 확대(장애등급 1급 → 2급)
  - ② 활동지원급여
    - 기본급여(성인) : 35~86만원 → 361~886천원
    - 기본급여(아동) : 35~52만원 → 361~886천원
    - 추가급여 : 83~664천원 → 86~684천원
    - \* 최종증 1인가구 기준 완화 및 가족의 결혼·출산·입원 등 보호자의  
일시적 부재에 따른 추가급여 신설
  - ③ 활동보조 시간당 수가
    - 일반시간/심야·공휴수당 : 8,300원/9,300원 → 8,550원/10,260원
  - ④ 원거리 교통비
    - 교통비/대상지역 : 4,000원/도서·벽지 지역 → 6,000원/시·군의  
읍·면 전지역
- ▶ 시행일 : 2013.1. (잠정)

###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

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
(☎ 02-2023-8184)

□□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□

-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□□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은 국내인에 한하여 가능하였으나□□□□
- □□□□년 □월 □□일부터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국내인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□

#### <2013년도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내용>

- ▶ 추진배경 : 국제화시대 상호주의 및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외국 장애인도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등에 장애인 등록 허용 추진
  - \* 외국인도 장애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등록제도 개선권고 (인권위, '08.7.15)
  - \* 외국인 지위·차별 개선 등 외국인 장애인 차별시정 과제 추진(국무조정실, '07.12.5)
  - \* 2010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으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수급권 확대(법무부)
- ▶ 주요내용 :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 시행
  - ① 국내인과 동일하게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
  - ② 등록대상
    -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
    -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
    -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
  - \*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 참조
- ▶ 시행일 : 2013.1.27.



##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

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 
(☎ 02-2023-8667)

□□ 현재 □만□천명의 장애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 치료 서비스를 □□□□년부터 □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

- 그동안 소득기준이 □전국가구평균소득 □□□□이하□로 제한되어 서비스를 원하는 일부 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으나 □□□□년부터 □□□□이하로 완화되어 □천명이 추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
- 앞으로 소득 □□□□이상 □□□□이하 가정의 장애아동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서민 가정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
- 아울러 □□ 장기적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만□세 미만의 모든 중증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

### <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>

- ▶ 추진배경 : 장애아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서비스 대상 확대
- ▶ 주요내용
  - ① 소득기준 완화 (전국가구평균소득 100% 이하 → 150% 이하)
  - ② 수혜대상 확대 (31→40천명)
- ▶ 시행일 : 2013.1. (잠정, 예산안 국회심의중)

###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기관 확대

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
(☎ 02-2023-8640)

□ □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□ 규정에 의해  
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됩니다 □

- □ □ □ □ 년 □ 월 □ □ 일부터 사립유치원 □ 평생교육시설 □ 교육훈련  
기관 및 연수기관 □ 직업교육훈련기관 □ 국 □ 공립 어린이집 □  
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장애인 교육 및 정보통신 □ 의사  
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□

□ □ 상시 □ □ 명 이상 근로자 사용작업장은 장애인 고용 및  
정보통신 □ 의사소통에 □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□ □

□ □ 또한 □ 체육시설 □ 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은 정보통신 □ 의사  
소통에 있어 장애인에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□

-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에 따라 장애인의 교육  
기관 이용 및 정보접근에 있어 편의성이 증대되고 장애인의  
사회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□

#### <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사항>

- ▶ 교육 관련 편의제공 사항(법 제14조, 시행령 제8조)
  - 각종 이동용 보장구 대여 및 수리
  - 교육보조인력 배치
  - 학습참여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대여
  - 보조견 · 휠체어를 위한 여유공간 확보
  - 시 · 청각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
  - 교육과정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
  -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 자료 등
  - 통학과 관련한 교통편의
  -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, 식당 등 교육활동에  
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 
시설 · 설비 및 이동수단
- ▶ 고용 관련 편의제공 사항(법 제11조, 시행령 제5조)
  - 시설 ·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
  -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
  - 훈련 제공 및 훈련에 있어서의 편의제공
  -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
  -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
  - 장애인보조기구 설치 · 운영 및 보조인 배치

▶ 정보통신·의사소통 관련 편의제공 사항(법 제21조, 시행령 제14조)

- 누구든지 신체적·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
-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접근·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 제공(요청시 7일 이내에 제공)
- 수화통역사, 음성통역사, 점자자료, 점자정보단말기,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, 확대경, 녹음테이프, 표준텍스트파일, 개인형 보청기기, 자막, 수화통역,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기, 장애인용 복사기, 화상전화기,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

▶ 시행일 : 2013.4.11.

체외수정 시술비  
지원 확대

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
(☎ 02-2023-8483)

□□□□□□년부터는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□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□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□□□□만원□□하게 유지할 계획입니다□

- 지금까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액은 □회부터 □회까지는 □□□만원□□회차는 □□□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었으나□□□□년부터는 □회차 지원금액도 □□□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□

□□또한□□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□회차 시술비 지원 금액을 □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□□□□만원□□하게 유지할 계획입니다□□

### <2013년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>

- ▶ 추진배경 : 난립가구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액 회차간 상한액 차등 개선
- ▶ 주요내용
  - ①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상한액 확대(4회차 지원금 : 100만원 → 180만원)
    - \*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하게 유지
    - \* 인공수정은 '12년과 동일하게 3회까지 50만원 범위내 지원
- ▶ 시행일 : 2013.1.

**만 3~5세 어린이  
全 계층 누리과정  
확대 적용**

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
(☎ 02-2023-8926)

☐☐우리나라 만 ☐☐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보육·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☐

- ☐☐☐☐년 ☐월부터 시행한 ‘☐세 누리과정’이 ☐☐☐☐년 ☐월부터 만 ☐☐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용 됩니다☐

☐☐☐☐세 연령별 누리과정’은 만 ☐☐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입니다☐

-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·교육 과정을 제공하며☐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☐

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정책소개>영유아보육>3-5세 연령별 누리과정

**<만 3~5세 어린이 全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>**

- ▶ 추진배경 : 보육은 “미래를 위한 투자”라는 정책기조를 가지고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지원의 틀을 단계적으로 확립
- ▶ 주요내용
  - ①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누리과정 (공통과정) 제공
  - ② 전 계층에 보육료·유아학비 지원하고 연차별 단가 인상(소득 하위 70% → 全 계층)
    - ※ 22만원(‘13년) → 24만원(‘14년) → 27만원(‘15년) → 30만원(‘16년)
- ▶ 시행일 : 2013.3.

**국민기초생활보장  
수급자의 부양의무자  
기준 등 선정기준 완화**

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
(☎ 02-2023-8128)

□□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의 보호를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이 완화됩니다

-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하여 기본공제액이 기존 □억 □□□만원(대도시기준)에서 □억□□□만원으로 상향조정 될 계획입니다

\* 대도시 133백만원→ 228백만원, 중소도시 108.5→136백만원

- 주택□□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완화 □□□□□□□□하여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집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보호가 확대됩니다

□□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하여 지원이 확대됩니다

- 최저생계비가 □인가구 기준 □□□□□□□□원에서 □□□□□□□□원으로 □□□□인상됩니다□□이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급여액도 □인가구 □□□□□□□□원에서 □□□□□□□□원으로 인상됩니다
- 수급자가 사망시에 지급하는 장제급여가 물가인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□□만원에서 □□만원으로 상향됩니다
-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개선 됩니다□□소규모시설□□인 미만에 대한 지원기준이 신설되고□□인당 월 지원 금액은 □□□□□□인상된 □□□□□□□□원이 지급됩니다□□

□□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와 이행급여 지원이 보다 확대될 계획입니다

- 내년부터 기초수급자가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바로 자격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 중 일부인 의료·교육급여를 제공□□이행급여□□받을 수 있습니다
- 일반시장에 취업한 노인□□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급자의 소득에□□대한 근로소득공제가 도입되며□□일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 중 □□□를 공제를 받아 급여를 더욱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

<2013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준완화 사항>

- ▶ 추진배경 : 빈곤층에 대한 생활보장 확대
- ▶ 주요내용
  - ① 부양의무자 재산기본공제액 상향조정
  - ② 주거용 자산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(4.17%/월 → 1.04%/월)
  - ③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3.4% 인상
  - ④ 장제급여액 인상(50만원→75만원)
  - ⑤ 소규모 시설에 대한 시설급여 지급기준 신설 및 시설급여 인상
  - ⑥ 이행급여(교육·의료급여 지원) 지원 대상을 일을 통한 탈수급자 전체로 확대
  - ⑦ 일반 시장에 취업해 얻은 근로소득의 30%에 대한 공제적용
- ▶ 시행일 : 2013.1. (잠정, 예산심의중)

**건강기능식품 부작용  
추정사례 보고기관  
통합 운영**

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정책과  
(☎ 043-719-2257)

□□□□□□년부터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보고가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일원화될 계획입니다

-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보고는 소비자[한국소비자연맹][영업자]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[의료전문가]식품의약품안전청[로 나뉘어 운영 되었으나□□□□□□년 □월부터는 보고기관을 식품안전정보원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

□□부작용 보고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로 전국 어디서나 단일화된 번호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

- 그동안 보고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 사례\*의 유형에는 가려움[두드러기][여드름][피부발진][탈모][구토][메스꺼움][복통][설사][소화불량][변비][위염][위통][두통][어지러움][부종][황달][발한][고열][호흡이상][생리이상][안구통증][체중감소 등이 있으니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와 유사한 추정 사례가 있을시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\* 부작용 추정사례란 소비자가 신고한 주관적 증상으로 그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은 아님



## 국립중앙청소년디딤 센터 운영

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
(☎ 02-2075-8613, 8617)

☐정서☐행동장애 청소년들에게 종합적☐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국립시설인 “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”가 ☐☐☐☐년부터 본격 운영됩니다☐

- 이용대상은 인터넷게임 중독☐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☐학교부적응 등 영향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☐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☐☐☐☐☐☐등 정서적☐행동적 장애를 겪고 있는 청소년☐☐세~☐☐세☐입니다☐
- 동 센터는 입교하여 생활하는 시설로☐입교기간 ☐개월☐☐회 연장 가능☐☐안정적 환경에서 상담치료☐생활보호☐진로탐색☐자립지원☐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☐단기프로그램 ☐주 이내 별도 운영☐☐일 이용도 가능☐
- 입교비용은 월 ☐☐만원☐단기프로그램 및 ☐일 이용 별도☐이며☐☐차상위 이하 저소득 가정 청소년은 무료입니다☐
- 입교하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☐청소년쉼터☐학교☐위센터☐위클래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☐

\*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연락처 :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전궁리 13번지, 031)333-1900

☞ (참고)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홈페이지([www.nyhc.or.kr](http://www.nyhc.or.kr))

### <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>

- ▶ 추진배경 : 정서·행동장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전문기관 운영 필요
- ▶ 운영내용
  - ① 입교대상 : 우울증, 불안장애, ADHD 등 정서·행동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9세~18세 청소년
  - ② 서비스 내용 : 상담치료, 생활보호, 진로탐색 및 자립지원, 교육서비스 등 종합 제공
  - ③ 입교비용 : 월 30만원(단기프로그램 이용 별도), 차상위 이하 저소득 가정 청소년은 무료
  - ④ 입교방법 :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청소년쉼터, 학교, 위센터, 위클래스 등을 통해 신청
- ▶ 시행일 : 2012.12.17.

### 청소년지도사·청소년 상담사 보수교육 의무화

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
(☎ 02-2075-8614)

□□청소년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□□청소년기본법□□개정으로  
□□□□년 □월 □일부터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보수  
교육이 의무화됩니다□

- 시·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□□청소년수련시설□□청소년단체에서  
청소년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한국청소년  
활동진흥원에서 □년마다 □□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□
- 청소년상담복지센터□□청소년복지시설□□청소년단체□□학교  
등에서 청소년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는 한국  
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매년 □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 
합니다□
-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□□청소년관련  
시설·단체 등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·단체 종사자인  
보수교육 대상자에게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 
할 경우□□□□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□

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> '청소년기본법'

#### <청소년지도사·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의무화>

- ▶ 추진배경 : 청소년지도사·청소년상담사의 자질 향상 위해 보수교육  
의무화 필요
- ▶ 주요내용
  - ① 시·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, 청소년수련시설, 청소년단체에서  
청소년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한국청소년활동  
진흥원에서 2년마다 20시간 교육 의무화
  -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청소년복지시설, 청소년단체, 학교 등에서  
청소년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는 한국청소년상담  
복지개발원에서 매년 8시간 교육 의무화
- ▶ 시행일 : 2013.1.1.

**저소득 한부모가족  
아동양육비 단가 인상**

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
(☎ 02-2075-8713)

□□한부모가족지원법□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□□세 미만□  
아동 양육비가 □□□□년 □월 □일부터 월 □만원으로 인상 지급  
됩니다□

- 지원 연령은 연차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지원단가는 □□□□년  
부터 □년간 월 □만원으로 동결 지원되어□□그 간의 양육환경  
변화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한부모 자녀 양육에  
실질적 보탬이 되기 어려웠습니다□
- 이에 □□□□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□□세 미만 아동에게  
지원되는 양육비를 월 □만원에서 □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□

〈아동양육비 지원연령 및 지원단가 확대 추이〉

| 구 분  | '05년   | '08년   | '09년    | '10년    | '13년   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지원연령 | 만 6세미만 | 만 8세미만 | 만 10세미만 | 만 12세미만 | 만 12세미만 |
| 지원단가 | 월 5만원  | 월 5만원  | 월 5만원   | 월 5만원   | 월 7만원   |

**<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>**

- ▶ 추진배경 :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 
지원책 확대 필요
- ▶ 주요내용
  - ① 저소득 한부모가족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를 월  
5만원에서 월 7만으로 인상 지급
- ▶ 시행일 : 2013.1.1.

###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기관 확대

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 
(☎ 02-2075-8766)

□ 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□ 개정으로 □ □ □ □ 년 □ 월 □ □ 일부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됩니다

- 지금까지 유치원 □ □ 어린이집 □ □ 초·중·고등학교 등 각급학교에 의무화되어 있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국가기관 □ □ 지방자치단체 □ □ 공공단체까지 확대됩니다
- 예방교육 의무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□ □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□ □ 제출해야 합니다

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<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>

#### <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>

- ▶ 추진배경 :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성폭력피해 예방
- ▶ 주요내용
  - ①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
    - \* (종전) 어린이집, 유치원, 각급학교 → (확대)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 추가
  - ② 의무기관은 교육 결과를 대통령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제출
- ▶ 시행일 : 2013.6.19

##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

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 
(☎ 02-2075-8768)

□□□□년 □□월 □□일부터 의료비 지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의사의 처방만으로도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

- 이전까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연간 □□□만원 이상 의료비가 소요되는 경우 지자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
- 또한□□□세 미만의 피해자의 부모와 보호자에게만 지원하던□ 가족 의료비·심리치료비□가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피해자의 가족에게로 확대되었습니다

□□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이 피해자 특성에 맞게 연장됩니다

- 특히□□장애인의 경우 그동안 비장애인과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□ 입소기간이 최대 □년까지였으나□□ □□□□년 □□월□□일부터는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

□□ 성폭력피해자 곁에서 항상 도와주는 성폭력 관련 상담원의 양성 교육이 체계화됩니다

-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은 그동안 민간 자원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□□ □□□□년 □□월□□일부터는 민간에서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관할 시·군·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
- 성폭력 관련 상담원이 되고자 하는 국민들은 신고된 교육훈련시설에서 개설하는 상담원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

☞ (참고) 여성가족부 홈페이지>뉴스·소식>보도·예명>보도자료> '성폭력피해자 가족 의료비 지원 확대'

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 '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'

## &lt;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&gt;

▶ 추진배경 : 성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한 피해자 치유·회복 강화

▶ 주요내용 및 시행일

①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강화(2012.10.25 시행)

- 500만원 이상 지원 시 지자체 심의 제도 폐지
- 가족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

\* (현행)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 혹은 보호자 → (확대) 모든 피해자의 직계존비속, 형제 및 자매, 배우자 및 보호자

②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(2013.6.19 시행)

| '12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13년 6월~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원칙 : 6개월 이내</li> <li>* 1년6개월 범위 내 연장</li> <li>*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만 18세까지 연장 가능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일반 : 6개월 이내(1년6월 범위 내 1회 연장)</li> <li>② 장애인 : 2년 이내(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)</li> <li>③ 특별지원(친족피해 미성년) : 19세가 될 때까지 (2년 범위 내 1회 연장)</li> <li>④ 자립시설 : 2년 이내(2년 범위 내 1회 연장)</li> <li>⑤ 장애인 자립시설 : ④와 동일</li> </ul> |

③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제(2013.6.19시행)

- 설치주체 : 학교법인, 법률구조법인,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이나 단체
- 신고방법 : 관할 시·군·구에 신고

**아동·청소년대상  
성범죄 처벌·관리  
강화**

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
(☎ 02-2075-8783)

□□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□개정으로 □□□□년 □월 □□일부터 아동□청소년의 성보호가 더욱 강화됩니다□

□□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□

- 반의사불벌죄□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□가 전면 폐지되며□성범죄 형량이 강화되고□□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와 소지의 개념이 보다 명확해집니다□

〈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주요 형량 강화 내용〉

| 조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내용                  | 현행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개정안 제7조<br>(아동·청소년<br>강간강제추행 등)            | 강간                  | 5년 이상                  | 무기 또는 5년 이상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사강간                | 3년 이상                  | 5년 이상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강제추행                | 1년 이상<br>5백만~2천만 벌금    | 2년 이상,<br>1천만~3천만 벌금    |
| 개정안 제11조<br>(아동·청소년이용<br>음란물의 제작·<br>배포 등) | 제작수입수출              | 5년 이상                  | 무기 또는 5년 이상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영리목적 판매·<br>배포·전시   | 7년 이하                  | 10년 이하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시·상영               | 3년 이하 또는<br>2천만원 이하 벌금 | 7년 이하 또는<br>5천만원 이하 벌금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지                  | 2천만원 이하 벌금             | 1년 이하 또는 2천만원<br>이하 벌금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알선행위                | 1년 이상 10년 이하           | 3년 이상                   |
| 개정안 제13조<br>(아동·청소년의<br>성을 사는 행위 등)        | 아동·청소년의<br>성을 사는 행위 | 5년 이하 또는<br>3천만원 이하 벌금 | 1년~10년 또는<br>2천~5천만원 벌금 |

□□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이 확대됩니다□

- 취업제한 시설에 관한 법률 규정 중 □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·체육시설□을 □아동·청소년의 이용이□ 제한되지 않는 학원·체육시설□로 변경하여 그 대상이□ 확대됩니다□
- □경비업□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□일반 □방□□복합유통 게임제공업□ 청소년활동기획업소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□ 등도 취업제한 시설에 추가됩니다□





**성폭력범죄 피해자를  
위한 피해자 국선  
변호사 제도 시행**

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  
(☎ 02-2110-3648)

□□□□□□년 하반기부터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사 제도<sup>1)</sup> 현 법률조력인 제도<sup>2)</sup>가 시행됩니다

- 지금까지는 성범죄 피해 □□세 미만 아동□청소년에 대해 국선변호사 제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
- □□□□년 □월부터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전면□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방안의 하나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□성폭력 피해자 전체로□ 확대됩니다
-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 과정□ 등 형사절차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
- 이는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지원을 보다 실질화□체계화 함으로써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□

<sup>1)</sup> (참고) 법무부 인권국홈페이지>알림마당>인권관련뉴스>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희망 도우미!! 법률조력인

**<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>**

- ▶ 추진배경 : 변호인이 없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
- ▶ 주요내용
  - ① 검사,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진술
  - ②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신문, 증거보전절차,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
  - ③ 증거보전후 관계서류나 증거물,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나 증거물의 열람·등사
  - ④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
- ▶ 시행일 : 2013.6.19(「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)

**성폭력 피해 아동·  
장애인 위한 진술  
조력인 제도 도입**

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  
(☎ 02-2110-3852)

□□ 신체적□□ 정신적으로 취약한 성폭력 피해 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시작됩니다□

- 법무부는 의사소통이나 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·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진술조력인을 □□□□년 □월부터□ 양성합니다□

□□ 양성된 진술조력인은 □□□□년 □월부터 조력이 필요한 아동·장애인을 위하여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□

-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□차 피해를 방지하고 실체진실발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□

☞ (참고) 법무부 인권국홈페이지>알림마당>인권관련뉴스> ‘진술조력인 제도 도입! 피해자 국선번호인 지원 전면적 확대!’

**<진술조력인 제도>**

▶ 추진배경 : 의사소통이나 표현이 어려운 아동·장애인에 대한 형사 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보호

▶ 주요내용

- ① 법무부장관이 진술조력인 양성
- ② 진술조력인은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 하거나 보조
- ③ 진술조력인은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 하거나 보조

▶ 시행일 : 2013.6.19

- ※ 2012년 11월 현재 예산 심의중으로 시행 시기 변경 가능
- ※ 2014년 1월부터 본격적인 배치 및 활동 시작

## 자녀의 복리를 위한 친권제도의 개선

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
(☎ 02-2110-3164)

□□‘단독친권자로 지정되었던 친생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’등 친권자의 공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법정대리인의 결정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 지정에 필수적으로 관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□

- 지금까지는 단독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이혼 당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가 되지 못했던 생존친 일방이 자동으로□ 친권자가 되었는바□이러한 친권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저해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□

※ 가족관계등록예규, 판례(94다1302)에 따르면,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생존친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됨

□□이에 따라 □□□□년 □월 부터는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가정법원에서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□

- 아동 보호의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미성년자□미성년자의 친족□이해관계인□검사□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임시로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□

□□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이후라도 양육환경이나 양육능력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□

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)민법

### <2013년 친권제도의 개선>

- ▶ 추진배경 : 친권자의 지정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한 친권제도의 개선
- ▶ 주요내용 :
  - ① 친권자가 사망 등으로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자 지정에 필수적으로 관여
  - ②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가정법원에서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
  - ③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이후라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
- ▶ 시행일 : 2013.7.1.

### 아동의 복리를 위한 입양제도의 개선

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
(☎ 02-2110-3164)

☐☐미성년자의 입양시 아동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☐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가의 후견적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☐

- 현행 민법상 일반입양은 양친될 자와 양자될 자 간의 합의와 입양신고만으로 가능하여 양친이 되기에 부적합한 자가 아동을 입양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☐

☐☐☐☐☐년 ☐월 ☐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민법에 따라 미성년입양에 관해서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도록 하고☐가정법원이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☐입양의 동기☐양부모의 양육능력☐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☐

- 또한☐미성년입양에 있어 부모 등의 동의가 없어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의권 불행사 내지 동의권 남용으로 인하여 아동이 안정된 가정에서 성장할 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당할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☐

☐☐친양자 입양 가능한 연령을 완화하였습니다☐

- 현행 민법상 친양자로 될 자가 ☐☐세 미만인 때에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☐재혼가정의 현실을 반영하여 모든 미성년자☐만 ☐☐세 미만☐가 친양자 입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정함으로써 재혼가정의 화합을 촉진하고 자녀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☐

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)민법

#### <2013년 개정된 입양제도>

- ▶ 추진배경 : 아동의 복리를 위한 입양제도의 개정
- ▶ 주요내용
  - ①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제 도입
  - ② 부모 등의 동의 면제 절차 도입
  - ③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 완화
- ▶ 시행일 : 2013.7.1.

## 6. 고용노동

###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대상 업종 확대

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 
(☎ 02-6902-8474)

□□유망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원대상 업종이 확대됩니다

- 현재 신성장동력 산업 중 ‘신재생에너지’ 및 ‘콘텐츠·소프트웨어’ 산업을 영위하는 □□인 미만 창업기업에 한정하여 실업자 고용시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□□인당 연 □□□만원□□하였으나

- □□□□년부터는 지원대상 업종을 신성장동력산업\* □□개 업종 및 국내복귀□□턴□□기업으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

\* 신성장동력 산업
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녹색기술산업   | ①신·재생에너지, ②탄소저감 에너지, ③고도 물처리, ④LED 응용, ⑤그린수송시스템, ⑥첨단 그린도시           |
| 첨단융합산업   | ⑦방송통신융합산업, ⑧IT융합시스템, ⑨로봇 응용, ⑩신소재·나노 융합, ⑪바이오제약(자원)·의료기기, ⑫고부가 식품산업 |
| 고부가서비스산업 | ⑬콘텐츠·소프트웨어 ⑭글로벌 헬스케어 ⑮글로벌 교육 서비스 ⑯녹색금융 ⑰MICE·융합관광                   |

\*\* 국내복귀(U턴) 기업: 해외에서 2년 이상 현지 생산시설을 계속하여 운영하던 기업 중,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로서,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기업

#### <고용창출지원사업의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대상 업종 확대>

- ▶ 추진배경 : 성장유망업종의 고용지원을 통해 고용촉진 및 성장유망 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고용창출역량 지속 확대
- ▶ 주요내용
  - ① 신성장동력 17개 산업의 10인 미만 사업장(창업 2년이내)에서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창출지원금 지원
  - ② 국내복귀(U턴) 기업
  - ③ 지원내용: 1인당 1년간 720만원(신성장동력 산업 2인, 국내복귀 기업 20인까지 지원)
- ▶ 시행일 : 2013.1.1.

##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

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 
(☎ 02-6902-8474)

□□고용촉진지원금 지원수준 인상 및 지급단위 기간을 단축  
하고□□자발적으로□이직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를□  
고용한 사업주에게도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합니다

- □년간 □□□만원을 □□□만원으로 인상□□개월 단위 □회 지원  
하던 고용촉진지원금을 □개월 단위 □회로 지원기간을 개선  
하고
- 취업취약계층이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이 된 후 자발적  
으로 이직한 경우 지급하지 않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  
합니다□□

### <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>

- ▶ 추진배경 : 장애인,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 
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 
임금보조금을 지급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
- ▶ 주요내용
  - ①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단위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
  - ② 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를 고용한 사업  
주에게도 지원금 지원
- ▶ 시행일 : 2013.1. 예정(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 중)

**(예비)사회적기업에  
지원하는 인건비 지원  
비율 변경**

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
(☎ 02-2110-7172)

□□□예비□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□□□□년도  
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□□

- □□□□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은 최저임금  
기준 사회적기업 □년차 □□□□□□년차 □□□□□□년차 □□□□이나□
- □□□□년부터는 사회적기업 □년차 □□□□□ □년차 □□□□□ □년차  
□□□□로 사회적기업의 □~3년차 지원비율이 하향됩니다.

※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원비율은 1년차 100%, 2년차 90%로  
2012년도와 동일합니다.

**<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 변경>**

- ▶ 추진배경 : (예비)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13년 일자리  
창출사업 지원비율 하향 조정
- ▶ 주요내용
  - 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
    - 2012년 : 1년차 90%, 2년차 80%, 3년차 70%
    - 2013년 : 1년차 90%, 2년차 70%, 3년차 50%
- ▶ 시행일 : 2013.1.1.

###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화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
(☎ 02-2110-7306)

□□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할 계획입니다

- □□□□년 □□월말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의 □□□를 장애인□□ 그 중 □□□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

□□앞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를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□단계로 나누어 □□명 미만□□□□명 이상 □□명 미만□□□□명 이상으로 규모에 따라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상시근로자수의 30%를 장애인으로 고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좌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장애인 근로자의 50%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⇒ |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5       |
| 상시근로자수의 30%를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 중 25%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|   |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0 + 5명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5 + 20명         |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e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고용노동부,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높이기 위해 고삐잡는다

#### <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인원 규모별 차등화>

- ▶ 추진배경 : 대규모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확대
- ▶ 주요내용
  - ①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는 현행과 동일
  - ② 상시근로자수가 100~300명인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10%+5명을,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5%+20명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
- ▶ 시행일 : 2012.12.



###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및 산정기준 세분화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
(☎ 02-2110-7313)

□□□□□□년부터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이 인상되고□□기업간 장애인  
고용의무 이행 정도의 격차를 부담금 산정에 잘 반영하도록  
부담기초액 산정기준이 더 세분화됩니다

- □□□□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□□□□이상 인원에게□  
대해서는 □인당 월 □□□□□□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
- 또한□□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□□□□이상□□□□미달 인원  
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의 □□□□을 가산하여 월 □□□□□□□  
원을 납부하여야 하며□□ 의무고용 인원의 □□□□미달 인원에게 대  
해서는 부담기초액의 □□□□을 가산하여 월 □□□□□□□원을 납  
부하여야 합니다

〈현행: 3단계〉

| 산정기준                       | 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중 1/2이상 인원 | 부담기초액<br>(1인당 월 59만원)                   |
| 의무고용 인원의 1/2미만 인원          | 부담기초액 + 부담<br>기초액의 1/2 가산<br>(월 88만5천원) |
|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     | 최저임금액<br>(월 95만7천원)                     |

〈변경: 4단계〉

| 산정기준                       | 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중 3/4이상 인원 | 부담기초액<br>(1인당 월 626,000원)                |
| 의무고용 인원의 1/2~3/4미달 인원      | 부담기초액 +<br>부담기초액의 1/4 가산<br>(월 782,500원) |
| 좌동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담기초액 +<br>부담기초액의 1/2 가산<br>(월 939,000원) |
| 좌동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저임금액<br>(월 1,015,740원)                  |

⇒

\*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

□□ 한편□□□□□□□□년에는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□  
최저임금액인 월 □□□□□□□□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□□  
그 대상이 상시근로자 □□□□명이상 □□□□명을 고용한 사업주까지  
확대됩니다□□

※ 공공기관 · 300명 이상('11.7.1.) → 200명~299명('12.1.1) → 100명~  
199명('13.1.1)

☞ (참고) 전자관보(<http://gwanbo.korea.go.kr>)>관보 구분별 보기>고시

<장애인 고용부담금 세분화>

▶ 추진배경 : 기업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정도의 격차를 부담금 산정에 더 잘 반영

▶ 주요내용

① 부담기초액 세분화: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3/4이상인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 부과, 1/2이상~3/4미달 인원은 부담기초액+부담기초액의 1/4 가산, 1/2미달인 인원은 부담기초액+부담기초액의 1/2을 가산하여 부과

②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부과하는 대상을 100명이상 고용 사업주로 확대 실시

※ 공공기관 · 300명 이상: '11.7.1.부터, 200~299명: '12.1.1부터, 100~199명: '13.1.1부터

▶ 시행일 : 2013.1.1.

# 장애대학생에게 기업 직무체험 기회 제공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
(☎ 02-2110-7307)

□□□□□□년부터 장애대학생에게 취업전 기업에서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높이고자 장애대학생 기업 연수제를 실시합니다□□

- 재학·휴학중인 대학생들이 □□□개월간 사업체□□정부□□공공기관 등에서 연수받도록 지원하며□□

□□연수생에게는 월 □□□□□□원□□참여 중소기업에게는 기업 연수지원금 □인당 월 □만원을 지급합니다□

## <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>

▶ 추진배경 : 장애대학생이 기업 현장체험을 통해 졸업 후 취업을 유도하고, 기업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기회 마련

### ▶ 주요내용

- ① 참여대상 : (연수생) 재학·휴학 중인 장애대학생  
(연수기관) 상시 50명 이상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, 정부, 공공기관 등
- ② 지원내용: 참여연수생에게는 연수수당 월 40만원 지급, 참여 중소기업에게는 기업연수지원금 1인당 월 5만원 지급
- ③ 연수기간: 최소 1개월~최장 2개월

▶ 시행일 : 2013.1.

※ 방학을 이용하여 기업연수제를 실시할 예정이나, 기업과 학생의 수요에 따라 연중 상시 운영 예정

**특수학교(급)학생에게  
일반사업체에서 현장  
실습 훈련 지원**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
(☎ 02-2110-7307)

□□□□□□년부터 장애를 가진 고등학생이 희망일터나 적성등을 파악하여 직업현장으로 원활히 진입하도록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를 실시합니다

- 특수학교(급)□□□□학년생 및 전공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□□□개월간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일반사업체에서 현장실습 훈련을 받도록 지원하며□□

□□연수생에게는 □일 □□□□□□원□□사업체보조금으로 □인당 □일 □□□□□□원 지원합니다

- 이 제도를 통해 그동안 단발적 취업지원으로 인한 장애 학생의 부적응을 해소하고□□학교에서 직업현장으로의 성공적 진입을 지원해줄 예정입니다

**<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>**

▶ 추진배경 : 장애학교(급)학생의 성공적인 직업현장 진입을 지원할 필요

▶ 주요내용

- ① 실습대상: 고3, 전공과 재학생
- ② 실습사업체: 일반사업체(4대보험 가입)
- ③ 훈련기간: 3~6개월
- ④ 지원내용: 훈련수당(1일 12,000원), 사업체 보조금(1일 1인당 17,650원)

▶ 시행일 : 2013.1.

## 워크투게더센터 전국 확대 운영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
(☎ 02-2110-7307)

□□□□□□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□개 지사에서 시범운영하였던 워크투게더 센터를 □□□□년부터 전국 권역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

- 지금까지는 장애학생에 대한 서비스가 각 부처별로 제공되었으나『워크투게더 센터』를 통해 학교교육□□복지□□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장애학생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

□□특수학교□□학급□□전공과 및 일반학급□□통합반□□에 재학 중인 고등부 장애학생□□부모□□등을 대상으로 진로 및 직업교육□□직업능력평가□□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 수요자의 욕구와 능력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e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고용노동부, 장애 학생, 진로설계에서 취업까지 원스톱서비스 받는다

### <워크투게더 센터 전국 확대 운영>

- ▶ 추진배경 : 교육·복지 등 관련 부처별로 실시하던 진로지도와 복지 일자리 사업 등을 연계하여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으로의 진입을 지원
- ▶ 주요내용
  - ① 지원대상: 고등부 특수학교(급), 일반학급, 전공과 재학생 등
  - ② 서비스내용: 직업설계컨설팅, 직업훈련체험, 직업훈련기관 연계, 구직역량강화, 현장체험, 학부모설명회, 장애인식개선 등
- ▶ 시행일 : 2013.1.

**근로시간단축형  
임금피크제지원금  
지급요건 조정**

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 
(☎ 02-2110-7305)

□□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의 소정근로시간 감소 및 임금감액률 요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

- 지금까지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 전 피크임금 시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□□□분의 □□미만으로 감소하고□□ 해당 연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□□□분의 □□□이상 감액될 것이 지원금 지급요건이었으나□□

□□앞으로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□□시간 이상 □□시간 이하로 감소하고□□임금감액비율이 □□□분의 □□□이상 감액 될 것을 지급요건으로 할 계획입니다

**<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소정근로시간 감소  
및 임금감액률 요건 조정>**

- ▶ 추진배경 : 장년의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청년의 신규채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
  - ▶ 주요내용
    - ①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전 피크임금 시점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50% 미만으로 감소하는 것에서,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감소로 조정
    - ② 해당 연도 임금의 감액률을 피크임금 대비 50%에서 30%로 조정
  - ▶ 시행일 : 2013.1. (잠정)
- ※ 개정안 입법예고중

## 최저임금액 인상

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
(☎ 02-2110-7399)

□□□□□□년 □월 □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□□□□원으로 인상됩니다

- 일급으로 환산하면 □시간 기준 □□□□원□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□□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□□□□□□□□원□□□□원 □□□□시간이며□주 □□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□□□□□□□□원 □□□□□□□□원□□□□시간입니다
-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·일용직·시간제 근로자□□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
- 다만□□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□□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

□□또한□□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□개월 이내인 자□□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제외□□와 경비원·보일러 수리공 같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□□□□시간급 □□□□□□□□원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e-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,860원으로 결정

### <최저임금액 인상>

- ▶ 추진배경 :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따라 '12.8.1.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·고시
- ▶ 주요내용 : 최저임금액 시간급 4,860원
- ▶ 시행일 : 2013.1. ~ 12.

**상시 4인 이하 사업장  
근로자 퇴직급여 법정  
퇴직금 수준으로 상향  
적용**

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 
(☎ 02-2110-7419)

□□□□년 □월 □일부터는 상시 □인 이하 사업장에서 □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 수준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□

- □□□□년 □월 □일부터 상시 □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 제도를 확대적용하면서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어 운영 중입니다□

□□ 이에 따라 □□□□년 □월 □부터 □□□□년 □월 □일까지는 법정퇴직금\*의 □□□분의 □□□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□

□□□□□□년 □월 □일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의 □□□분의 □□□수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□

\*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8조제1항의 “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” 을 의미함

- 따라서 □□□□□□□□부터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계속근로 기간이 □년 이상인 퇴직근로자는 □년에 대하여 □□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□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팸플렛·브로셔



###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

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
(☎ 02-6922-0914)

□□□□□□년부터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고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낮추기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·실행하도록 하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됩니다

□□ 특히□□ 산재발생의 □□□□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·시행합니다

- 위험성평가 실시 과정에서 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클린 또는 융자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□□ 위험성평가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합니다□□
- 또한□□ 위험성평가 우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정 제도를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 유예 및 산재보험료 할인 □□ 관련 법 국회 심의 중□□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

☞ 「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(<http://kras.kosha.or.kr>)」 참조('13. 1. 1. 오픈 예정)

**안전인증 · 자율안전  
확인신고 대상 기계 ·  
기구 확대 조정**

고용노동부 제조산업재예방과  
(☎ 02-6922-0935)

□□□□년 □월 □일부터 제조□유통단계에서부터 산업 기계□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인증□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확대됩니다□

- 기계적 결합으로 인해 사고발생 우려가 높아□제조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인 안전□보건 조치가 필요한 절곡기□곤돌라□기계톱□이동식□ 등 □종을 안전인증□□ 대상으로 확대하고□ 산업용 로봇□분쇄기 등 □□종을 자율안전확인신고□□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□

□□ 한편□□ 안전인증 대상에 추가되는 곤돌라와 방호조치 대상에 포함되는 원심기□ 공기압축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□

\* 안전인증: 기계 · 기구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 체계가 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

\*\* 자율안전확인신고: 기계 · 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제도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알림마당) e-고용노동뉴스(보도자료)재해예방 위해 산업 기계 · 설비 안전인증 대상 늘린다

**<2013년도 안전인증 ·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확대>**

- ▶ 추진배경 : 유해 · 위험도 및 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기계 · 기구에 대하여 제조 · 유통 단계에서 안전성 확보조치 필요
- ▶ 주요내용
  - ① 안전인증 대상 확대(8종 → 11종)
  - ②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확대(3종 → 13종)
- ▶ 시행일: 2013.3.1. 이후

##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

고용노동부 건설안전예방과  
(☎ 02-6922-0951)

□□□□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재해자 수가 전체 건설업 재해의 □□□대를 차지하고 있고

□□특히 추락재해가 전체 재해의 약 □□□를 차지하고 있어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시설 지원이 필요함

- □□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경우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적어□□현장에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기에는 역부족으로

□□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비계에 대한 비용 지원을 통해 건설현장 작업안전성 제고 및 추락재해 예방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

### <2013년도 재정지원사업 개요>

- ▶ 추진배경 : 소규모 현장에 다발하는 추락재해 예방
- ▶ 주요 내용
  - ① 10억원 미만 건축공사의 시스템비계 임차비용 지원
  - ② 건설업체당 1,000만원 한도 지원(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교체·설치하는 경우 임차료 차액 및 설치비용)
- ▶ 시행일 : 2013.1.

### 석면해체·제거작업 안전성 평가

고용노동부 건설산업예방과  
(☎ 02-6922-0953)

□□ 산업안전보건법□ 제□□조의□□ 및 동법 시행규칙 제□□조의□  
규정에 의거 석면해체·제거업체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 
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

□□ 이에 따라□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□  
□ 고용노동부 고시 제□□□□□호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를 제정함

-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□□□□여개 석면해체·제거업체가 매년  
□□□□여개소의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수행하고 있어

□□ □□□□년부터는 석면해체·제거업체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 
신뢰성을 확보하고 질 향상을 도모하여 근로자 및 공공의  
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정보마당>법령정보)훈령·예규·고시>석면조사 및 안전성  
평가 등에 관한 고시(고시 제2012-9호)

#### <석면해체·제거업자 안전성평가 평가>

- ▶ 추진배경 : 석면해체·제거업체 신뢰성 확보 및 질 향상
- ▶ 주요 평가내용
  - ① 작업기준 준수여부
  - ② 보유장비의 성능,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여부 등
- ▶ 시행일 : 2013.1.

##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

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
(☎ 02-2110-7219)

☐☐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☐

-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사망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·손자녀·형제자매에게 유족연금을 ☐☐세 미만까지만 지급했으나☐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기도 전에 연금지급이 중단되어 학업 및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☐☐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☐
- 또한☐근로자가 사망하면 기존에는 아내는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하고☐남편은 ☐☐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했으나☐ 남녀 차별 및 연령 차별적 요소라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하도록 남편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☐
- 유족연금 수급자격 변경내용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☐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최근 제·개정법령

### <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>

- ▶ 추진배경 : 산재근로자 유족 보호를 위한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
- ▶ 주요내용
  - ① 자녀 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연령을 상향(18세 미만 → 19세 미만)
  - ② 남편의 유족연금 지급 연령제한 폐지(60세 이상 → 폐지)
- ▶ 시행일 : 2012.12.18

**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 
대한 산재보험 가입 확대**

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
(☎ 02-2110-7223)

☐☐연기자☐☐공연 및 촬영 스태프 등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·도급 계약에 의하여 활동하는 예술인도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☐

- 그동안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은 예술활동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☐
- 산재보험법의 개정으로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활동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☐보험료 본인 부담☐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알림마당)☞고용노동뉴스☐보도자료☐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

**<2013년도 산재보험 가입확대 내용>**

- ▶ 추진배경 :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확대
- ▶ 주요내용
  - ① 적용대상 : 『예술인복지법』 제2조에 의한 예술인으로서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창작·실연·기술지원 등의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
  - ② 가입절차 : 예술활동 증명(한국예술인복지재단) ☞ 산재보험 가입신청(보수목적의 계약서첨부) ☞ 산재보험 승인(근로복지공단) ☞ 승인신청서 접수일의 다음날에 성립
    - \* 산재보험 가입신청 등의 보험사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보험사무대행 기관에 위탁 가능
- ▶ 시행일 : 2012.11.18.

## 7. 행정안전(소방·경찰)

###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 시행

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
(☎ 02-2100-5338)

□□대형사고 시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 주는 후진적 보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화재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에 대한 자기 책임 실현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

- 지금까지 영세한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피해자 보상이 곤란하여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 하였으나□□□□□□년도부터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하여 영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
- “화재배상책임보험”이란 화재□□폭발□□로 인한 타인의 사망·부상·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주가 업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피해보상을 위해 의무로 가입 하는 보험으로 가입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

□□신규 다중이용업소 □□□□□□년 □월 □□일부터

□□기존 다중이용업소 □□□□□□년 □월 □□일 □□□□월 □□일까지  
가입□□개월 이내

□□□□□□단□□영업장 면적 □□□□미만인 □개 업종□의 시행일 □□□□□□년  
□월 □□일

\* 5개 업종 : 휴게·일반음식점, 게임제공업, PC방, 복합유통게임제공업

#### <2013년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>

- ▶ 추진배경 : 안전에 대한 사회적 자기책임성 실현
- ▶ 주요내용
  - ① 사망자 1명당 최대 1억원(1사고당 사망자 수 무한)
  - ② 부상자 최대 2천만원 보상
  - ③ 재산피해 1사고당 최대 1억원 보상
- ▶ 시행일 : 2013.2.23.

**소방공무원 채용시험  
응시연령 상향 및  
시험과목 변경**

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
(☎ 02-2100-5316)

□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의 상한이 30세로 상향됩니다

• 2013년도까지 30세 이상 40세 이하까지 응시가 가능했던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이 2013년부터 30세 이상 40세 이하로 변경됩니다

• 또한 채용 계급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었던 특별채용시험 [제한경쟁]의 응시연령 상한도 동일하게 30세로 변경됩니다

□ 고졸자 채용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소방사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이 개편되었습니다

• 기존의 국어[한국사] 영어[소방학개론] 행정법총론 등 필수 [과목으로 실시되던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이

필수 [과목] 국어[한국사] 영어[과

선택 [과목] 소방학개론] 행정법총론] 소방관계법규] 사회] 과학] 수학 중 택2]으로 변경되었습니다

**<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 및 시험과목 변경>**

▶ 주요내용

① 소방공무원 응시연령상한 변경 : 30세 → 40세

②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과목 변경

• (종전) 국어, 한국사, 영어, 소방학개론, 행정법총론

• (변경) <필수 3> 국어, 한국사, 영어

<선택 2> 소방학개론, 행정법총론, 소방관계법규, 사회, 과학, 수학 中 택2



- 지금까지 법 위반시 즉결심판[법원출석]을 받아야 했던 경범죄 22개 항목\*에 대해서도 [즉결심판]부터는 통고처분 [법칙금 납부]이 가능하도록 변경되며 [위반 정도에 따라] [1만원~10만원]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

① 빈집등에 침입, ② 흉기 은닉휴대, ③ 폭행 등 예비, ④ 거짓신고, ⑤ 시체  
현장변경 등, ⑥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고불이행, ⑦ 관명사칭, ⑧ 마시는 물  
사용방해, ⑨ 의식방해, ⑩ 타인의 가족·기계 무단조작, ⑪ 위험한 불씨 사용,  
⑫ 거짓 인적사항 사용, ⑬ 자칫세 징수 등, ⑭ 총포 등 조작장난, ⑮ 장난전화  
등, ⑯ 지속적 괴롭힘, ⑰ 단말기 강요, ⑱ 과다노출, ⑲ 지문채취 불응, ⑳ 무임  
승차 및 무전차, ㉑ 물품강탈·청객행위, ㉒ 광고물 무단차탈, ㉓ 결행위, ㉔ 등  
물등에 의한 행위, ㉕ 출판물 부당게재, ㉖ 거짓광고, ㉗ 업무방해, ㉘ 양표매매

- ☞ (참고) 경찰청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입법예고>제2012-30, 31호 경범죄  
처벌법 시행령, 규칙 입법예고

- ▶ 추진배경 : 시대변화에 맞는 경범 위반유형 수정
- ▶ 주요내용
  - ① 통고처분 대상을 확대, 즉결심판 법정 출석 불편 완화
  - ② 관공서 주취소란, 지속적 괴롭힘, 전단지 살포 행위 처벌
  - ③ 철도특별사법경찰 통고처분권 확보로 지하철, 열차내 위반행위 즉시 단속
- ▶ 시행일 : 2013.3.22. (「경범죄 처벌법」 개정시행)

## 8. 보훈 · 국방

###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

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
(☎ 02-2020-5179)

□□국가를 위해 희생·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긍심 고취와 생활지원을 위해 매월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□□□□□□년도에는 보상금을 □□□인상하였습니다□

-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은 상이 □급이 받는 □□만 □천원에서 독립유공자 □□□등급 훈장자가 받는 □□□만원까지 대상별□ 상이등급별로 차등하게 지급되며□
- 특히□□중상이지자들의 신체적·경제적 고통과 각종 사회적 제약을 감안하여 중상이부가수당을 인상하여 매월 □□만□천원에서 □□□만 □천원을 지급합니다□

□□고엽제후유의증 고도 환자는 □만 □천원 인상된 □□만 □천원을 수령하게 되며□□·□□제적자녀는 □만원이 인상된 □□□만 □천원을□ 매월 지급 받습니다□

☞ (참고) 국가보훈처 홈페이지>보훈지원>보훈급여금>2013년 보훈급여금 지급액

#### <2013년도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>

▶ 추진배경 : 보훈가족의 명예선양과 생활안정을 위해 불가인상 수준을 감안하여 보상금 인상 필요

▶ 주요내용

- ① 2012년 대비 보상금 단가 4% 인상
  - 희생정도를 고려하여 전몰·순직군경 보상금은 2% 추가 인상
- ② 중상이지자들의 신체적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제약을 감안하여 중상이부가수당 인상(15~45% → 20~60%)
- ③ 참전유공자 등의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단가를 각 2만원 인상(무공 18만원 → 20만원, 참전 12만원 → 14만원)

▶ 시행일 : 2013.1.1.

※ ' 12.12.28일 현재 국회 예산심의중으로 최종금액 및 인상률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

## 군 책임운영기관 확대 지정

국방부 경영분석담당관  
(☎ 02-748-5380)

□□ 국방부는 □□□□년부터 육군 종합정비창□□ 해군 제□정비대대□□ 공군 종합보급창 □개 기관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□□

### 군 책임운영기관

-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군의 부대 및 기관

• □□□□년부터 시작하여 □□□□년 현재 국군인쇄창 등 □□개 군 책임운영기관을 운영한 결과□□업무처리기간을 평균 □□□ 이상 단축시켰으며 자체 기술개발 등으로 □□□□여역원의 국방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□

• □□□□년 육군 종합정비창과 공군 종합보급창 등 규모가 큰 부대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면 군 책임운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□□□□여명에서 □□□□여명으로 확대됩니다□

□□특히□□육군 종합정비창의 경우 연간 집행예산이 □□□□여 억원 규모로 획기적인 성과 향상이 가능할 것이며□□해군 □합대 정비대대 지정으로 해군 함대사령부의 정비대대가 모두 군 책임운영기관이 됨에 따라 정비부대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□

☞ 국방부 홈페이지>국방미디어>보도자료> '13년 軍 책임운영기관 추가지정

☞ 국방부 홈페이지>국방미디어>보도자료>2011년 군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 실시

### <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확대>

▶ 추진배경 : 기관장의 자율권 행사가 용이하고, 성과창출의 여지가 큰 규모의 전투근무지원 부대를 위주로 지정

▶ 주요내용

① 육군종합정비창, 해군3함대정비대대, 공군종합보급창 추가 지정

※ 2012년 현재 군 책임운영기관(14개)

국군인쇄창, 국군수도병원, 국군대전병원, 국군의학연구소, 육군2보급단, 육군3보급단, 육군항공기정비단, 육군특수무기정비단, 해군보급창, 해군1함대정비대대, 해군2함대정비대대, 공군40보급창, 공군82정비창, 공군83정비창

▶ 시행일 : 2013.1.1.

**평시 예비역 장교 ·  
부사관의 현역 재임용**

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
(☎ 02-748-5121)

□□ 전역 후 □년 이내의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을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하여 □~□년간 단기복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

- 우수한 중기복무자를 융통성 있게 충원하여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보장하고□□육아휴직 등 공석직위에 결원을 보충하여 조직운동을 활성화시키며□□군사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우수 예비역을 확보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 하게 되었습니다
- 전역 후 □년 이내인 중위 이상 장교□□중사 이상 부사관이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□□병과별□□계급별 인력소요를 판단하여 선발전형에 따라 우수자를 선발·활용할 계획입니다

□□이 제도는 관계법령□□규정을 정비하여 □□□□년 □월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

**<평시 예비역 장교·부사관의 현역 재임용>**

- ▶ 추진배경 : 우수한 중기복무자를 충원하여 안정적인 인력운동을 보장하고, 육아휴직 등 공석직위를 보충하고, 군사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우수예비역을 획득, 활용
- ▶ 주요내용
  - ① 전역 후 3년 이내의 예비역 장교·부사관을 재임용
  - ② 재임용 후 단기 복무 장교·부사관으로 활용
  - ③ 전역당시 계급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임용연령을 미제한
- ▶ 시행일 : 2013.6. 이후

## 한시계약군무원 채용제도 마련

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
(☎ 02-748-5107)

☐☐ 군무원인사법을 일부 개정하여 군무원 인력운영을 개선할 계획입니다☐☐

- 계약군무원 채용의 경우 ‘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위’에만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☐☐ 이를 공무원과 같이 ‘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’에도 일정기간 종사하는 ‘한시 계약군무원’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☐☐
- 이렇게 채용된 군무원은 ☐년 범위 내에서 출산휴가·육아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☐☐

☐☐이 제도가 도입되면☐☐업무공백 방지 및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☐☐ 유지함으로써 군무원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☐☐

### <한시계약군무원 채용제도 마련>

- ▶ 추진배경 : 군무원인사법을 일부 개정하여 한시계약군무원 채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
- ▶ 주요내용 : 한시계약군무원 임용
- ▶ 시행일 : 2013.2.(잠정)
- ※ 개정안 국회 본회의 심의 대기중

### 병 진급 최저복무 기간 조정

국방부 인력관리과  
(☎ 02-748-5135)

□□입대 후 심리적으로 가장 위축되기 쉬운 이등병의 병영생활 부담을 경감시키고□□조기 적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복무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□

- 이등병의 복무기간은 □개월에서 □개월로 단축하여 심리적 위축을 해소하고 병영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도록 하였습니다□
- 일등병의 복무기간은 □개월에서 □개월로 조정하고□□병장의 복무기간은 □개월에서 □개월로 조정하여 계급별 복무기간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□

#### <병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>

##### ▶ 조정 현황 비교

(단위 : 월)

| 구 분 | 이등병→일등병 | 일등병→상등병 | 상등병→병장 | 병장→전역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현 행 | 5       | 6       | 7      | 3 (해군 5, 공군 6)      |
| 조 정 | 3 (-2)  | 7 (+1)  | 7      | 4 (해군 6, 공군 7) (+1) |

▶ 시행일 : 2013.1.1.

**여성군인의 모성보호  
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**

국방부 국방여성정책과  
(☎ 02-748-5173)

□□ 여성군인의 임신·출산여건을 보장하고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모성보호제도를 보완□ 개선하였습니다□

□□ 출산율 향상 및 일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하여 □ 자녀이상 여군의 당직근무를 일정기간 면제하도록 하였으며□

\* 3자녀이상 여군의 셋째자녀 임신 시부터 셋째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당직근무 면제

□□ 임신 중이거나 유산·출산한 여군이 당해 연도에 체력검정을 보류하고자 할 때 제출서류를 완화하여 기존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□

\* 제출서류 : 군의관 소견서와 소속지휘관 확인서 ⇨ 군의관 소견서(또는 민간병원 산부인과 의사소견서), 출생증명서, 소속 지휘관 확인서 중 택일하여 제출

**<여성군인의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>**

▶ 추진배경 : 여성군인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으로 임신·출산여건 보장

▶ 주요내용

① 3자녀이상 여군의 셋째자녀 임신 시부터 셋째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당직근무 면제

② 임신/출산(유산 포함)여군의 체력검정 일시보류 시 신청서류 완화

\* 제출서류 : 군의관 소견서(또는 민간병원 산부인과 의사 소견서), 출생증명서, 소속지휘관 확인서 중 택일

▶ 시행일 : 2013.1월

### 예비군훈련 통지방법 개선

국방부 예비전력과  
(☎ 02-748-5245)

☐☐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예비군훈련 통지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☐☐

- 예비군훈련 통지는 훈련차수에 따라 우편엽서☐☐ 등기우편☐☐ 인편에 직접 전달 순으로 교부되고 있으나☐☐이중 우편엽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여 개선이 요구되어 왔습니다☐☐
- 따라서☐☐예비군 기본훈련의 경우 기존의 우편엽서가 아닌 ‘창봉투’ 형 우편으로 통지하여 성명☐☐주소☐☐군번 등 개인정보사항을 보호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☐☐

#### <예비군훈련 통지방법 개선>

- ▶ 추진배경 : 우편엽서를 이용한 예비군훈련 통지 시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 개선
- ▶ 주요내용
  - ① 예비군 기본훈련 시 우편엽서로 통보하던 방법을 창봉투형 우편통보로 개선
- ▶ 시행일 : 2013.1.1.



##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시행

국방부 예비전력과  
(☎ 02-748-5245)

□□ 평일 훈련을 받기가 어려운 예비군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  
시행하고 있는 휴일 훈련일수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

- 따라서 □□ 휴일 훈련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부대  
여건을 고려하여 훈련일수를 늘리고 □□ 일요일 훈련 비중도  
현재보다 높일 예정입니다 □□
- 휴일훈련 일정은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를  
통해 확인하고 훈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

### <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시행>

- ▶ 추진배경 : 도시지역 휴일 예비군훈련 수요 증가에 따른 확대 시행
- ▶ 주요내용
  - ① 부대여건을 고려, 도시지역의 휴일 예비군 훈련일수 확대
    - ※ 종전에 비해 일요일 훈련 비중도 증가
- ▶ 시행일 : 2013.1.

## 연대급 통합예비군 훈련장 시험 운영

국방부 예비전력과  
(☎ 02-748-5241)

□□전국 시□군□구별로 산재된 대대급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 하던 예비군훈련을 현대화□과학화된 연대급 훈련장으로 통합□이전하여 상설훈련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□

-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□□□□년 하반기부터 □개 훈련장을 시험□운영할 계획입니다□

□□시험운영지역은 서울특별시 광진□성동□동대문구 예비군 훈련장인 금곡훈련장으로□□□□□□년 하반기부터 □□□□년까지□ 시험적용 후 □□□□년까지 광역시 이상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□

- 연대급 통합 예비군훈련장은 현재보다 더욱 전문화된□ 예비군훈련장이 될 것이며□□이를 향후 예비군 훈련기간 동안 상설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□

### <연대급 통합예비군훈련장 시험 운영>

- ▶ 추진배경 : 전국에 노후되고 산재된 대대급 예비군훈련장을 과학화된 연대급 예비군훈련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며, 이에 앞서 우선 1개 훈련장을 시험 운영함
- ▶ 주요내용
  - ① 연대급 통합 예비군훈련장 시험운영 지역 : 56사 금곡 예비군 훈련장(경기도 남양주시 소재)
  - ② 대상 : 서울특별시 3개구 예비군 (광진, 성동, 동대문구)
  - ③ 시험시기 : 2013년 하반기~2015년
- ▶ 시행일 : 2013.하반기

## 병 봉급 인상

국방부 복지정책과  
(☎ 02-748-6613)

□□병 봉급을 □□□□년 대비 □□□□인상하였습니다

-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 봉급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로□□병사들의 복무의욕 고취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

### <병 봉급 인상>

▶ 추진배경 : 병의 복무의욕 고취 및 복지향상에 기여

▶ 주요내용 : 병 봉급을 2012년 대비 15%인상

(단위 : 원)

| 구 분          | 계급  | 2012년   | 2013년   | 증액     |
|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병 봉급 인상(15%) | 이등병 | 81,500  | 93,700  | 12,200 |
|              | 일등병 | 88,000  | 101,200 | 13,200 |
|              | 상등병 | 97,500  | 112,100 | 14,600 |
|              | 병장  | 108,000 | 124,200 | 16,200 |

▶ 시행일 : 2013.1.1. (잠정, 예산안 국회심의중)

## 군인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

국방부 복지정책과  
(☎ 02-748-6613)

□□□□□□년도 장병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각종 수당을 인상하였습니다□□

### •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

□□ 비무장지대 등 격오지 지역에서 근무하는 병사와 근무환경이 열악한 함정에서 근무하는 병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병사의 특수지근무수당과 함정근무수당을 인상하였고□□

□□ 계호업무수당 지급대상자를 현재 군인교도소 담당군인에서 군 교정시설 담당군인까지 확대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사기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□□

### <군인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>

- ▶ 추진배경 :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사기 향상
- ▶ 주요내용
  - ① 병 특수지근무수당 10% 인상(갑지역 기준 : 15,000원 → 16,500원)
  - ② 병 함정근무수당 10% 인상(29,700원 → 32,700원)
  - ③ 계호업무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(군인교도소 담당군인 → 군 교정시설 담당군인 포함)
- ▶ 시행일 : 2013.1.1. (잠정, 예산안 국회심의중)

## 현역병 복무기간 중 건강검진 전면 확대

국방부 보건정책과  
(☎ 02-748-6655)

□□군 입대 시 건강하게 입영한 병사가 건강한 병영생활을 하고 건강한 국민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건강 검진을 전면 확대합니다

- □□□□년 시범사업으로 일부 부대만 실시하였던 건강검진은 □□□□년에는 전 병사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□□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□이 발령되었습니다

□□건강검진은 상등병 진급 전·후 □개월 이내 해당되는 병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□□

□□군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일부 도서지역은 민간 검진기관을 이용하여 검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

### <현역병 복무기간 중 건강검진 전면 확대>

- ▶ 추진배경 : ‘12~’ 16 군 의료체계 개선사업의 일환 및 「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정 등으로 상등병 진급자 건강검진 전면 확대
- ▶ 주요내용
  - ① 사단급 의무대 및 군 병원 등에서 상등병 진급 전·후 3개월 이내에 건강검진 시행
  - ② 군 의료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일부 도서지역 병사는 민간검진기관 이용
- ▶ 시행일 : 2013.1.1.

### 군 병원 외래진료 셔틀 운행 확대

국방부 보건정책과  
(☎ 02-748-6648)

□□장병들의 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전방 지역의 □개 군단 지원 병원을 중심으로 외래진료 셔틀버스를 확대 운행할 계획입니다□

- □□□□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고양□파주 지역의 국군고양병원과□강원 홍천□인제 지역의 국군홍천병원을 우선 시행하고□□□□년 하반기부터 국군양주□일동□춘천□강릉병원까지 확대 합니다□
- 또한□김포 지역의 해병 부대원들을 위하여 국군수도병원에서 외래진료 셔틀 □개 노선을 운행할 예정입니다□

#### <군 병원 외래진료 셔틀 운행 확대>

- ▶ 추진배경 : 장병들의 진료 접근성 향상
- ▶ 주요내용
  - ① 고양·홍천병원 시범운행 : 2012년 1월 ~ 2013년 6월
    - \* 노선 : 고양 4개, 홍천 3개
  - ② 양주·일동·춘천·강릉병원, 해병2사단 확대 운행 : 2013년 7월~
    - \* 노선 : 양주 4, 일동 3, 춘천 3, 강릉 2, 해병2사 1개
- ▶ 시행일 : 2013.7.1.

- 2024년은 강원도의 2군사령부 예하 신병교육대로 입소하는 전체 훈련병 및 2군사령부 예하 일부 신교대의 훈련병 2,000명은 전체 육군 입소 장병 20,000명부터는 해군 및 공군을 포함한 전체 입소 장병에 대해 2형간염백신 2회 접종을 받게 됩니다
- 이로 인해 모든 군 장병들이 2형 간염에 대한 집단 면역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

- ▶ 추진배경 : 최근 청장년층의 A형간염 발생증가 및 2012년도 군 예방접종심의회 결과
- ▶ 주요내용
  - ① 2013년 1군사령부 예하 신교대 및 일부 경기지역 신교대 훈련병 A형간염백신 접종
  - ② 2014년 전체 육군 입소 장병 접종
  - ③ 2015년부터 해·공군 포함 전체 입소 장병 접종
- ▶ 시행일 : 2013.4.1.

### 군 작전차량 유료도로 통행절차 개선

국방부 국제군수협력과  
(☎ 02-748-5757)

□□군 작전차량이 유료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“군 작전 차량증”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던 절차를 개선하여 군의 작전신속성을 높였습니다□□

- 이를 위해 국방부는 관련법령 개정 및 유관기관과 협조를 추진했고□□□□□년 □□월부터 ‘외관상 군 차량으로 식별이 가능한 군 작전차량’은 톨게이트를 바로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□□

- 이로써 군 작전차량의 톨게이트 통과시간이 단축되어 작전 신속성이 높아지고□□ 주요 도로에서의 교통흐름이 보장되어 대군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□□

□□ 또한□□ 연간 □□□□□여장의 “군 작전차량증” 제작에 따른 행정소요가 줄어들어 예산절감 및 군 본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□□□

#### <군 작전차량 유료도로 통행절차 개선>

▶ 추진배경 : 유료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면제받기 위한 “군작전 차량증” 제시절차를 개선하여 행정소요를 감소시키고, 작전신속성 보장

##### ▶ 주요내용

① 외관상 군 차량으로 식별 가능한 모든 군 차량의 경우, 유료도로 톨게이트에서 “군 작전차량증” 제시절차 폐지

##### ② 추진

- 2012년 3월~ : 관련법령 개정 국토부 협조 추진

- 2012년 7월~ :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기관 협조추진

※ 외관상 군 차량으로 식별가능한 범위 협의 완료

- 2012년 9월 24일 :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공포(관보게재)

- 2012년 10월 1일~ : 개선된 유료도로 통행절차 시행 및 추진 현황 파악

▶ 시행일 : 2012.10.1.



### 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적용

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 
(☎ 02-2079-6445)

- 2014년부터 「근로기준법」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상한을 초과한 작업시간과 해당 작업시간에 대한 비용은 방산원가 계산 시 제외됩니다
- 지금까지 해당 업체의 실제 발생한 노무비를 전액 인정하여 원가를 계산하였으나 방산분야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기업의 자발적 공정 효율화를 위하여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할 계획입니다

☞ 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

#### <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적용>

- ▶ 추진배경 : 방산분야 근로자 권익 보호 및 기업의 공정 효율화
- ▶ 주요내용
  - ① 방산원가 계산 시 「근로기준법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상한을 초과한 작업시간 및 해당 작업시간에 대한 비용을 불인정
- ▶ 시행일 : 2013.2. (잠정)
  - ※ 행정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일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 변동될 수 있음

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 
(☎ 02-2079-6445)

• □ 산업발전법 ㉠ 따른 생산성경영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증 등급에 따른 추가이윤 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 □ 이상 □□□□□이 보상됩니다 ㉡ 인증 신청 □□ 한국생산성본부 □

☞ 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

- ▶ 추진배경 : 방산 참여 기업의 경영혁신 및 공정 효율화 촉진
- ▶ 주요내용
  - ① 「산업발전법」에 따른 생산성경영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 대해  
인증등급 별 추가이윤 보상(최대 1%p)
- ▶ 시행일 : 2013.1. (잠정)

※ 행정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일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 변동될 수 있음

**방산원가 계산 시  
상용품 적용 등에  
대한 인센티브 제공**

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 
(☎ 02-2079-6445)

□□민간분야 신기술 도입 및 경쟁조달 활성화를 위하여 상용품 적용 등을 통하여 원가를 절감한 기업에 인센티브가 제공 됩니다

- 상용품 적용 및 상용□성능형 규격으로 전환 등을 통하여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부품 단가를 □□□□이상 절감한 경우□□향후 □년간 방산원가 계산 시 절감이전의 실적가격을 원가로 인정하게 됩니다

☞ 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

**<상용품 적용 등을 통한 원가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>**

- ▶ 추진배경 : 민간분야 신기술 도입 및 경쟁조달 활성화
- ▶ 주요내용
  - ① 상용품 적용 및 상용·성능형 규격 전환 등을 통해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부품 단가를 20% 이상 절감 시 향후 5년간 실적 가격을 원가로 인정
- ▶ 시행일 : 2013.2.(잠정)
  - ※ 행정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일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 변동될 수 있음

**방산원가제도 개선을  
통한 중소·중견기업에  
대한 지원 확대**

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 
(☎ 02-2079-6445)

□□방위산업의 기반을 견고히 하여 지속성장 할 수 있도록 방산  
중소□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□

-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국방통합  
원가시스템 참여율이 저조하였으나□□□□□□년부터 중소기업의  
국방통합원가시스템 연계 비용의 일부□□□□를 계약 시점에  
직접 지원합니다□
- 또한□□중견기업의 ‘각종 지원 중단에 따른 경영부담’을  
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종료 후 □년  
이내인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방산원가 계산 시 중소기업과  
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□

☞ 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

**<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>**

▶ 추진배경 : 중소·중견기업 역량 강화를 통한 방위산업의 기반  
견고화

▶ 주요내용

- ① 중소기업의 국방통합원가시스템 연계 비용의 일부(50%)를 계약  
시점에 직접 지원
- ②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종료  
후 5년 이내인 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방산원가 계산 시 중소  
기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

▶ 시행일 : 2013.2.(잠정)

※ 행정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일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 변동될 수 있음

**방산원가제도 개선을  
통한 방산수출에 대한  
지원 확대**

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 
(☎ 02-2079-6445)

□□방산시장 확장 및 수출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확대를  
위하여 방산수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

- 지금까지 방산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에 따라 방산수출에  
대한 이윤을 보상하였으나□□□□□□년부터 최초수출 및 수출  
확대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이윤이 지급됩니다

□□□□억원□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□년 이내 중견기업은  
□억원□중소기업은 □억원□이상 최초수출 또는 직전 □년  
평균 대비 □□□□이상 수출확대 기업에 대해서는 □□□□의  
추가이윤이 지급됩니다

- 또한□□최근 현지 시험평가가 방산수출의 필수요건으로  
작용함에 따라 업체의 원활한 시험평가를 위해 해외 시험  
평가비의 원가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

□□시험평가 시 소모되는 유류□탄약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되□□  
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업체도 해외 시험평가비의 일부  
□□□□를 부담하게 됩니다

☞ 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

**<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방산수출에 대한 지원 확대>**

▶ 추진배경 : 방산시장 확장 및 수출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 
확대 촉진

▶ 주요내용

- ① 최초수출 또는 수출확대 기업에 대한 추가이윤 보상(0.5%p)
- ② 해외 시험평가비의 원가인정 범위 확대

▶ 시행일 : 2013.1.(잠정)

※ 행정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일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 변동될 수 있음

###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확대

방위사업청 수출진흥과  
(☎ 02-2079-6454)

□□국방과학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수출하거나 국방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민수용 품목을 생산하려는 자에게 부과되는 국방과학기술료에 대해□□중견기업인 경우 최대 □□□까지 기술료 감면이 확대됩니다

- 지금까지□□중소기업기본법□□제□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 □□□의 기술료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□□산업발전법□□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□년 기간의 만기 후에도 □년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□□□의 기술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

☞ 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

#### <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확대>

- ▶ 추진배경 : 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확대
- ▶ 주요내용
  - ①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중견기업 중 그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액의 50% 감면
- ▶ 시행일 : 2013.2.(잠정)
  - ※ 행정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일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 변동될 수 있음

「군용항공기 비행  
안전성 인증에 관한  
법률」 개정

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  
(☎ 02-2079-6707)

□□□□년 □월부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 
「이하 “군감항법”」개정안이 시행됩니다

- 군 감항인증법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국가기관·경찰용 및  
세관용 항공기에 군 감항법 준용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 
연구개발 군용항공기의 활용범위를 넓히는 효과를 가져올  
것으로 예상됩니다
- 또한 단계별 감항성 심사의 절차를 설계단계의 형식인증과  
양산단계의 생산확인으로 명확히하여 감항인증 절차의  
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
- 수출용 군용항공기에만 부과토록 한 수수료를 국내판매  
시에도 가능토록 하여 수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였  
습니다

□□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□□년 법률 제정 이후 시행경험 반영  
및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군 감항인증제도의 효율성과  
투명성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

☞ 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

<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>

- ▶ 추진배경 : '09년 법률 제정 이후 시행간 보완사항 및 입법미비사항  
개정
- ▶ 주요내용
  - ①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대상 확대 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·  
세관용 항공기)
  - ②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수수료 부과 대상 확대 (수출용 군용항공기  
→ 군용항공기)
- ▶ 시행일 : 2013.3.19.

### 업체 생산 및 정비 능력 확인체계 강화

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 
(☎ 02-2079-4123)

□□□□□년 □□월부터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및 운용절차를 보완하여 계약불이행 및 품질하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□□

- 신규조달 또는 직전 계약건에 하자가 발생한 품목 등 하자 발생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시제품검사에 합격한 자와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국방조달 품질이 보장되도록 생산 능력 확인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□□
-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에 대한 신규업체 진입과 불합격업체의 재검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입찰공고 이전에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□□해당업체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규정하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되게 하였습니다□□
- 특히□□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중 해당품목 계약불이행 사실이 있는 업체와 규격면제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품목의 새로운 납품 실적이 있을 때까지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을 실시합니다□□

☞ 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

#### <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체계 강화>

##### ▶ 추진배경

- ① 신규조달 품목, 성능개량품목,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가 발생한 품목 등의 경우에 조달되는 물품의 품질하자 예방을 위하여 시제품검사 필요
- ② 참여업체 확대를 위하여 업체 요청 시 시제품검사를 수시로 할 수 있는 절차 필요
- ③ 계약불이행업체 등에 대한 생산·정비능력 확인면제 제외 필요

##### ▶ 주요내용

- ① 조달물품의 품질하자 예방을 위한 시제품검사 방안 마련
- ② 입찰공고 이전에도 수시로 시제품검사를 요청받아 검사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
- ③ 계약불이행업체 등에 대한 생산·정비능력 확인면제 제외
- ④ 업체 생산·정비능력 확인을 위한 설비 및 인력 보유기준일 추가

▶ 시행일 : 2012.12.18.



## 중앙신체검사소 대구 혁신도시 이전

병무청 징병검사과  
(☎ 042-481-2918)

□□중앙신체검사소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□□□□년 □□월 □□일 서울에서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였습니다□

- 중앙신체검사소는 신체등위판정의 공정성 제고 및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지난 □□□□년 설립된 병무청 소속기관으로□ 지방병무청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□□□급 판정대상 중 재확인이 필요하거나 기타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등 연간 □만여 명에 대하여 최종 신체등위를 판정하고 있습니다□
- 한편□□대구혁신도시는 건설초기로 교통□□숙박시설 등 편의 시설이 부족하여 인근 전철역□안심역□에서 중앙신체검사소 까지 자체 차량을 왕복운행하고 또□□모범 음식점 등을 파악하여 신체검사 통지서 교부 시 사전 안내함으로써 수검자 및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□

### <중앙신체검사소 대구혁신도시 이전>

- ▶ 추진배경 :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중앙신체검사소를 대구혁신 도시로 이전 결정(2005년 6월)
- ▶ 주요내용
  - ① 위치 : 대구 동구 동내동 384
  - ② 사업개요
    - 사업규모 : 대지 7,885㎡, 건물 5,558㎡(지하1층, 지상 3층)
    - 공사착공 : 2011년 4월말 / 준공 : 2012년 12년 17일(입주 : '12.12.21.)
  - ③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
    - 대중교통 노선 개설시까지 자체 승합차 운행(안심역 → 중앙 신체검사소 1.5km)
    - 음식점·숙박시설은 관할 자치단체 협조하여 모범업소 파악, 통지서 교부시 사전 안내
- ▶ 이전일 : 2012.12.21.

### 장애인 등록자에 대한 병역감면 절차 강화

병무청 징병검사과  
(☎ 042-481-2916)

□□장애인 등록자에 대하여 병역면제 처분 이후 장애등록 취소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병역감면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

- 지금까지는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는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장애등록 사실 등을 확인하여 병역면제 처분을 하고□□처분 후 장애상태 호전 등에 따른 장애등록 취소 여부에 대한 별도의 확인 절차가 없었습니다
- 그러나□□□□□□년부터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고 징병검사□□연령인 □□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□□장애등급의 조정을 위한 장애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존의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병역처분을 합니다

#### <2013년도 장애인 등록자 병역감면제도 변경 사항>

- ▶ 추진배경 : 19세 이전 장애등록 취소자에 대하여도 기존 병역면제 처분이 유지되는 등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 대두
- ▶ 주요내용
  - ①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장애인 등록자가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장애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 실시
- ▶ 시행일 : 2012.12.20.

**해양경찰순경(전환복무)  
모집 및 선발 업무 해양  
경찰청 이관**  
병무청 현역입영과  
(☎ 042-481-2738)

□□ 지금까지 병무청장이 해양경찰순경[전환복무자]을 모집·선발하였으나□□□□□□년부터는 복무기관의 장인 해양경찰청장이 모집·선발하여 병무청장에게 추천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입영통지합니다[

- 해양경찰순경은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발되기 때문에□□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과 입영 기일을 연기 중인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[

☞ (참고) 해양경찰청 홈페이지>뉴스·소식>공지/공고>해양경찰 전경 모집 계획 알림

**<해양경찰순경 모집·선발 업무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>**

- ▶ 추진배경 : 복무기관의 장이 직접 모집·선발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민원편의 증대
- ▶ 주요내용
  - ① 해양경찰순경 모집·선발업무 이관(병무청장 → 해양경찰청장)
- ▶ 시행일 : 2013년 입영자부터

### 자녀가 있는 사람의 상근예비역 편입 범위 확대

병무청 현역입영과  
(☎ 042-481-2716)

□□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이혼  
· 미혼자도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 
확대합니다

• □□□□년부터는 이혼 등으로 인한 결손가정의 자녀양육 문제  
심각성□□자녀양육의 정책취지 및 상대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

•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고 있는 이혼자□□미혼자도 본인의  
신청에 의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·복무할 수 있습니다

\* 다만, 의대 졸업(졸업예정자 포함)한 사람과 박사학위 과정 입학이상의  
학력자는 현행과 같이 제외

#### <자녀가 있는 사람의 상근예비역 편입 범위 확대>

▶ 추진배경 :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상근예비역 편입 범위 확대

▶ 주요내용

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이혼자, 미혼자도 상근예비역  
으로 편입·복무 가능

▶ 시행일 : 2013.1.1.

### 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 분야 선택기준 조정

병무청 산업지원과  
(☎ 042-481-2771)

☐☐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할 수 있는 수산업 분야 선택 기준을 총톤수 ☐☐☐톤 이상에서 ☐☐☐톤 이상으로 조정하여 수산계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활성화 및 근해어업계의 해기사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☐

- 그동안☐☐병역법 시행령☐상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할 수 있는 수산업 분야 선택기준은 ☐☐☐톤 이상인데 비해☐☐수산업법☐상 근해어업 허가 톤수는 ☐☐☐톤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근해어업 분야 종사자는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없었습니다☐수산업 분야 선택기준 조정에 따라 근해어업 분야도 ☐☐☐☐년도부터 다음해에 필요한 인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☐

#### <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 분야 선택기준 조정>

- ▶ 추진배경 : 수산계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활성화 및 근해어업계 해기사 인력난 해소
- ▶ 주요내용
  - ① 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 분야 선택 기준 조정(총톤수 200톤 이상 → 100톤 이상)
- ▶ 시행일 : 2012.12.20.

##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 및 절차 개선

병무청 산업지원과  
(☎ 042-481-2771)

□□공익법무관의 편입지원 시기를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□□일이 되는 날까지로 조정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□

- 지금까지는 공익법무관의 편입지원 시기가 편입되는 해의 □월 □□일까지였습니다□반면□□변호사 시험 발표시기는 □월 □□일 이후여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졸업하는 해에 공익법무관에 지원할 수가 없었으나□□앞으로는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조정으로 졸업하는 해에 지원이 가능합니다□

□□또한□□학교의 장 등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편입지원서를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□

### <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 및 절차 개선>

- ▶ 추진배경 :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변호사 시험결과를 반영한 공익법무관 지원시기 조정
- ▶ 주요내용
  - ①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 조정(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→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)
  - ② 편입지원 절차(학교의 장 등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 → 본인이 직접 병무청장에게 제출)
- ▶ 시행일 : 2012.12.20.

**‘유학’ 사유 국외여행  
허가기간 제한연령  
상향 조정**

병무청 병역지원과  
(☎ 042-481-2965)

□□‘유학’□사유로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한 연령을 상향 조정합니다

- 지금까지 ‘유학’□사유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기간은 □□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□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하고 있어□제한 연령이 □□세인 ‘박사학위’□과정 등은 상대적 차별의 소지가 있었습니다
- 이러한 차별 소지를 없애기 위해 ‘유학’□사유 국외여행 허가 기간의 제한연령을 □□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□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

**<‘유학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 상향 조정>**

- ▶ 추진배경 : 병역법 제71조(병역의무 등의 감면) 개정으로 현역입영 연령이 상향 조정(30세→35세)됨에 따라 ‘박사’ 과정 등의 유학 사유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기간의 합리적 조정 필요
- ▶ 주요내용
  - ① ‘유학’ 사유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기간을 29세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학사 ~ 박사 전 과정에 대하여 동일하게 1년간의 기간연장을 허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 제고
- ▶ 시행일 : 2012.12.20.

## 국외여행허가자의 국내 장기체재 시 허가 취소

병무청 병역자원과  
(☎ 042-481-2965)

□□‘국외이주’□□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 중에 귀국하여 □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 체재 시 국외 여행허가를 취소합니다

- 지금까지는 ‘국외이주’□□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중에 귀국하여 국내 장기 체재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병역연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었습니다
- 이러한 악용 소지의 제거를 위해 허가기간 중에 귀국하여 □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 체재 시에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

### <국외여행허가자의 국내 장기체재자 허가 취소>

- ▶ 추진배경 : ‘국외이주’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병역연기 수단으로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악용할 소지 차단 필요
- ▶ 주요내용
  - ① ‘국외이주’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중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 체재 시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병역연기 수단으로의 악용 소지 제거
- ▶ 시행일 : 2012.12.20.



**「병역명문가 찾기」  
접수 3월에서 2월로  
변경**  
병무청 행정관리담당관실  
(☎ 042-481-2992~3)

□□□ 병역명문가 찾기□신청서 접수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□

- 지금까지□ 병역명문가 찾기□는 신청서를 매년 □월에 접수 하였으나□ 시상식□월□ 행사 등 내실화를 위하여 □□□□년 부터는 □개월 앞당겨 □월부터 접수합니다□

☞ (참고) 병무청 홈페이지>공지사항>달라진 '병역명문가 선양사업'

#### <2013년도 「병역명문가 찾기」 접수시기 조정>

- ▶ 추진배경 : 시상식(6월) 행사 등 내실화를 위하여 「병역명문가 찾기」 접수 시기 조정
- ▶ 주요내용
  - ① 「병역명문가 찾기」 접수 시기 1개월 앞당김(3월 → 2월)
- ▶ 시행시기 : 2013.2.

**병역명문가, 남성이  
없는 경우 군복무  
마친 여성 등 포함**

병무청 행정관리담당관실  
(☎ 042-481-2992~  
-)

□□지금까지 □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던 기준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

- 양성평등□여성의 군 지원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 군복무자를 포함시키는 한편
-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비군인 신분으로 □·□□전쟁에 참전한 사람을 병역명문가 선정기준에 포함시켰습니다

☞ (참고) 병무청 홈페이지>공지사항>달라진 '병역명문가 선양사업'

**<2013년도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확대>**

- ▶ 추진배경 :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제도 개선
- ▶ 주요내용 : 병역명문가 선정기준 완화
  - ①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이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도 포함
  - ② 국민방위군, 학도의용군 등 비군인으로 6·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포함
- ▶ 시행시기 : 2013년

## 9. 교육·문화(방송통신)

### 교육감 소속 교육 전문직원의 지방직화

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 
(☎ 02-2100-6243)

□□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교육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·도 교육청의 효율적인 정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

- 지금까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방직공무원과 국가직[교육전문직]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애로가 있었으나

□□관련법 개정을 통해□□□□□□년부터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일반직·기능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채정·운영이 가능하여 시·도별 여건에 적합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

## 시·도교육청 총액 인건비 전면 시행

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직과  
(☎ 02-2100-6243)

□□□□□□년 □월 □일부터 시·도교육청에 총액인건비제를 전면 시행하게 됨에 따라 시·도교육청에서는 조직·인력운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

- 지금까지는 □년마다 고시하는 표준정원에 따라 시·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통제되어 급변하는 교육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

□□총액인건비제의 시행으로 시·도별 여건에 적합한 정원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고□□특히 지방공무원 외에 사립학교 행정직원□□학교회계직원을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

- 아울러 ‘과’ 단위 기구정수제를 ‘국’ 단위 기구정수제로 전환하고□□지역교육청의 설치기준을 인구□□학생규모에 따라 □개 유형으로 다양화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
- 향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이 지방직화되어 총액인건비제에 추가로 포함되면 실질적인 시·도교육청의 자율적 인력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

### <2013년도 총액인건비 시행 주요내용>

- ▶ 현행 법령상의 기구설치 기준(과단위 기구정수제)을 국단위 기구정수제로 변경
- ▶ 지역교육청 기구 설치기준을 인구, 학생규모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다양화
- ▶ 지역교육청에 두는 각종 센터 직제화, 1~2개센터로 통합·운영
- ▶ 본청의 기획·감사기구의 장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·4급으로 조정하고, 기획담당 기구의 장 밑에 1명(경기 2명)의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두도록 함
- ▶ 총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의회 및 주민통제 강화
- ▶ 법령상의 기구수·정원책정 기준 폐지(다만 4급 정원 승인권 유지)

### 5세 누리과정을 만 3~4세까지 확대 시행 ('13.3월)

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 
(☎ 02-2100-6556)

□□□□년 □월부터 만 □□세 유아에게도 만 □세와 같이 누리과정이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

-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□□년 □월부터 ‘□□세 연령별 누리과정’으로 통합하여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합니다
- □□□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소양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□□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
- 유아학비·보육료 지원도 □□□□년부터는 만 □□세 모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계층에 확대 지원하게 됩니다
- 누리과정의 확대 시행으로 만 □□세 유아교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학부모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유아의 교육 받을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

〈연도별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〉

| 구 분       | 연령  | 2012년              | 2013년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유아학비, 보육료 | 만5세 | 전계층, 월 20만원        | 전계층, 월 22만원<br>(사립유치원, 어린이집) |
|           | 만4세 | 소득하위 70%, 월 17.7만원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만3세 | 소득하위 70%, 월 19.7만원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국·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, ('12년) 5.9만원→('13년) 6만원

☞ (참고) 교과부 홈페이지(알림마당)보도자료)내년 만 3~4세아도 '누리과정(공통과정)' 도입, 유치원교육 100년만에 확 달라진다

**저소득층 초·중·고  
학생 교육비 지원  
절차 개선**

교육과학기술부 학생복지과  
(☎ 02-2100-6521)

☐☐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편하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☐☐소득과 재산의 수준에 따라 공정하게 교육비를 지원받도록 할 계획입니다☐

- 지금까지 학교에서 처리하던 초☐중☐고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를☐  
☐☐☐☐년 ☐월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게 됩니다☐

☐☐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 
☐회만 신청하면 대상자격을 유지하는 한 매년 계속해서☐  
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☐ 지원받는 학생의 노출도  
최소화 됩니다☐

※ 방문 신청시 읍면동 주민센터의 혼잡이 예상되므로, 편리한 교육비  
신청을 위해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.

- 또한☐☐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 
활용하였으나☐☐☐☐년부터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 
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☐

☞ (참고)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
절차 개선

**<2013년도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>**

- ▶ 추진배경 : 낙인효과 방지, 교육비 지원 공정성 확보, 학부모 편의성 향상
- ▶ 주요내용
  - ①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(온라인 신청의 경우 부(父)·모(母) 모두 공인인증서 필요)
  - ② 학교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
- ▶ 시행일 : 2013.2.

##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

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팀  
(☎ 02-2100-6415)

☐☐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학교 학습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☐

- ☐☐☐☐년에 차상위계층 ☐☐☐까지 지원하던☐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☐☐☐☐년에는 차상위계층 ☐☐☐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☐

☐☐또한☐☐인당 지원 규모도 ☐☐☐☐년 연☐☐만원☐월 ☐만원☐에서 ☐☐☐☐년 연 ☐☐만원☐월 ☐만원☐수준으로 상향하여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을 보다 현실화 하였습니다☐

- 이를 계기로☐☐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간 교육격차 완화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☐

〈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현황〉

| 구 분     | 2011년       | 2012년       | 2013년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지원범위    | 차상위 40%     | 차상위 70%     | 차상위100%     |
| 1인당지원규모 | 36만원(월 3만원) | 48만원(월 4만원) | 60만원(월 5만원) |
| 소요예산    | 1,758억원     | 2,880억원     | 3,388억원     |

**교직 적합한 인재 양성  
및 선발을 위해 교원자격  
검정 강화 및 신규채용  
제도 개선**

교육과학기술부 교원양성연수팀  
(☎ 02-2100-6482)

□□교직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원자격 검정을 강화하고□□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춘 우수한 교사 선발을 위해 교사 신규채용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□

- □□□□년 □월 □일 입학자부터 실기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사 자격 취득에 교원자격검정 성적기준 중 교직과목의 성적을 “□□점 이상”에서 “□□점 이상”으로 상향 조정합니다□

□□또한□□교원양성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보급한□□□□월 예정□□‘교직 적성·인성 검사 도구 표준안’을 기초로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교원양성과정별 교직 적성·인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□

〈교원양성과정별 교직 적성·인성 검사 실시 횟수〉

| 대상자                      | 교원양성과정 |        | 전문대학 |        | 4년제 | 교육대학원   |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2년제    | 3년제 이상 | 2년제  | 3년제 이상 |     | 5학기제 이상 | 4학기제 |
| 2013.3.1 이후 입학자          | 1      | 2      | 2    | 2      | 2   | 2       | 1    |
| 2013년 이전 입학자<br>(복학자 포함) | 권장     | 1      | 1    | 1      | 1   | 1       | 권장   |

- 교사 신규채용시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기존의 □단계 전형을 □단계로 축소하여 초등□유치원□초등특수 포함□은 □□□□년□□중등□비교과□중등특수 포함□은 □□□□년부터 시행합니다□

□ 시험단계별로 살펴보면□□차 시험에서는 ‘교육학□교직□’과 ‘전공□교육과정□’ 과목을 각각 논술형과 서답형으로 평가하고□□차 시험에서는 수업실연□교직적성 심층면접 등이 실시됩니다□

□□한편□□교사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및 역사관이 필요하다는□□인식하에 □□□□년 □월□일부터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응시과목에 ‘한국사□’과목을 추가할 예정이며□□한국사 능력검정시험 □급□유효기간 □년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□

☞ (참고)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임용시험 제도 선진화로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춘 교사를 선발한다.



###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

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
(☎ 02-3704-9523)

□□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 복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됩니다□□

- 예술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계약서 표준양식이 개발·보급되고□□이 표준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국가□□자자체 등에서 수행하는 문화예술 재정 지원시 우대를 받게 됩니다□□
- 또한 예술인의 직업 활동□□사회보장□□복지증진과 관련한 온라인 컨설팅이 추진되며□□ 예술인의 경력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예술인의 활동 실적 및 경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추적□□관리하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이 구축□□운영됩니다□□
- 이와 함께 예술인에게 취업지원 교육과 함께 수당을 지원하는 ‘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’과 예술 활동을 활용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는 ‘사회공헌 연계 창작준비금 지원’□□사업이 추진됩니다□□

☞ (참고) 문화체육관광부>알림마당>보도자료>11월 18일, ‘예술인 복지법’ 시행, 법을 통한 복지 지원 첫 출발

#### <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>

- ▶ 추진배경 : 열악한 예술인의 생활보호 및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
- ▶ 주요내용
  - ① 예술분야 계약서 표준양식 개발·보급 및 표준양식 사용시 재정 지원 우대
  - ② 예술인 경력 관리를 위한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운영
  - ③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
  - ④ 사회공헌 연계 창작준비금 지원
- ▶ 시행일 : 2013.1.1.

**문화예술교육의 질적  
성장을 위한 문화예술  
교육사 제도 시행**

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 
(☎ 02-3704-9406)

□□ 문화예술교육 자격을 명확히 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성□제고 및 질적 성장의 여건 마련을 위해 도입된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제도가 □□□□년 □월 □일 시행됩니다□

\* 문화예술교육사의 정의(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제2조제5호)

-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·진행·분석·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(문화예술교육사)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함

• 정부는 □□□□년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□□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문화역량 강화를 위하여 □ 문화예술교육 지원법□을 제정하였습니다□

□□ 이 법률에 따라 그동안 초·중등학교□□ 아동·노인복지시설 등의 교육시설에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□ 예술강사□을 배치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국민의 문화향수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□□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□

•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 정의 중 ‘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’을 ‘문화예술교육사’로 변경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신설 및 자격요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적 실기 능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자로서의 인성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□

□□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은 □급 및 □급으로 구분하며□□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학력·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자격요건은□ 문화예술교육 지원법□ 시행령□ 제□□조의□□ 제□항□ 별표 □□을 참조하시면 됩니다□

☞ (참고)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안내 홈페이지

<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>

- ▶ 추진배경 : 문화예술교육 자격을 명확히 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 효율성 제고 및 질적 성장여건 마련
- ▶ 주요내용
  - ①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문화예술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 부여(문화예술교육사 등급을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고, 등급별 학력·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자격요건 부여)
  - ②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「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」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제출
- ▶ 시행일 : 2013.2.18.

**유상포인트 및 전자  
대금지급 관련 콘텐츠  
이용자보호 강화**

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 
(☎ 02-3704-9311)

□□콘텐츠 이용 시 유상포인트□에 대한 정보 제공□전자적 대금지급 전 이용자의 동의여부 확인 및 결제 후 결제사실 통지 등□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□을 일부 개정□시행□□□□□월□합니다□

- 유상포인트를 발행하여 운용하는 사업자에게 자기자본현황□ 남은 금액 현금 반환□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사항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항을 알기 쉽게 표시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□
- 또한□콘텐츠 대금 결제 및 환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콘텐츠 거래시 전자적 방식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 이용자의 확인 및 결제 후□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□

\*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 방법으로서 재화 등을 구입·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수단

☞ (참고)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자료>훈령·예규·고시

**<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>**

▶ 추진배경 : 유상포인트 발행시 정보제공 및 전자적 대금지급·청약철회 절차 등 개선된 이용자보호 제도 알림

\* 「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」은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되었으나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어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일부 개정·시행('12.8월)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

▶ 주요내용

- ① 사업자가 유상포인트를 발행한 경우에 대한 정보제공 조항 신설
- ② 콘텐츠 거래시 전자적 방식에 의한 대금결제시 대금지급 전 이용자의 동의여부 및 결제 후 결제사실을 통지하도록 함
- ③ 콘텐츠 이용에 관한 계약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, 청약철회, 계약의 해지·해제·변경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함

▶ 시행일 : 2013.2.(잠정)

###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전면 실시

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정책과  
(☎ 02-750-2337)

□□□□□□년 □월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아날로그□□를 디지털□□로 교체하시면 지상파 방송을 고품질□□□□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

□□□□□□년 □□월 □□일 지상파 아날로그□□□□방송이 완전 종료 되므로 안테나를 통해 아날로그□□□□수상기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없습니다

- 잘 나오던 □□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전국 우체국과 주민센터에 디지털전환 정부지원을 신청하여 디지털□□로 교체하시거나□□아날로그□□에 디지털컨버터□□와 전용안테나 □□□□를 설치하여야 합니다

\* 디지털컨버터는 아날로그TV로 선명한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변환해주는 기기이며, 유료방송사의 셋톱박스와는 다른 제품입니다

〈디지털방송 수신기기 신청기한〉

| 구 분        | 경남      | 부산      | 대전<br>충남 | 전북       | 강원       | 광주<br>전남 | 대구<br>경북 | 수도권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신 청<br>기 한 | '13.1.4 | '13.1.9 | '13.1.16 | '13.1.23 | '13.1.25 | '13.1.30 | '13.2.6  | '13.3.31 |

※ 기한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(미표시 지역은 2012년에 신청기한 종료)

- 매월 별도의 요금을 납부하는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아날로그 □□□□수상기로 현재와 같이 □□를 계속 시청할 수 있습니다

☞ (참고)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공지사항> “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 정부지원 안내”

**청각·언어 장애인을  
위한 통신중계서비스  
'107 손말이음' 개통**

방송통신위원회 와이브로활성화팀  
(☎ 02-750-2542)

□□청각□언어 장애인이 전화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신중계서비스가 □□□□년 □월 부터□□□□손말이음□으로 새롭게 거듭납니다□

- 지금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화종류□음성□ 영상□ □□□□와 통신사별로 서로 다른 번호를 사용하여야 했으나□□□□□□년 □월 □일부터는 단일 번호 □□□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□

□□기억하기 쉬운 단일번호와 새이름 사용으로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□□서비스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□

\* 손말과 이음은 각각 수화와 중계를 뜻하는 순 우리말

☞ (참고) 통신중계서비스 홈페이지(<http://www.relaycall.or.kr>)

**< 통신중계서비스 번호 통합 및 명칭 변경 >**

- ▶ 추진배경: 통신중계서비스 이용자 편익 증진 및 서비스 활성화 도모
- ▶ 주요내용
  - ① 통신중계서비스 모든 전화번호를 107번 단일번호로 통합
  - ② 통신중계서비스 새이름 부여(107 손말이음)
- ▶ 시행일: 2013.1.1.

- 다만 기온 주간 주파수 대역의 무선마이크 이용자는 계도 기간이 종료( )월 이후로 예상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※ 계도기간 종료 후 700MHz 대 무선마이크를 이용할 시,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※ 2013년 이후 700MHz 대 무선마이크 수입·생산·판매 시 생산 중지 등  
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,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 
벌금에 처함

☞ (참고)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> 700MHz 무선마이크 등 주파수 이용 안내

##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도 강화

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반팀  
(☎ 02-750-2244)

□□ 최근 휴대용 무선기기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전자파 인체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

- 지금까지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인체의 머리에 주는 영향만을 고려하였으나 □□□□년 □월부터는 머리□□몸통□□사지 등 인체의 모든 부위로 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이며
- 이에 따라 전자파흡수율 인증 대상기기도 그간의 휴대폰에서 □□□□년부터는 노트북□□무전기□□무선마이크 등 인체에 근접□□□□이내□□사용하는 모든 휴대용 무선기기로 확대 적용하여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

☞ (참고)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>정책/정보센터>법령정보>고시> “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”

### <2013년도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확대 내용>

- ▶ 추진배경: 전자파로 인한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파흡수율 적용대상 기자재 확대
- ▶ 주요내용
  - ①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적용 확대(머리→ 머리/몸통)
  - ② 전자파흡수율 인증 대상 기기 확대(휴대전화→20cm이내의 인체 근접 사용기기)
- ▶ 시행일 : 2013.1. (전자파인체보호기준 및 대상기자재 관련고시)



**주요 정보통신서비스  
사업자에 대한 정보  
보호 인증 강화**

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보보호팀  
(☎ 02-750-2753)

☐☐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☐

- 지금까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안전 진단을 받았으나☐☐☐☐년 ☐월부터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강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☐

☐☐대상 사업자는 전국 규모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☐집적 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및 매출액 ☐☐☐억원 이상 혹은 일평균 이용자 수가 ☐☐☐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해당됩니다☐

- 또한☐☐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이 속한 분기까지 인증심사를 신청한 경우☐☐우선적으로 인증을 받을☐수 있습니다☐

**<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인증 제도 시행>**

- ▶ 추진배경 : 기업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
- ▶ 주요내용
  - ①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인증 의무 대상자로 지정
  - ② 의무 대상자가 인증을 받지 않으면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  - ③ 사업자등록일이 속한 분기까지 인증을 받도록 권고
- ▶ 시행일: 2013.2.

## 10. 농식품 · 산림

###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을 통한 열악한 농어촌 주거여건개선

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
(☎ 044-201-1553)

□□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로 “농어촌마을 리모델링시범사업”을 ‘□□년 ~ ‘□□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

- 동 사업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왔던 농어촌지역의 주거·주택□□관련사업□□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

\* 농어촌주택개량사업, 빈집정비, 전원마을조성사업, 농어촌뉴타운사업, 슬레이트 철거사업 등

※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및 방식등은 '13년 예산 확정 후 농식품부 홈페이지([www.mifaff.go.kr](http://www.mifaff.go.kr))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임

- 동 사업추진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주거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농어촌정비법

#### <농어촌리모델링 시범사업 주요내용>

▶ 추진배경 : 농어촌마을 공동화 및 고령화에 대응하고, 주거관련 정책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통합적 추진 필요

▶ 주요내용

① 농어촌마을의 기반시설정비, 농어촌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개선, 노후주택개량 등을 위한 보조 및 융자지원

▶ 시행일 : 2013.1.1.

※ (참정) '12.12.28일 현재 국회예산 심의중으로 최종 확정내용 등이 달라질수 있음

##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·운영

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 
(☎ 044-201-1574)

□□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 조사□연구 및 교육홍보를 위하여 전국의 주요 거점별로 농어업안전보건센터 □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□

\* 2013년도에 전국 국·공립 대학병원, 의과대학, 연구소 등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지정 예정

- 농어업안전보건센터의 조사□연구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 진단 및 판정기준 마련 등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을 체계적으로 연구·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□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

### <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·운영 >

- ▶ 추진배경 : 농어업인의 고령화 및 장기간 농작업 등으로 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
- ▶ 주요내용
  - ① 국·공립 대학병원, 의과대학, 연구소 등에 농어업안전보건센터 5개소 지정·운영
- ▶ 시행일 : 2013.1.1.

**‘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’로  
우수기업에 다양한  
혜택 제공**

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 
(☎ 044-201-1590)

□□ 농어촌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기업·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‘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’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

□□ ‘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’는 기업이 농어촌마을과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□□단체 등에 대하여 농식품부와 □사□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인증서를 발급합니다

-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등은 농어촌 사회공헌 활동기간이 최소 □년 이상 경과하고 그동안 활동실적과 성과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
- 신청기업에 대해서 사회공헌을 위한 조직구성□□사회공헌 실적과 활동의 다양성 정도 등을 평가 후 인증여부를 심사하여 확정하게 됩니다

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·□□□□  
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·□□□□  
계약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(알림마당)보도자료)농어촌을 사랑하세요, 기업이 성장합니다.

**<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 주요내용>**

- ▶ 추진배경 : 기업·단체의 농어촌사회공헌활동의 자율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
- ▶ 주요내용
  - ① 농식품부와 (사)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인증서 발급
  - ② 인증 기업은 자금조달(금리인하, 융자한도 상향 등), 정책사업 우선지원, 물품구매·용역 입찰시 가산점 부여 등 제도적 지원
- ▶ 시행일 : 2013.1.1.

###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 방법 등 개선

농림수산물부 소비안전정책과  
(☎ 044-201-2419)

□□자가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방지와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

- 농수산물 가공품 중 김치류 및 음식점의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게 됩니다
-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은 현행 쇠고기·돼지고기 등 □□개 품목에서 양[염소 포함]고기[고등어] 살아있는 물고기[배달용 돼지고기][족발][보쌈 등] 등을 추가하여 □□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

□□[현행]□□개 품목[쇠고기][돼지고기][닭고기][배달용 포함] 오리고기[쌀][배추김치][광어][우럭][낙지][참돔][미꾸라지][뱀장어]

□□[추가]□□개 품목[염소고기][고등어][명태][갈치][배달용 돼지고기][족발][보쌈 등][배추김치 중 고춧가루][살아있는 수산물]

\* 배달용 돼지고기,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, 살아있는 수산물은 품목 개수로 포함되지 않음

- 또한[음식점에서 소비자 오해요인 제거][신뢰로 제고를 위하여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][표시위치 및 배추김치 표시방법 등을 개선하였습니다]

□□글자크기 □□[현행]음식명 □□이상 □□[개선]음식명과 동일 또는 크게

□□표시위치 □□[현행]규정 없음 □□[개선]음식명 옆 또는 하단

□□혼합표시 □□[현행]규정 없음 □□[개선]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□□개 품목

☞ (참고) 농림수산물부>알림소식>보도자료>원산지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

<2013년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등 개선>

▶ 추진배경 : 수입 농수산물·식품의 국산 둔갑방지 및 소비자 알 권리 충족

▶ 주요내용

- ① 농수산물 가공품 중 김치류 원산지표시 의무화
- ② 음식점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(기존 12개 품목 → 16개 품목)
- ③ 음식점 원산지 표시 추가(배달용 닭고기 → 배달용 닭·돼지고기, 배추김치 →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함께 포함) 및 살아있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
- ④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
  - (글자크기) 음식명 1/2 → 음식명과 동일 (표시위치) 규정없음 → 음식명 옆 또는 하단 (혼합표시) 규정없음 →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(2개 품목)

▶ 시행일 : 2013.6. (잠정)

※ (잠정) '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' 개정절차 진행중으로 최종 시행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음

## 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

농림수산물식품부 검역정책과  
(☎ 044-201-2457)

□□□□□□년부터 미국측과 진행해 온 삼계탕의 미국 수출을 위한 협의가 완료되어 □□□□년 상반기 중□□월 이후에는 수출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

- 미 농업부는 □□□□년 □□월□□“대한민국을 가금제품 수출 가능국”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여 업계□□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□□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확정 공포하고 □개월후 시행하게 됩니다

□□그간 미국 측은 서류심사□□현지조사□□협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금제품 위생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였으며□□평가 결과가 미국과 동등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

- 우리 정부는 대미 삼계탕 수출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미국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며□□우리 삼계탕 수출업체에 대해 적극 지원·지도 등을 통해 삼계탕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

☞ (참고) 농림수산물식품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우리나라 삼계탕 수출 개시

### <2013년도 대미 삼계탕 수출 개시>

▶ 추진배경 : 농림수산물식품의 해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 미국 삼계탕 수출 추진

▶ 주요내용

- ① 미국으로 삼계탕을 수출하기 위하여 미국 측과 협의를 추진해 온 절차가 마무리되어 국내산 삼계탕의 미국 수출 개시

▶ 시행일 : 2013년 상반기(잠정)

- ※ 미국 내 입법절차(의견수렴, 60일)가 진행중이며,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'13. 2월 말경 최종 확정 공포(30일 이후 시행)
- 의견수렴 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법안심사 및 의견수렴 재실시(+150일)

**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 
대한 농어업 관련 지원  
우대 확대**

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
(☎ 044-201-1535~6)

□□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의 원활한 농어업 분야 정착을 위한 금융지원등의 우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

-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영농자금 지원시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문농어업인 육성 시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

**<2013년도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지원우대 강화>**

- ▶ 추진배경 : 영농자금 및 영농기반이 부족한 한농대 졸업생에 대한 지원우대 부족
- ▶ 주요내용
  - ① 한농대 졸업생에 대한 지원우대 확대(지원우대 주관기관에 지방자치단체장 추가)
- ▶ 시행일 : 2013.1.23.



**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 
채용 시 연령규제 개선**

농림수산물식품부 수산물개발과  
(☎ 044-201-2639)

□□농어촌 지역의 고령층 일자리 창출□□사회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시 나이제한을 폐지할 계획입니다□

- 농어촌체험마을에 지원하는 사무장은 체험프로그램 개발□ 운영□홈페이지 관리□마을 홍보□회계□고객관리□주민교육□방문객 안내 등 체험관광 관련 전반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여 그간 나이제한□□세 이하□을 두어 왔습니다□

- 그러나□□농어촌의 고령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□□□□년 □월부터 “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 운영요령”을 개정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“개인능력”□ 위주로 채용해나갈 계획입니다□

\* 개인능력 : 농어촌체험마을의 도농교류에 필요한 체험프로그램개발·운영, 마을 홍보, 홈페이지 관리, 회계 및 고객관리, 주민교육 등 능력을 갖춘자

☞ (참고) 농림수산물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고시>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운영 요령

**<2013년도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시 연령규제 개선 내용>**

- ▶ 추진배경 : 정부 고령층 일자리 창출에 부응, 농촌 고령층의 사회적 참여 폭 확대
- ▶ 주요내용
  - ①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(지원) 시 연령 규제 개선
    - (기존) 농촌 : 19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, 어촌 : 3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
    - (개선) 체험마을을 관리·운영할 수 있는 19세 이상인 자 (연령상한 없음)
- ▶ 시행일 : 2013.1.1.

### 농지은행사업 지원 대상자의 연령제한을 완화

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 
(☎ 044-201-1737)

□□고령층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□□농지 규모화사업 및 경영희생지원농지매입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자 연령기준을 완화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

- 최근 평균수명 증가·농업기계화 등으로 농업경영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지금까지 만 □□세로 되어 있는 농지규모화 사업의 지원대상 연령기준을 □□□□년부터 만 □□세까지로 완화합니다

□□이를 통해 보다 많은 농업경영인에게 농지 매매□□장기 임대차□□농지 교환분합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□□경영면적 확대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

- 또한□□자연재해·부채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인 □□농업법인□□의 경영희생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희생지원농지 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 연령기준을 기존 만 □□세 이하에서 만 □□세 까지 확대하여 부채 농가 등의 경영희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>영농규모화사업,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

#### <2013년도 농지은행사업 지원대상자 연령제한 완화>

- ▶ 추진배경 : 고령층의 농업경영 연령확대에 따른 농지은행 사업 지원 확대
- ▶ 주요내용
  - ① 농지규모화사업 지원대상자 연령 확대(만60세→만64세)
  - ② 경영희생지원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자 연령 확대(만70세 → 만75세)
- ▶ 시행일 : 2013.1.1.

**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 
단계적('13~'16년)으로  
전환하고, 축산업 등록  
대상 축종을 확대**

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
(☎ 044-201-2317)

□□ 일정규모 이상 가축(소·돼지·닭·오리)을 사육하는 농가에  
대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 할 계획입니다

- 축산법상 축산업의 □개 업종 중 종축업□ 부화업□ 정액등  
처리업 □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□□□□년부터 허가제를  
도입하고

□□ 가축사육업은 축종별(소·돼지·닭·오리 등) 사육규모에  
따라 □□□□년 □ □□□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 도입 할□  
계획입니다

〈축종별 축산업 허가제 도입계획〉

(단위: m<sup>2</sup>)

| 규모 |    | 기업       | 전업            | 준전업         | 소규모      |
|----|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
| 시기 |    | '13년     | '14년          | '15년        | '16년     |
| 축종 | 소  | 1,200 초과 | 600초과~1,200   | 300초과~600   | 50초과~300 |
|    | 돼지 | 2,000 초과 | 1,000초과~2,000 | 500초과~1,000 | 50초과~500 |
|    | 닭  | 2,500 초과 | 1,400초과~2,500 | 950초과~1,400 | 50초과~950 |
|    | 오리 | 2,500 초과 | 1,300초과~2,500 | 800초과~1,300 | 50초과~800 |

- 현행 축산업 등록제는 허가대상이 아닌 모든 소규모 농가에  
확대 적용 할 계획입니다

\* 등록기준 : (현행) 소 300m<sup>2</sup>, 돼지 등 50m<sup>2</sup> 초과 사육시설 → (변경)  
허가대상 사육규모 미만의 모든 농가

\* 등록축종 : (현행) 4종(소·돼지·닭·오리) → (변경) 11종 우제류·가금류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축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

#### <2013년도 축산업 허가제 도입>

▶ 추진배경 :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, 경쟁력 있는  
산업으로 육성

▶ 주요내용

- ① 축산업 허가제를 축종별(소, 돼지, 닭, 오리) 사육규모에 따라  
2013년~2016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 도입(사육 규모에 따라  
각각 1년씩 유예기간 설정)
- ② 축산업 등록제는 허가대상이 아닌 사육규모 미만과 우제류  
가금류 사육농가는 가축사육업으로 확대

▶ 시행일 : 2013.2.23.

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
(☎ 044-201-2342~3)

□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 
‘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’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

- 현재 사료시장에서 축산농가가 외상거래 하는 비중이 약 30%임을 고려할 때 외상거래를 현금거래로 전환시 약 30%에 달하는 이자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

\* 지원규모 및 조건(안) : 1,200억원(3%, 2년 상환)

※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 
(www.mifaff.go.kr)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임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알림소식>보도자료>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

<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(신규)>

- ▶ 추진배경 : 축종별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사료구매비용 절감 및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
- ▶ 주요내용
  - ① 외상거래를 현금거래 등으로 전환하여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사료구매자금 지원
    - 지원규모 및 조건(안) : 1,200억원(3%, 2년 상환)
- ▶ 시행일 : 2013.1.1.
- ※ (잠정) '12.12.28일 현재 국회예산 심의중으로 최종 확정내용 등이 달라질수 있음

##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

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  
(☎ 044-201-2355)

□□동물 보호와 유기□유실동물 방지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

-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□개월령 이상인 개의 소유자는 관할 시□군□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 기관에서 해당동물을 등록 하시면 됩니다

□□등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최고 □□만원까지 부과됩니다

-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기·유실 동물의 발생 감소□유기·유실동물 발견 시 신속한 반환에 따른 동물보호□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지>알림소식>보도자료>우리나라 동물보호수준, 한 단계 업그레이드

### <2013년도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>

- ▶ 추진배경 :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를 통한 유기동물의 발생 억제, 유실동물의 신속한 반환 및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으로 동물보호의 실효성 증대
- ▶ 주요내용
  - ① 2013년부터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에 대하여 동물등록제 전국 의무 시행
    - \* 도서·오지·벽지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·군은 제외
- ▶ 시행일 : 2013.1.1.

###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확대 시행

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  
(☎ 044-201-2355)

□□농장에서 사육중인 동물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산란계에서 돼지까지 확대 시행됩니다□

-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는 □□□□년 □월 산란계에 처음 도입 되었으며□□동물복지 수준·도입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돼지 □'□□□□ 육계□'□□□□ 한·육우 및 젓소□'□□□□ 순으로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□□
-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가는 지속가능한 선진화된 축산업을 영위하고□□소비자는 인증표시 확인을 통해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□□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<알림소식>보도자료)한단계 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축산농장에 최초 도입

#### <2013년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적용 축종 확대>

- ▶ 추진배경 : 농장에서 사육중인 동물의 복지수준 제고를 위해 동물 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순차적 확대
- ▶ 주요내용
  - ① '13년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산란계에서 돼지까지 확대 시행
    - \* ('12) 산란계 → ('13) 돼지 → ('14) 육계 → ('15) 한육우·젓소
- ▶ 시행일 : 2013.5.(잠정)
  - ※ (잠정) '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' 개정 추진 중으로 시행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

**어선표지판 부착제도를  
전국단위로 일원화 및  
부착대상 확대**

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 
(☎ 044-201-2656)

□□과거 지역단위로 운영되던 어선 표지판을 전국단위로 개선  
하고□□부착대상도 어장관리선까지 확대하여 어업인의 조업  
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□

- 그간 어선표지판에 시·도□□시·군·구별 지역약호를 표시하던□  
것을 앞으로는 최초 어선 등록 시 부여받은 어선등록번호를  
표시하도록 개선하여 어선이 타 지역으로 진출입시에도  
기존 어선표지판을 교체 없이 폐선 시까지 계속 사용할  
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□
- 또한□□어선표지판 부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어장관리선도  
어선표지판을 부착함으로써 어장구역을 이탈하여 불법  
조업을 하는 어선의 효과적인 식별과 현장 임시검문의  
최소화로 어업인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□

\* 전국단위의 어선표지판 부착 제도가 2008.1.1일부터 시행하여 왔으며,  
5년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3.1.1부터는 전면 시행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어선표지판 규격 및  
부착요령

**<어선표지판 사용 개선>**

- ▶ 추진배경 : 어선표지판을 기존의 지역 약호를 없앤 전국단위로  
일원화함으로써 진출입시에도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  
어선표지판 교체 없이 폐선 시까지 사용토록 개선
- ▶ 주요내용
  - ① 지역번호 사용을 폐지하고 어선등록번호만 표시
  - ② 표지판 부착대상에 어장관리선을 포함
    - 부착대상 : 연근해 어업허가, 어획물 운반업으로 등록한 어선,  
어장관리선
- ▶ 시행일 : 2013.1.1.

#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시범사업 대상 범위 확대

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 
(☎ 044-201-2643)

□□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 
도서 등 취약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 활성화를  
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

- □□□□년까지는 시범사업 시행 첫 해로 육지로부터 □□□□이상  
떨어진 섬 지역 어가에 가구 당 □□만원의 직불금을 지원  
하였으나□□ □□□□년부터는 시범사업을 □□□□이상 떨어진  
섬으로 확대하여 직불금을 지원하게 됩니다
-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본 사업은 □□□□년부터 □□□□이상  
떨어진 섬 지역의 어가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농림수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>공지사항>조건불리지역 수산  
직불제 사업

## <2013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범위 확대 내역>

- ▶ 추진배경 : 도서 등 취약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 활성화  
도모
- ▶ 주요내용
  - ① 사업대상 범위 확대  
- 육지로부터 50km이상 → 30km이상 떨어진 섬 지역 어가
- ▶ 시행일 : 2013.1.1. (잠정)
  - ※ '12.12.28일 현재 국회예산 심의중으로 최종 확정내용 등이 달라질수 있음



## 친환경수산물 인증 제도 개편

농림수산물식품부 수산정책과  
(☎ 044-201-2622)

□□현행 ‘친환경수산물’ 인증제도가 ‘유기수산물’·‘무항생제 수산물’ 및 ‘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’ 인증제도로 세분화됩니다□

-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는 무항생제수산물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□□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수산물에 대하여 유기수산물로 인증하게 됩니다□

\* 유기수산물 : 항생제·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·보전하면서 생산된 안전한 양식수산물

\* 무항생제수산물 : 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된 양식수산물

\*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: 유기산 등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된 양식수산물(해조류)

- 인증절차는 희망하는 사업자가 인증을 신청하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현장평가와 제품시험결과 등을 토대로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 합니다□

☞ (참고) 농림수산물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

### <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 시행>

- ▶ 추진배경 : 친환경어업 육성 및 생산자·소비자 보호를 위한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 개편
- ▶ 주요내용
  - ①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가 무항생제수산물과 활성처리제비 사용수산물 인증제도로 개편 시행
  - ② 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수산물에 대하여 유기수산물 인증제도 실시
- ▶ 시행일 : 2013.6.2.

**어촌관광 활성화 및 어촌  
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 
어촌·어항법 개정**

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 
(☎ 044-201-2632)

□□어촌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어항개발사업에 레저관광기반시설 사업을 추가할 계획입니다□

- 이를 통해 어항개발계획 수립 시 레저관광개발계획을 포함하여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항을 레저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□

□□또한□□최근 어족자원의 고갈 등 어업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낙후된 어촌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의 일환으로 어항구역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□

- □수산업법□제□□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·교습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항 구역 내에서의 어업활동을 허용할 계획입니다□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어촌·어항법

**<어촌·어항법 개정 항목>**

- ▶ 추진배경 :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·어항법 개정
- ▶ 주요내용
  - ① 어항개발계획 수립시 레저관광개발계획을 포함
  - ② 어항구역내 금지행위중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·교습어업을 허용
- ▶ 시행일 : 2013.4.23.

**수협중앙회의 정상  
조합에 대한 부실예방  
대책 강화**

농림수산물식품부 수산정책과  
(☎ 044-201-2619)

□□수협중앙회는 일선조합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우려조합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

- 지금까지 수협중앙회는 일선조합의 경영실사 후 순자본 비율이 □□미만인 부실조합에 대해서만 적기 시정조치 명령을 하였으나□□

□□앞으로는 부실 발생이 명백히 우려되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하여 수협중앙회는 일선조합에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를 실사한 후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

□□시정요구 대상 조합의 기준 및 시정요구 내용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미리 정하여 고시할 계획입니다

☞ (참고) 농림수산물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

**<2013년도 정상조합에 대한 부실예방 대책 강화>**

- ▶ 추진배경 : 일선조합 부실예방을 위한 수협중앙회 책무 강화
- ▶ 주요내용
  - ① 부실우려가 예상되는 조합의 경영상태 실사후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 요구
  - ② 시정 요구 대상 조합의 기준 및 시정요구 내용 고시
- ▶ 시행일 : 2013.1.1.

### 서해5도 백령도 대·소청도 주변어장 확장

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 
(☎ 044-201-2657)

□□ 어민의 편익보장 및 소득증대를 위한 서해□□도 주변어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

- 이번 조치는 인천광역시 및 지역 어업인 건의요청과 국방부의 어장확장 수용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으며□□이를 위해 어선 안전 조업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
- 또한□□어장확장시 조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인천시 및 옹진군에서 지도선을 배치할 계획이며□□어업인의 조업구역 및 조업 시간 준수를 위하여 수협□□지자체에서 홍보·지도할 계획입니다

□□다만□□연평도 일부 해역에는 어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□□어선 안전조업규정□□에 어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어선안전조업규정

#### <2013년도 서해5도 어장확장 내용>

- ▶ 추진배경 : 서해 접경지역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어로한계선 이북 연평도 및 백령·대청·소청도 주변어장 중 일부 확장
- ▶ 주요내용
  - ① 연평도 주변어장 조업구역 37km<sup>2</sup>확장(764km<sup>2</sup> → 776km<sup>2</sup>)
  - ② 소청도 'B어장' 조업구역 43km<sup>2</sup>확장(133km<sup>2</sup> → 176km<sup>2</sup>)
  - ③ 백령도 'C어장' 조업구역 36km<sup>2</sup>확장(102km<sup>2</sup> → 138km<sup>2</sup>)
- ▶ 시행일 : 2013.1.1.

###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기준 완화

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
(☎ 044-201-1858)

□□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시 품목별 재배면적·수확면적□□  
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·출하량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의  
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게됩니다□

- 품목별 재배면적은 기존 등록정보에 ‘□□□초과되는 경우 변경  
등록’□하도록 하였으나 □□□□년부터 ‘□□□□초과되는 경우  
변경등록’ 하도록 완화하게 됩니다□
- 또한 가축종류별 상시 사육마릿수가 ‘□□□□초과하여 변경되는  
경우 변경등록’□하도록 하였으나 ‘□□□’로 조정하는 대신  
‘□□□를 초과하더라도 일정마릿수 이하의 규모□소 □마리  
이내□ 돼지 □□□ 닭 □□□□□ 오리 □□□는 변경등록을 하지  
않아도’□됩니다□
- 아울러 가축종류별 출하량은 등록한 정보의 ‘□□를 초과하여  
변경된 경우 변경등록’을 하도록 하였으나 ‘□□□□ 초과’로  
완화하되□□ ‘□□□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정 규모□소□마리□  
돼지 □□□ 닭 □□□□□ 등□□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 
하지 않아도’□됩니다□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변경등록이 필요한  
품목별 재배·수확면적 등의 변경범위 고시

#### <2013년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범위 완화 항목>

- ▶ 추진배경 : 농업인 등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(품목별 재배면적 등)  
변경범위 완화
- ▶ 주요내용
  - ① 품목별 재배면적 변경범위 완화(3% 초과 → 10%로 완화)
  - ②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 조정(20% → 10%, 초과하더라도 일정  
규모는 이내 미변경)
  - ③ 가축종류별 출하량 완화(3% → 20%,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정  
규모 초과는 변경등록)
- ▶ 시행일 : 2012.12.6.

## 친환경 농식품 인증 제도 통합 · 일원화

농림수산물부 친환경농업과  
(☎ 044-201-1872)

□□농산물□□가공식품□□수산물로 각각 운영되고 있던 인증제를 통합·일원화 하고□□법 제명도□□친환경농업육성법□□에서 □□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□□으로 변경됩니다□

- 수산물은 유기□□무항생제□□활성처리제 비사용으로 인증대상 범위도 확대 되고□
-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수산물을 취급·재포장하면 과태료를 부과□최고 □□□만원□하도록 재포장인증 의무화 하여 부정 친환경농수산물 유통을 차단 할 계획입니다

☞ (참고) 농림수산물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### <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·일원화>

- ▶ 추진배경 : 다원화된 친환경 인증제도를 통합·일원화하여 친환경 농어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·지원
- ▶ 주요내용
  - ① 「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제명 변경
  - ② 인증대상 범위 확대(유기수산물, 무항생제수산물,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)
  - ③ 재포장인증 의무화
- ▶ 시행일 : 2013.6.2.

**비료 생산·수입업자  
비료 제조 원료 장부  
기재 의무화**

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
(☎ 044-201-1882)

□□ 비료 생산·수입업자는 비료 제조원료에 대해 반드시 장부 기재 및 보존을 해야 합니다

- 그 동안 단속 기관에서 최종 제품[비료]을 검사하여도 어떤 원료를 사용하였는지를 밝혀낼 수 없어 불량 원료 사용에 따른 농업인 피해 및 환경 오염 우려가 있었습니다
- 앞으로는 비료 원료에 대한 장부기재 및 보존[3년간]이 의무화 되어 위반 비료 생산·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경중에 따라 경고에서 영업소 폐쇄까지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

□□ 이를 통해 불량비료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농업인 보호 및 환경오염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비료관리법 시행규칙

**<비료 생산·수입업자 비료 제조 원료 장부기재 의무화>**

- ▶ 추진배경 : 불량비료 유통 사전 차단으로 농업인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
- ▶ 주요내용
  - ① 비료 생산·수입업자의 비료 제조 원료에 대한 장부기재 및 보존 의무화(3년간)
  - ② 장부기재 및 보존 위반시 행정처분(위반 경중에 따라 경고에서 영업소 폐쇄)
- ▶ 시행일 : 2013.4.23.

##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

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 
(☎ 044-201-1654)

□□ 식물 신품종 보호권 침해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

- 지금까지 식물 신품종 보호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‘□년 이하의 징역 또는 □천만원 이하의 벌금’이었으나 □□□□년 □월부터 □식물신품종보호법□이 시행되어 ‘□년 이하의 징역 또는 □억원 이하’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

\*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 :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제도

-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우수 품종육성 및 우량종자의 보급을 촉진시켜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알림소식>보도자료>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강화

### <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주요내용>

- ▶ 추진배경 :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
- ▶ 주요내용
  - ① 식물 신품종 보호권을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  
(기존 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)
- ▶ 시행일 : 2013.6.2.



##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

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
(☎ 044-201-1717)

□□간척지 관리제도 및 농업여건 등의 변화 등에 따라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

-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간척지를 종전의 수도작 위주에서 원예□축산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□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은 없었습니다

- □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□의 시행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으로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

□□아울러□□기반시설□□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부담금의 감면 등을 통해 간척지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

### <「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주요 내용>

- ▶ 추진배경 :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
- ▶ 주요내용
  - ① 5년마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
  - ② 간척지활용사업계획 수립 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간척지활용 사업구역을 지정
  - ③ 국가 및 지자체는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, 기반시설 및 공공 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
- ▶ 시행일 : 2013.1.18.

**농어업 FTA 보완대책  
성과 및 투융자 계획을  
투명하게 공개**

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
(☎ 044-201-1719)

□□한□미 □□□□발효 이후 「□□□□보완대책」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보완대책 및 투융자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·공개할 계획입니다

\* 한·미 FTA에 대응하여 정부는 총 24.1조원 규모의 「한·미 FTA 보완 대책」('08~'17)을 마련 추진

- □□□□년부터는 보완대책의 내실화를 위하여 그간 추진해 온 보완대책의 사업별 목표□□기대효과 등의 달성 정도를 측정·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
- 이를 토대로 대책을 내실있게 보완하고□□농어업인 수요 및 현장 여건에 적합한 신규사업 발굴 등 보완대책을 지속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**<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>**

▶ 주요내용

- ① 정부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재정지원의 다음 회계연도 계획 금액을 기능별·성질별로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
- ② 정부는 매년 5월 31일까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직전 회계연도 집행실적, 성과 및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

▶ 시행일 : 2013.1.1.

**벌채·제재·유통  
등 목재생산업 등록  
제도 도입**

산림청 목재생산과  
(☎ 042-481-8875)

□□벌채□□제재□□유통 등 목재관련 산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목재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목재제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

- 그동안 벌채에서 제재 및 유통에 이르는 목재관련 산업은 일정한 자격과 전문성 없이 운영되어 불량 목재제품이 생산□유통 되고□□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습니다

□□□□□□년 □월부터 목재를 다루는 모든 산업은 사업장이 위치한 시□군□구에 등록을 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□□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

☞ (참고)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4조

- 또한□□영세한 소규모 목재산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 보완 사업과 임업정책자금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합니다

**<목재생산업 종류 및 분야>**

- ▶ 추진배경 : 목재생산업 등록을 통하여 안전한 목재제품 공급 및 목재이용 확대
- ▶ 주요내용
  - ① 입목·죽을 벌채·제재·유통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이 소재한 시·군·구에 등록
  - ② 원목생산, 수입되는 산물 및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도 포함
- ▶ 시행일 : 2013.5.24.

**산림교육전문가(숲해설가,  
유아숲지도사, 숲길체험  
지도사) 자격증 발급**

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 
(☎ 042-481-8869)

□□ 숲해설가□□ 유아숲지도사□□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에게 자격증을 발급합니다□

- 지금까지 숲해설가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이수자에게 교육기관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했으나□ 앞으로는□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□의 시행□□□□□□□□에 따라 산림청장 명의의 국가자격증이 발급됩니다□

□□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전문과정을 이수□ 이론□ 실습 평가 □□점 이상□ 현장실습 □□시간□□ 하여야 합니다□

- 아울러□□ 종전의 숲해설가□□ 숲길안내인 교육과정 프로그램 인증제도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제도로 전환됩니다□

☞ (참고)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, 동법 시행규칙 제6조

**<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및 양성기관 지정 >**

- ▶ 추진배경 :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
- ▶ 주요내용
  - ① 산림교육전문가(숲해설가, 유아숲지도사, 숲길체험지도사) 자격증 교부
  - ② 숲해설가· 숲길안내인 교육과정 인증제도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제도로 전환
- ▶ 시행일 : 2013년 상반기

**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 
및 산림관리 금지구역  
지정범위 축소  
(3 → 2km)**

산림청 산림병해충과  
(☎ 042-481-4076)

□□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 지정 범위를 축소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□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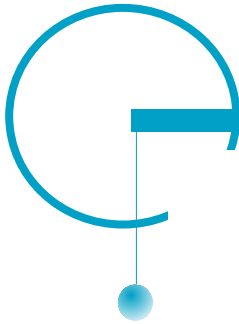
- 종전까지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을 □□□로 정하여 해당지역 산림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□
- 앞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면적만을 남겨 둬으로써 해당지역 산림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□

□□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 구역 □□종전□□  
□□□□□□변경□□□□□□

**<2013년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축소>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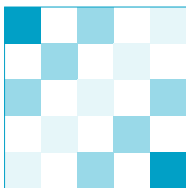
- ▶ 추진배경 :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을 범위를 축소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관련 산업 활성화
- ▶ 주요내용
  - ①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 축소(3km → 2km)
  - ▶ 시행일(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령 개정 시행)
    - 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지정범위 축소(시행령 제3조의3)
      - \* '12.12.6부터 시행
    - ②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주변의 조림 및 육림 금지구역 축소 (시행규칙 제7조)
      - \* '12.12.9부터 시행





##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

|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|
| ○ 기획재정부 .....    | 203 |
| ○ 교육과학기술부 .....  | 203 |
| ○ 법무부 .....      | 206 |
| ○ 국방부 .....      | 207 |
| ○ 행정안전부 .....    | 210 |
| ○ 문화체육관광부 .....  | 211 |
| ○ 농림수산물부 .....   | 213 |
| ○ 지식경제부 .....    | 219 |
| ○ 환경부 .....      | 221 |
| ○ 보건복지부 .....    | 223 |
| ○ 국토해양부 .....    | 229 |
| ○ 여성가족부 .....    | 243 |
| ○ 고용노동부 .....    | 245 |
| ○ 방송통신위원회 .....  | 249 |
| ○ 국가보훈처 .....    | 251 |
| ○ 금융위원회 .....    | 251 |
| ○ 관세청 .....      | 252 |
| ○ 병무청 .....      | 253 |
| ○ 방위사업청 .....    | 255 |
| ○ 경찰청 .....      | 258 |
| ○ 소방방재청 .....    | 259 |
| ○ 산림청 .....      | 260 |
| ○ 중소기업청 .....    | 261 |
| ○ 특허청 .....      | 262 |
| ○ 식품의약품안전청 ..... | 262 |







| 기획재정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| 달라지는 내용 | 관련 법규<br>(제도시행일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|
| ' 12.12.28일 현재 세법개정안 국회 심사중으로, 국회 확정후 ' 13년 1월초 관련 내용 수록 예정 |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
| 교육과학기술부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<br>직원의 지방직화 | ○ 교육감소속 교육전문직원의<br>중앙정부 정원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지방공무원<br>으로 전환하여 정원채정·운영권한을<br>교육감에게 이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공무원법·지<br>방공무원법<br>(‘12.11월 본회의<br>통과)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과학기술부<br>지방교육자치과<br>(02-2100-6243)               |
| 2.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<br>시행       | ○ 2년마다 표준정원 고시<br>(지방공무원)<br><br>○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채정<br>기준 규정 등 | ○ 지방공무원, 사립학교 행정직원, 학교회계<br>직원 등의 총액인건비 교부<br>- 인건비 내에서 자율적 정원 책정<br>○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채정 기준 폐지<br>○ 국단위 기구정수제 전환<br>○ 지역교육청 센터 직제화 등 | 지방교육행정기관의<br>행정기구와<br>정원기준 등에<br>관한 규정<br>(‘13.1월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과학기술부<br>지방교육자치과<br>(02-2100-6243)          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5세 누리과정을<br>만 3-4세까지 확대      | <p>&lt;교육보육과정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만 5세 :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5세 누리과정</li> <li>만 3,4세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유치원 :유치원교육과정</li> <li>어린이집 :표준보육과정</li> </ul> </li> </ul> <p>&lt;지원대상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만 5세 : 전계층</li> <li>만3,4세 : 소득하위 70%</li> </ul> <p>&lt;지원단가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공립유치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만 3-5세 월 5.9만원 (입학급, 수업료 면제)</li> </ul> </li> <li>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만 5세 월 20만원</li> <li>만 4세 월 17.7만원</li> <li>만 3세 월 19.7만원</li> </ul> </li> </ul> | <p>&lt;교육보육과정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만 3,4,5세 :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3-5세 연령별 누리과정</li> <li>만 3,4,5세 : 전계층</li> </ul> <p>&lt;지원대상&gt;</p> <p>국공립유치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만 3-5세 월 6만원 (입학급, 수업료 면제)</li> </ul> <p>&lt;지원단가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만 3-5세 월 22만원</li> </ul> </li> </ul> | <p>유아교육법,<br/>유아교육법<br/>시행령<br/>(’13.3.1.)</p> <p>교육과학기술부<br/>유아교육과<br/>(02-2100-6556)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저소득층 초·중고 학생<br>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학교 방문(또는 온라인) 신청</li> <li>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<br/>으로 대상자 선정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읍면동 주민센터 방문(또는 온라인) 신청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온라인 신청 시, 부(父)·모(母) 모두 공인인증서 필요</li> </ul> </li> <li>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</li> </ul> <p>☞ (참고)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&gt;알림마당&gt;보도자료&gt;초·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초·중등교육법<br/>(’13.2.)</p> <p>교육과학기술부<br/>학생복지과<br/>(02-2100-6521)</p> <p>보건복지부<br/>복지정보통합관리<br/>추진단<br/>(02-739-3744)</p> |
| 5.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<br>지원 확대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원범위 : 차상위 40%</li> <li>지원규모 : 1인당 36만원<br/>(월3만원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원범위 : 차상위 70%</li> <li>지원규모 : 1인당 48만원<br/>(월4만원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-</p> <p>교육과학기술부<br/>방과후학교팀<br/>(02-2100-6415)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교원자격 검정 강화 및<br>신규채용제도 개선 | ○ 졸업평점 환산점수<br>100분의 75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대학 교직과목 이수기준 강화<br>- 전공과목의 경우, 졸업평점 환산점수<br>100분의 75이상<br>- 교직과목의 경우, 졸업평점 환산점수<br>100분의 80이상 | 교원자격검정령<br>(’13.3.1.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교원양성기관에서 임의로<br>실시 여부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(양성 및 자격부여) 필수적으로<br>‘인적성검사’ 실시 및 결과 반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과학기술부<br>교원양성연수팀<br>(02-2100-6482)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초등 : 3단계 전형<br>- (1차 객관식)교육학,<br>교육과정<br>- (2차 논술형)교직논술,<br>교육과정<br>- (3차)수업실연 심층면접 등 | ○ 초등 : 2단계전형(2012년도부터)<br>- (1차) 교직(논술), 교육과정(서답형)<br>- (2차) 수업실연, 심층면접 등<br>※ 유치원 및 초등특수 포함    | 교육공무원<br>임용후보자<br>선정경쟁시험<br>시행규칙(’12.8월)<br>(’13년중)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중등 : 3단계 전형<br>- (1차 객관식) 교육학, 전공<br>- (2차 논술형) 전공<br>- (3차)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              | ○ 중등 : 2단계전형(2013년도부터)<br>- (1차) 교육학(논술), 전공(서답형)<br>- (2차) 수업실연, 심층면접 등<br>※ 비교과 및 중등특수 포함     | 교육과학기술부<br>교원양성연수팀<br>(02-2100-6482)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〈신 설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응시과목에<br>‘한국사’ 과목을 추가할 예정(’13.9.1.)<br>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(유효기간 5년)<br>으로 대체할 수 있음     | 교육공무원<br>임용후보자<br>선정경쟁시험<br>시행규칙(’12.8월)<br>(’13.9.1.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과학기술부<br>교원양성연수팀<br>(02-2100-6482)                   |

| 법무부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 분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<br>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</li> <li>※ 관련법 :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체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확대</li> <li>※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</li> <li>☞ (참고)법무부인권국홈페이지&gt;알림마당&gt;인권 관련뉴스&gt;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희망도우미!법률조력인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('13.6.19)<br><br>법무부<br>여성아동정책팀<br>(02-2110-3648) |
| 2.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없 음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 피해 아동·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진술조력인이 수사나 재판과정에 참여</li> <li>☞ (참고) 법무부 인권국홈페이지&gt;알림마당&gt;인권 관련뉴스&gt; '진술조력인 제도 도입' 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원 전면적 확대'</li> </ul>  |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('13.6.19)<br><br>법무부<br>여성아동정책팀<br>(02-2110-3852) |
| 3. 친권제도 개선      | ① 친권 제도의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친생부모의 일방이 사망하면 생존존이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으로 해석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혼당시 친권자가 되지 못한 부모일방이 단독친권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지 않고 가정법원이 친권자 지정에 필수적으로 관여</li> <li>친권의 공백이 발생하는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</li> <li>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&gt;민법</li> </ul>  | 민법 ('13.7.1.)<br><br>법무부<br>법무심의관실<br>(02-2110-3164)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② 보호의 공백방지를 위한 조치 및 후발적 사정변경 가능성의 개방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당 규정 없음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가정법원에서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</li> <li>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이후라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</li> <li>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&gt;민법</li> </ul> | 민법 ('13.7.1.)<br><br>법무부<br>법무심의관실<br>(02-2110-3164)              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입양제도 개선               | ① 입양 허가제의 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양친될 자와 양자될 자 간의 합의와 입양신고만으로 일반입양 성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입양허가제의 도입: 미성년입양시 반드시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<br><br>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>민법                    | 민법<br>(‘13.7.1.)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무부<br>법무심의관실<br>(02-2110-3164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부모 등의 동의면제 절차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부모 등의 대략 내지 동의가 필수적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부모 등의 동의 없더라도 가정법원의 허가만으로 입양가능<br><br>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>민법                          | 민법<br>(‘13.7.1.)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무부<br>법무심의관실<br>(02-2110-3164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 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15세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친양자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으로 수정하여 나이 제한없이 모든 미성년자가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게 됨<br><br>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>민법 | 민법<br>(‘13.7.1.)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무부<br>법무심의관실<br>(02-2110-3164) |
| 국방부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군 책임운영기관 추가지정         | ○ 14개 기관 운영<br>※ 국군인쇄창, 국군수도병원, 국군대전병원, 국군의학연구소, 육군2보급단, 육군3보급단, 육군항공기정비단, 육군특수무기정비단, 해군 보급창, 해군1함대정비대대, 해군2함대정비대대, 공군 40보급창, 공군82정비창, 공군83정비창 | ○ 육군종합정비창, 해군3함대정비대대, 공군종합보급창 3개 추가 지정<br><br>☞ 국방부 홈페이지>국방미디어>보도자료>‘13년 1월 책임운영기관 추가지정 |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법<br>(‘11.8.20.)<br>(‘13.1.1. 적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방부<br>경영분석담당관<br>(02-748-538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평시 예비역 장교·부사관의 현역 재임용 | <없 음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결원 발생시 전역후 3년 이내의 예비역 장교·부사관 단기 복무로 재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군인사법<br>(‘13.6.1.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방부<br>인사기획관리과<br>(02-748-512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한시계약군무원 채용제도 마련       | <없 음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한시 계약군무원 임용근거 마련<br>-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는 한시 계약군무원을 임용                      | 군무원인사법<br>(‘13.2. 잠정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방부<br>인사기획관리과<br>(02-748-5107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병 진급 최저복무기간<br>조정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병복무기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이등병: 5개월</li> <li>-일등병: 6개월</li> <li>-상등병: 7개월</li> <li>-병 장: 3개월<br/>(해군 5개월, 공군 6개월)</li> </ul> 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복무기간 조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이등병 : 3개월(-2)</li> <li>-일등병 : 7개월(+1)</li> <li>-상등병 : 7개월</li> <li>-병 장 : 4개월(+1)<br/>(해군 6개월, 공군 7개월)</li> </ul> </li> </ul> | 군 인사법<br>시행규칙<br>(‘13.1.1)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방부<br>인력관리과<br>(02-748-5135)    |
| 5. 여성군인 모성보호<br>강화제도 마련 | <없 음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3자녀이상 여군의 당직근무 면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셋째자녀 임신 시부터 셋째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해당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대관리훈령 개정<br>(‘13.1.)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방부<br>국방여성정책과<br>(02-748-5173)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임신, 출산, 유산 등으로<br/>체력검정의 일시보류 시<br/>군의관소견서와 소속지휘관<br/>확인서 모두 제출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군의관소견서(또는 민간병원 산부인과<br/>소견서), 출생증명서, 소속 지휘관 확인서<br/>중 택일하여 제출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대관리훈령 개정<br>(‘13.1.)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방부<br>국방여성정책과<br>(02-748-5173)  |
| 6. 예비군훈련 통지방법<br>개선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본훈련 시 통지방법<br/>: 우편엽서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본훈련 시 통지방법<br/>: 창봉투 형 우편으로 변경,<br/>개인정보보호 강화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예비군 교육 훈련에<br>관한 훈령<br>(‘13.1.1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방부<br>예비전력과<br>(02-748-5245)    |
| 7.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<br>시행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대별 여건고려,<br/>연대별 1~2회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대여건 고려, 도시지역 확대 시행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예비군 교육 훈련에<br>관한 훈령<br>(‘13.1.1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방부<br>예비전력과<br>(02-748-5245)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. 연대급 통합예비군훈련장 시험운영      | ○ 대대급 예비군훈련장 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연대급 예비군훈련장으로 통합 운영<br>- 13년 후반가~15년까지 1개소 시험 적용<br>* 서울특별시 3개구(광진, 성동, 동대문)<br>예비군 대상 / 56사단 금곡 예비군 훈련대                | -<br>'13.후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방부<br>예비전력과<br>(02-748-5241)                      |
| 9. 병 봉급 인상                | ○ 병봉급<br>이등병 81,500원<br>일등병 88,000원<br>상등병 97,500원<br>병 장 108,000원       | ○ 병봉급 인상(15%)<br>이등병 93,700원(증 12,200원)<br>일등병 101,200원(증 13,200원)<br>상등병 112,100원(증 14,200원)<br>병 장 124,200원(증 16,200원) | 공무원보수규정<br>(’13.1.1.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방부<br>복지정책과<br>(02-748-6613)                      |
| 10. 군인 차우 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   | ○ 특수지근무수당<br>-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<br>* 갑지역 : 15,000원<br>* 을지역 : 12,000원 | -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,<br>* 갑지역 : 16,500원<br>* 을지역 : 13,2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무원수당 등에<br>관한 규정<br>(’13.1.1.)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방부<br>복지정책과<br>(02-748-6613)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합정수당(수상합)<br>- 병 : 29,7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병 : 32,7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군인 등의<br>특수근무수당에<br>관한 규칙<br>(’13.1.1.)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방부<br>복지정책과<br>(02-748-6613)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계호업무수당 대상자<br>-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<br>군인교도소에서 계호업무를<br>직접 담당하는 군인            | -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군 교정시설에서<br>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군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무원수당 등에<br>관한 규정<br>(’13.1.1.)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방부<br>복지정책과<br>(02-748-6613)                      |
| 11. 현역병 복무기간 중 건강검진 전면 확대 | ○ 일부 부대 상병진급자에게<br>시범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모든 부대 상등병 진급자에게 확대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군보건료에<br>관한 법률 시행령<br>(’12.9.22.)<br>(’13.1.1. 적용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방부<br>보건정책과<br>(02-748-6655)                 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. 군 병원 외래진료<br>서틀 운행 확대  | ○ 고양, 홍천 국군병원 시범<br>운행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전방 6개 군단지원병원(고양, 홍천, 양주,<br>일동, 춘천, 강릉병원) 및 김포지역 해병<br>2사단 추가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‘13.7.1.)<br><br>국방부<br>보건정책과<br>(02-748-6648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3. A형간염 백신 접종<br>확대       | ○ 군 의무인력, 식품 취급<br>종사자 등 특수직 근무자<br>에 한하여 접종 | ○ 13년 육군 1군사령부 예하 신교대 훈련병<br>및 경기도 일부 신교대 훈련병 접종 시작<br><br>○ 14년 전체 육군 입소장병, 15년부터<br>해군 및 공군 포함 전체 입소 장병으로 확대 | 군 전염병<br>예방업무 훈령<br>(‘13.4.1.)<br><br>국방부<br>보건정책과<br>(02-748-6649)                      |
| 14. 군 작전차량 유료도로<br>통행절차 개선 | ○ 군 작전차량의 유료도로<br>통게이트 통과시 군 작전<br>차량증 제시의무  | ○ 제시절차 폐지<br>- 대상 : 외관상 군 차량으로 식별 가능한<br>모든 군 작전차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료도로법<br>시행규칙<br>(‘12.9.14.)<br>(‘12.10.1. 적용)<br><br>군수관리관실<br>국제군수협력과<br>(02-748-5757) |

### 행정안전부
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지방세<br>가산세<br>제도개선 | ① 납세<br>의무자       | 신고불성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%<br>또는<br>20% | 과소신고                     | 일반과소신고 | 10% | 지방세기본법 및<br>지방세법<br>(‘13.1.)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무신고                      | 부정과소신고 | 40%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 무신고 | 20%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정 무신고 | 40%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납부불성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<br>0.03%      |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취득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| 장부 기록·비치업무 위반<br>가산세(신설) |        | 10%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취득세 미등기전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0%              |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레저세 의무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%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담배소비세<br>의무위반 I<br>(가장의무 불이행 등)        | 10%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담배소비세<br>의무위반 II<br>(면제담배 타용도<br>사용 등) | 30%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지방교육<br>신고불성실     | 1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폐지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지방교육세<br>납부불성실    | 1일<br>0.03%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행과 같음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② 특별<br>징수<br>의무자 | 신고납부 또는<br>납부 불성실                      | 10%              | 납부불성실(기본)                |        | 5%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납부불성실(추가)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1일 0.03%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친서민<br>세제자원을<br>위한<br>지방세<br>감면기한<br>연장 | ① 슈퍼<br>마켓협동<br>조합 감면<br>확대 | ○ 슈퍼마켓협동조합 취득세<br>감면을<br>- 상점가내 : 75%<br>- 상점가 이외 : 5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슈퍼마켓협동조합 취득세 감면을<br>- 지역에 관계없이 75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방세특례제한법<br>(’13.1월)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알뜰<br>주유소<br>재산세<br>감면 신설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하는 모든 알뜰<br>주유소에 대해 2년간 재산세 50% 감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다자녀<br>가구 지원<br>감면연장      | ○ 2012년말까지 취득세 면제<br>-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<br>까지 감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2015년말까지 취득세 면제<br>-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행정안전부<br>지방세정책과<br>(02-2100-3926)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임대주택<br>감면 연장             | ○ 2012년말까지 취득세, 재<br>산세 감면<br>- (취득세) 60㎡이하 면제<br>- (재산세) 40㎡이하 면제<br>40~60㎡ 50%<br>60~85㎡ 25% | ○ 2015년말까지 취득세, 재산세 감면<br>- (취득세) 60㎡이하 면제<br>- (재산세) 40㎡이하 면제<br>40~60㎡ 50%<br>60~85㎡ 25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문화체육관광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예술인 복지 증진을<br>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<br>추진        | <없 음>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예술분야 계약서 표준양식 개발보급<br>및 표준양식 사용시 재정지원 우대<br>○ 예술인 경력 관리를 위한 경력정보시스템<br>구축 운영<br>○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<br>○ 사회공헌 연계 창작준비금 지원<br>문화체육관광부>알림마당>보도자료>11<br>월 18일, ‘예술인 복지법’ 시행, 법을<br>통한 복지 지원 첫 출발 | 예술인 복지법<br>(’12.11.8.)<br>(’13.1월 적용)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문화체육<br>관광부<br>예술정책과<br>(02-3704-9523)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                   | <없 음>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,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(법 제27조의2)</li> <li>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며,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학력·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자격요건 부여(시행령 제16조의2)</li> <li>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하려는 사람은 자격요건을 갖추어 「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」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제출(시행규칙 제2조)</li> </ul> <p><a href="#">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안내 홈페이지</a>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문화예술교육지원법(제27조의2 규정 시행/ '13.2.18)</li> <li>같은법 시행령(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규정 시행 / '13.2.18)</li> <li>같은법 시행규칙(제2조 규정 시행/ '13.2.18)</li> </ul> <p>문화체육관광부<br/>문화예술교육과<br/>(02-3704-9406)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유상포인트, 전자대금 지급 관련 콘텐츠 이용자 보호 강화 | ① 유상 포인트에 대한 정보제공             | <없 음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자가 유상포인트를 발행한 경우, 자본금의 규모 및 자기자본현황, 남은 금액의 현금 반환,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체결 사항, 포인트 사용상 제한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</li> </ul> <p>콘텐츠이용자<br/>보호지침<br/>( '13.2월(잠정))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전자적 대금 지급시 사전확인 및 사후통지      | <없 음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콘텐츠 거래시 전자적 방식에 의한 대금결제 시, 이용자의 사전확인 및 결제 후 이용자에 대한 통지</li> <li>콘텐츠 사업자는 콘텐츠의 내용 및 종류, 콘텐츠의 가격, 콘텐츠의 제공기간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동의 확인</li> <li>전자적 대금지급 후 사업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용요금을 고지할 때 사업자별로 거래내역, 이용요금, 연락처 표시</li> </ul> <p>디지털콘텐츠<br/>산업과<br/>(02-3704-9311)</p>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청약철회 등의 방식에 있어 전자적 방법 제공    | <없 음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콘텐츠 이용에 관한 계약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, 청약철회, 계약의 해지·해제·변경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함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청약 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지연시 지연이자율 조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4%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0%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농림수산식품부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을 통한 열악한 농어촌 주거여건개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구 단위 주택개량 및 신규마을 조성 별도지원</li> <li>- 전원마을·뉴타운 조성 사업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마을단위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</li> <li>기존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 통합지원</li> </ul> <p>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&gt;정보광장&gt;법령정보&gt;농어촌정비법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농림수산사업<br>시행지침<br>(‘13.1.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농림수산식품부<br>지역개발과<br>(044-201-1553)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·운영               | 〈없 음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·공립 대학병원, 의과대학 및 연구소 등에 농어업안전보건센터 5개소 지정·운영</li> </ul> <p>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&gt;정보광장&gt;법령정보&gt;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농어업인 삶의 질<br>향상 및<br>농어촌지역<br>개발촉진에 관한<br>특별법<br>(‘13.1월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농림수산식품부<br>농어촌사회과<br>(044-201-1574)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로 우수기업에 다양한 혜택 제공   | 〈없 음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농림수산식품부와 (사)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농어촌사회 공헌 활동으로 농어촌 활력 창출에 기여한 기업, 단체 등을 인증</li> <li>인증기업에 대해서는 금리우대, 정책사업 지원 우대 등 각종 제도적인 지원</li> </ul> <p>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&gt;알림마당&gt;보도자료&gt;농어촌을 사랑하세요 기업이 성장합니다.</p> | 농어촌사회공헌인<br>증제 운영요령<br>(‘13.1.)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농림수산식품부<br>농어촌산업팀<br>(044-201-1590)                  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등 개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김치류 원산지 표시 : 98% 이상인 원료가 없을 경우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2가지 원료</li> <li>◦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&lt;12개품목&gt;<br/>소돼자·닭고기(배달용 포함), 오리고기, 쌀, 배추김치, 팥어, 우렁, 낙지, 참돔, 미꾸라지, 뱀장어</li> <li>◦ 원산지 표시방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글자크기 : 음식명 1/2</li> <li>- 표시위치 : 규정 없음</li> <li>- 배추김치 : 배추김치만 표시</li> <li>- 혼합표시 : 규정 없음</li> </ul> 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김치류 원산지 표시 확대 :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의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</li> <li>◦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 및 표시 추가 &lt;좌 12개품목 + 추가 4품목&gt;<br/>돼지고기(배달용 포함), 염소고기, 고등어, 명태, 갈치,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, 살아있는 수산물</li> <li>◦ 원산지 표시방법 변경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글자크기 : 음식명과 동일 또는 크게</li> <li>- 표시위치 : 음식명 옆 또는 하단</li> <li>- 배추김치 :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함께 표시</li> <li>- 혼합표시 :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</li> </ul> </li> </ul> <p>☞ (참고) 농림수산물부&gt;알림소식&gt;보도자료&gt;원산지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</p> |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('13.6.잠정)<br>농림수산물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(044-201-2419) |
| 5. 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미국 수출 제한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미국으로 삼계탕 수출 가능</li> </ul> <p>☞ (참고) 농림수산물부&gt;알림마당&gt;보도자료&gt;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축전염병 예방법/축산물위생관리법<br>농림수산물식품부 검역정책과 (044-201-2457)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지원우대 확대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우대 주관기관 :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지원우대 주관기관 :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장 추가</li> </ul> <p>☞ (참고) 농림수산물부&gt;정보광장&gt;법령정보&gt;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('13.1.)<br>농림수산물식품부 경영인력과 (044-201-1535)                   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.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<br>채용 시 연령규제<br>개선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농촌 : 19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</li> <li>어촌 : 3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농어촌 체험마을을 관리·운영할 수 있는 19세 이상인 재(연령 상한 없음)</li> </ul> <p>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&gt;정보광장&gt;법령정보&gt;훈령·예규고사&gt;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 운영 요령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농촌체험마을<br>사무장지원사업<br>운영요령<br>(‘13.1.)<br>어촌체험마을<br>사무장지원사업<br>시행지침<br>(‘13.1.)<br><br>농림수산식품부<br>농어촌산업팀<br>(044-201-1588)<br>수산개발과<br>(044-201-2639) |
| 8. 농지은행사업<br>지원대상자의<br>연령제한을 완화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농지규모화사업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: 만 60세</li> <li>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확대 : 만 70세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농지규모화사업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: 만 64세까지 확대</li> <li>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확대 : 만 75세까지 확대</li> </ul> <p>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&gt;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&gt;영농규모화사업, 경지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농림수산사업<br>시행지침<br>(‘13.1.)<br><br>농림수산식품부<br>농지과<br>(044-201-1737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. 축산업 허가제 시행 및<br>가축사육업 등록제<br>대상 확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허가제 없음</li> <li>종축업, 부화업, 정액등처리업과 사육면적이 소 300㎡, 닭·오리·돼지 50㎡를 초과하는 농가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종축업, 부화업,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의 가축사육업(소, 돼지, 닭, 오리)은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함</li> <li>허가대상 미만의 소, 돼지, 닭, 오리 사육업과 시슴, 양 사육업 그리고 축사면적이 15제곱미터 이상인 닭·오리·거위·칠면조·메추리·타조·꿩 사육업</li> </ul> <p>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&gt;정보광장&gt;법령정보&gt;훈령·예규고사&gt;축산업시행령 및 시행규칙</p> | 축산법 시행령<br>(‘13.2.)<br><br>농림수산식품부<br>축산정책과<br>(044-201-2317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. 축산농가 사료직거래<br>활성화 지원사업<br>추진     | 〈없 음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외상거래를 현금거래 등으로 전환하여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사료구매 자금 지원(3%, 2년 상환)</li> </ul> <p>☞ (참고) 농림수산물부 홈페이지 &gt; 알림마당 &gt; 보도자료 &gt;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</p>    | 사료관리법<br>(‘13.1.)<br>농림수산물식품부<br>축산경영과<br>(044-201-234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1. 동물등록제 전국<br>확대시행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 대상동물을 등록하게 할 수 있음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함</li> </ul> <p>☞ (참고) 농림수산물식품부 &gt; 알림소식 &gt; 보도자료 &gt; 우리나라 동물보호수준, 한 단계 업그레이드</p>                 | 동물보호법<br>(‘13.1.1.)<br>농림수산물식품부<br>방역총괄과<br>(044-201-2355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. 동물복지축산농장<br>인증제, 돼지에 확대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존 산란계만 적용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돼지에 확대 시행</li> </ul> <p>☞ (참고) 농림수산물식품부 &gt; 알림소식 &gt; 보도자료 &gt; 한단계 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최초 도입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동물복지 축산<br>농장인증기준 및<br>인증등에 관한<br>세부실시 요령<br>(‘13.5.)<br>농림수산물식품부<br>방역총괄과<br>(044-201-2355) |
| 13. 어선표지판을<br>전국단위로 개선하고<br>부착대상을 확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도, 사군구 지역 약호와 함께 어선등록번호 표시</li> <li>표지판 부착대상을 연근해 어업허가어선, 어획물 운반업으로 등록한 어선에 한정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역약호를 폐지하고 어선등록번호만 표시</li> <li>표지판 부착대상에 어장관리선도 포함</li> </ul> <p>☞ (참고) 농림수산물식품부 &gt; 정보광장 &gt; 법령정보 &gt; 훈령·예규·고시 &gt;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</p> | 어선표지판 규격<br>및 부착요령<br>(‘13.1.1. 적용)<br>농림수산물식품부<br>지도안전과<br>(044-201-2656)                   |
| 14. 조건불리지역<br>수산물직불제 대상<br>범위 확대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육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섬 지역의 어가에 가구 당 49만원 지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상지역을 30km 이상 떨어진 섬 지역으로 확대(가구당 49만원 지원)</li> </ul> <p>☞ (참고) 농림수산물식품부 &gt; 농림수산물사업시행지침 &gt; 공지사항 &gt; 조건불리지역 수산물직불제 사업</p>                 | 농어업농어촌 및<br>식품산업 기본법<br>(‘13.1.1. 적용)<br>농림수산물식품부<br>수산물개발과<br>(044-201-2643)           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5. 친환경수산물<br>인증제도 개편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가 무항생제수산물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제로 개편 시행</li> <li>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수산물에 대하여 유기수산물 인증제도를 실시</li> </ul> <p>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&gt;정보광장&gt;법령정보&gt;훈령예규고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</p> | 친환경농어업<br>육성 및 유기<br>식품 등의 관리·<br>지원에 관한<br>법률 시행령 및<br>시행규칙<br>(’13.6.)<br><br>농림수산식품부<br>수산정책과<br>(044-201-2622) |
| 16. 어촌어항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어항시설기본·어항정비·어항환경개선계획</li> <li>어항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어항개발계획에 레저관광개발계획 추가</li> <li>어항구역내 금지행위중 시험·연구·교습어업에 한해 허용</li> </ul> <p>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&gt;정보광장&gt;법령정보&gt;어촌·어항법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어촌어항법<br>시행령<br>(’13.4.)<br><br>농림수산식품부<br>수산개발과<br>(044-201-263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7. 수협중앙회의<br>정상조합에 대한<br>부실예방 대책 강화 | <없 음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일선조합 부실예방을 위한 수협중앙회의 책무 강화 및 부실조합에 대한 시정요구</li> </ul> <p>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&gt;정보광장&gt;법령정보&gt;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산업협동조합의<br>구조개선에<br>관한 법률<br>(’13.1.)<br><br>농림수산식품부<br>수산정책과<br>(044-201-2619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8. 서해5도 백령,<br>대소청도 주변어장<br>확장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평도 주변어장 총764km<sup>2</sup></li> <li>B 어장 총 133km<sup>2</sup></li> <li>C 어장 총 102km<sup>2</sup>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평도 주변어장 총776km<sup>2</sup></li> <li>B 어장 총 176km<sup>2</sup></li> <li>C 어장 총 138km<sup>2</sup></li> <li>연평도 일부역은 어구를 설치할 수 없음</li> </ul> <p>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&gt;정보광장&gt;법령정보&gt;훈령예규고시&gt;어선안전조업규정</p>        | 어선안전조업<br>규정 고시<br>(’13. 1.)<br><br>농림수산식품부<br>지도안전과<br>(044-201-2657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9. 농업경영체<br>등록정보의 변경기준<br>완화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품목별 재배면적 변경범<br/>위 : 3% 초과</li> <li>◦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<br/>조정 : 20% 초과</li> <li>◦ 가축종류별 출하량 완화<br/>: 3% 초과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품목별 재배면적 변경범위 :10%로 완화</li> <li>◦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 조정 :10%(초과<br/>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내 미변경)</li> <li>◦ 가축종류별 출하량 완화 :20%(초과하지<br/>않더라도 일정 규모 초과 변경등록)</li> </ul> <p>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&gt;정보광장&gt;법령정보&gt;<br/>훈령·예규·고시·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<br/>재배·수확면적 등의 변경범위 고시</p> | 농어업경영체<br>육성 및 지원에<br>관한 법률<br>시행령, 고시<br>(‘12.12.)<br><br>농림수산식품부<br>농기소득안정추진단<br>(044-201-1858) |
| 20. 친환경 농식품<br>인증제도 통합·<br>일원화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친환경 농산물과 수산물,<br/>유기가공식품 등 인증제로<br/>다원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친환경농업육성법</li> <li>- 농수산물품질관리법</li> <li>- 식품산업진흥법</li> </ul> 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<br/>라·지원에 관한 법으로 제명 변경</li> <li>◦ 유기수산물, 무항생제수산물, 활성처리<br/>제비사용수산물로 인증대상 범위 확대</li> <li>◦ 재포장인증 의무화</li> </ul> <p>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&gt;정보광장&gt;법령정보&gt;<br/>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라<br/>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</p>                       | 친환경농어업육성<br>및 유기식품등의<br>관라·지원에<br>관한 법률<br>(‘13.6.2)<br><br>농림수산식품부<br>친환경농업과<br>(044-201-1872)   |
| 21. 비료 생산·수입업자<br>비료 제조 원료 장부<br>기재 의무화 | <없 음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비료 생산·수입업자의 비료 제조원료<br/>에 대한 장부기재 및 보존 의무화</li> <li>◦ 장부기재 및 보존 위반시 행정처분(위<br/>반 경중에 따라 경고에서 영업소 폐쇄)</li> </ul> <p>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&gt;정보광장&gt;법령정보&gt;<br/>훈령·예규·고시·비료관리법 시행규칙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료관리법<br>시행규칙<br>(‘13.4.)<br><br>농림수산식품부<br>친환경농업과<br>(044-201-188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2. 식물 신제품 육성자<br>권리 강화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식물 신제품 보호권 침<br/>해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<br/>천만원 이하의 벌금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식물 신제품 보호권 침해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<br/>벌금</li> </ul> </li> </ul> <p>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&gt;알림소&gt;보도자료&gt;<br/>식물신제품 육성자권리강화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식물신제품<br>보호법<br>(‘13.6.2.)<br><br>농림수산식품부<br>종자생명산업과<br>(044-201-1654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3.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 | <없 음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</li> <li>○ 간척지활용사업의 체계적인 추진</li> <li>○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 등</li> </ul> <p>☞ (참고) 농림수산물부&gt;정보광장&gt;법령정보&gt;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</p> |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'13.1.)<br><br>농림수산물부 농업정책과 (044-201-1717)                    |
| 24. FTA 지원대책 성과 및 투융자계획 국회 제출 | <없 음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FTA 농어업인 지원대책의 성과분석 및 투융자계획 보고서를 매년 국회 제출</li> <li>* 성과분석(5월말), 투융자계획(9월말)</li> </ul> <p>☞ (참고) 농림수산물부&gt;정보광장&gt;법령정보&gt;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</p>         |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시행('13.1월)<br><br>농림수산물부 농업정책과 (044-201-1719) |

### 지식경제부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산업단지 제도 개선 | ① 지식 서비스 산업의 산업단지 산업시설 구역입주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연과학 연구개발업, 출판업 등을 비롯한 11개 업종에 대해서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를 허용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학 연구개발업, 경영컨설팅업 등의 지식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를 추가 허용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('12.12.)<br><br>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(02-2110-5302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입주 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 산업시설 구역 내 업종의 통합배치 허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업종별로 입주구역을 구분하여 배치하도록 산업단지 업종별 배치계획을 수립</li> </ul>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2개 이상의 업종이 동일한 입주구역에 배치되도록 산업단지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</li> </ul> <p>☞ 법제처&gt;법령통합검색&gt; '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' 입력&gt;시행예정법령 보기</p> |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('13.3.)<br><br>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(02-2110-5302)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유전자<br>변형미생물<br>및<br>생산공정<br>이용시설<br>안전관리<br>제도화 | ① 생산<br>공정이용<br>시설 및<br>유전자변<br>형미생물<br>안전관리<br>제도화 | ○ 유전자변형미생물도 식<br>품사료, 환경방출 등 다<br>른 LMO와 유사한 위해<br>성심사 절차를 거쳐 생<br>산승인을 받음 | ○ 유전자변형미생물이 환경방출이 되지<br>않도록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생산공정<br>이용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함<br><br>○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해서는 해당하<br>는 용도, 환경방출 가능성 등에 적합한 위<br>해성심사를 거쳐 이용승인을 받아야만<br>이용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전자변형생물체<br>의 국가간 이동<br>등에 관한 법률<br>(’13.12.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위해성<br>심사 신청<br>주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<br>입자, 생산자 이외에개발<br>자도 위해성 심사를 신<br>청할 수 있는지 명확하<br>지 않음     | ○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는 자도 위<br>해성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<br><br>○ 개발자의 신청에 의해 위해성심사를 통<br>과한 경우, 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<br>입할 때는 위해성심사를 면제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연구시설<br>폐쇄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<br>설을 폐쇄하는 경우 신고<br>의무가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용하<br>는 연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대통령령<br>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신고를 하<br>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환경영향<br>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포괄적 검사조항(현행 제<br>36조)에 근거하여 연구·<br>생산시설, 보관장소, 주변<br>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    | ○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건강과<br>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<br>정부가 연구·생산시설, 보관장소, 주변<br>지역을 조사할 수 있음<br><br>○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<br>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<br><br>☞ (참고)국가법령정보센터>유전자변형생물체<br>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| 지식경제부<br>바이오헬스과<br>(02-2110-5661)        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강원<br>랜드의<br>폐광지역<br>개발기금<br>납부비율<br>상향조정      | 폐광지역개<br>발기금<br>납부비율<br>상향조정                    | ○ 강원랜드 법인세 차감전<br>당기순이익의 20%를 폐광<br>지역 개발기금으로 납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을 강원랜드<br>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25%로 상<br>향조정<br><br>☞ (참고)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> 폐광지역개<br>발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<br>24201호, 2012.11.27, 일부개정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폐광지역개발지원<br>에관한특별법<br>시행령<br>(‘12.11.27.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식경제부<br>석탄산업과<br>(02-2110-5495)          |
| 4. 외국<br>리콜제품에<br>대한<br>사업자보고<br>의무화              | 해외<br>리콜제품에<br>대한 사업자<br>보고 의무화                 | ○ 보고의무 없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이 외국<br>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 조치된 경<br>우에 해당 사업자는 그 내용을 소관 중<br>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<br>합니다.<br><br>☞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> 제품안전기본법<br>[시행2012.8.24], [법률 제11437호,<br>2012.5.23, 일부개정] | 제품안전기본법<br>(‘12.8.24.)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식경제부<br>안전품질정책과<br>(02-509-7238)         |
| 5. 우정<br>서비스의<br>업무전문성<br>제고를<br>위해<br>업무위탁<br>확대 | 우정서비스<br>의 업무<br>전문성<br>제고를 위해<br>업무위탁<br>확대    | ○ 우정사업 관련 상품의<br>개발·판매 등의 다수<br>업무 위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공익사업운영, 우체국보험 계약관리, 우<br>체국전산시스템 개발, 결산·회계 등<br>다수의 업무 추가 위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우정사업 운영에<br>관한 특별법<br>시행령<br>(‘12.11.6.)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우정사업본부<br>경영총괄과<br>(02-2195-1115)         |
| 환경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수질 및 수생태계<br>환경기준 항목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건강보호항목 17종<br>○ 생활환경기준 중 유기물<br>질 항목 BOD, COD | ○ 건강보호항목 20종<br>○ 생활환경기준 중 유기물질 항목 BOD,<br>TOC(Total Organic Carbon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환경정책기본법<br>시행령<br>(‘13.1.)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물환경정책국<br>물환경정책과<br>(02-2110-6822)        |
| 2. 「어린이용품<br>환경유해인자<br>사용제한 등에 관한<br>규정」 시행       | <없 음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<br>에 관한 규정 시행<br><br>☞ (참고)환경부 홈페이지>알림홍보>보도해명<br>자료>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<br>에 관한 고시 제정공포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환경보건법<br>(‘13.9.)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환경부<br>환경보건정책과<br>(02-2110-6960)     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수시점검 방법 추가        |                 | ○ 측정장비 노상단속, 비디오단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측정장비 노상단속, 비디오단속, 원격측정기 단속<br><br>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법령/정책>법령정보>입법행정예고>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                   | 대기환경보전법<br>시행규칙<br>(’13.2.)<br><br>환경부<br>교통환경과<br>(02-2110-6859)              |
| 4.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제도    |                 | ○ 정밀검사 결과 2회이상 부적합차량을 정비하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확인검사를 담당하는 확인검사대행자로 이원화 되어 있음 | ○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확인검사대행자를 통합한 전문정비사업 제도 시행<br><br>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법령/정책>법령정보>입법행정예고>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        | 대기환경보전법<br>시행규칙<br>(’13.2.)<br><br>환경부<br>교통환경과<br>(02-2110-6859)              |
| 5.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 |                 | ○ 규제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트랙터, 콤파인 2종에 대하여 Tier-3 기준 적용 및 환경인증 의무화<br><br>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알림홍보>보도자료>농업기계 배출가스, 2013년 2월부터 단계적 규제 시행 | 대기환경보전법<br>시행규칙<br>(’13.2.)<br><br>환경부<br>교통환경과<br>(02-2110-6809)              |
| 6. 미세먼지 예보           | ① 예보수행 주체 및 근거  | ○ 지자체 / 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/ 대기환경보전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기환경보전법<br>(’13. 2월)<br><br>환경부<br>기후대기정책과<br>(02-2110-6778)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② 예보 대상 대기오염 물질 | ○ 미세먼지(PM10) 및 오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미세먼지(PM10)<br><br>☞ (참고) 시범사업 이후 초미세먼지(PM2.5) 및 오존으로 점차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기환경보전법<br>시행령 (개정 추진예정, ’13.2.~)<br><br>환경부<br>기후대기정책과<br>(02-2110-6778)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③ 예보 기준         | ○ 통합대기환경지수(환경부, ’06년 개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통합대기환경지수 개정(등급 구간 수정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기환경보전법<br>시행규칙 (개정 추진예정, ’13.2.~)<br><br>국립환경과학원<br>대기공학연구과<br>(032-560-7344)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.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음폐수 해양배출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음폐수 해양배출 전면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양환경관리법<br>시행규칙<br>(‘13.1.)<br><br>환경부<br>폐자원관리과<br>(02-2110-6943)      |
| <b>보건복지부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중증질환<br>의료비 부담<br>경감 및<br>취약계층<br>건강보험<br>보 장 성<br>확대 | ① 간암<br>치료제<br>(넥사버)<br>본인부담<br>경감  | ○ 본인부담 50%<br><br>○ 본인부담 5%<br><br>☞ 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<br>료>내년 건강보험료 1.6% 인상    | 국민건강보험법<br>시행령<br>(‘13.1.)<br><br>보건복지부<br>보험약제과<br>(02-2023-7426)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위암<br>치료제<br>(TS-1)<br>본인부담<br>경감 | ○ 본인부담 100%<br><br>○ 본인부담 5%<br><br>☞ 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<br>료>내년 건강보험료 1.6% 인상   | 국민건강보험법<br>시행령, 고시<br>(‘13.1.)<br><br>보건복지부<br>보험급여과<br>(02-2023-7426)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중증질환<br>초음파<br>검사                 | ○ 비급여<br><br>○ 건강보험 급여적용<br><br>☞ 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<br>료>내년 건강보험료 1.6% 인상       | 국민건강보험법<br>시행령, 고시<br>(‘13.10.)<br><br>보건복지부<br>보험급여과<br>(02-2023-8756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노인틀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완전틀니 급여<br><br>○ 부분틀니까지 급여확대<br><br>☞ 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<br>료>내년 건강보험료 1.6% 인상 | 국민건강보험법<br>시행령, 고시<br>(‘13.10.)<br><br>보건복지부<br>보험급여과<br>(02-2023-7413)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필수 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             | ① 영유아 Hib 백신 필수예방접종 도입  | ○ 전액 본인부담                 | ○ 필수예방접종도입으로 보건소 및 민간 위탁의료기관 접종비용 지원<br>- 보건소 : 무료<br>- 위탁의료기관 : 본인부담 1회당 5천원<br><br>☞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|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('13.3월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(043-719-7369)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65세 이상 폐렴구균 보건소 접종 지원 | ○ 전액 본인부담                 | ○ 보건소 : 무료 접종<br><br>☞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('13.5월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(043-719-7369)      |
| 3.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추가 및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| ① 희귀난치성질환 추가            | ○ 107개                    | ○ 144개로 확대 적용<br><br>☞ 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의료급여 제도가선으로 충족한 의료안전망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료급여수급자의 준 및 일반기준 [별표2] ('13년 중)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(02-2023-8257)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건강생활유지비 추가지원          | ○ 72천원/년 (매달 6천원 지급)      | ○ 추가 5만원/년 지급<br><br>☞ 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의료급여 제도가선으로 충족한 의료안전망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('13년 중)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(02-2023-8257)             |
| 4. PC방 흡연 전면금지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영업장 내부 1/2 이상 금연구역으로 지정 | ○ PC방 영업장 전체 흡연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민건강증진법 ('13.6.)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(02-2023-7848)          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
| 5.음식점<br>외부가격<br>표시 등<br>표지제도<br>개선 | ①음식점 최종<br>지불 가격<br>표시 및 식육<br>100g당 가<br>격 표시 | ○ 가격표 게시 의무만 부과<br>○ 식육 중량당 가격 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최종 지불 가격 표시<br>○ 식육 100그램당 가격 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식품위생법<br>(‘13.1.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음식점<br>외부가격<br>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<br>게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15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·휴게 음식점<br>은 외부에 반드시 가격 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건복지부<br>식품정책과<br>(02-2023-7785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
| 6.중증장애인<br>장애인연금<br>지원 확대           | ①장애인연금<br>선정기준액<br>인상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‘ 12년 선정기준액<br>- 단독가구 : 55.1만원<br>- 부부가구 : 88.1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‘ 13년 선정기준액<br>- 단독가구 : 58만원<br>- 부부가구 : 92.8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인연금수급권<br>선정기준액 고시<br>(‘13.1.1)<br>장애인연금법시행령<br>(‘13.1.1)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부가급여<br>2만원<br>인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기초생활수급자<br>-(18~64세) 6만원<br>-(65세 이상) 15만원<br>○ 차상위: 5만원<br>○ 차상위 초과<br>-(18~64세) 0만원<br>-(65세 이상) 2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기초생활수급자<br>-(18~64세) 8만원<br>-(65세 이상) 17만원<br>○ 차상위: 7만원<br>○ 차상위 초과<br>-(18~64세) 2만원<br>-(65세 이상) 4만원 | 보건복지부<br>장애인자립기반과<br>(02-2023-8672)<br>(02-2023-8654)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
| 7. 장애인활동지원<br>신청자격 및 급여<br>확대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신청자격 확대<br>○ 1급 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2급 장애인까지 확대<br><a href="#">☞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&gt;알림마당&gt;보도자료</a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인활동지원에<br>관한법률 시행령<br>(‘13.1월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활동지원급여 확대<br>【성인(18세이상 수급자)】 <table><tr><th>활동지원<br/>등급</th><th>인정<br/>점수</th><th>기본<br/>급여</th></tr><tr><td>1등급</td><td>380점~445점</td><td>860,000원</td></tr><tr><td>2등급</td><td>320점~379점</td><td>690,000원</td></tr><tr><td>3등급</td><td>260점~319점</td><td>520,000원</td></tr><tr><td>4등급</td><td>220점~259점</td><td>350,000원</td></tr></table> 【아동(만6세 ~ 18세미만수급자)】 <table><tr><th>활동지원<br/>등급</th><th>인정<br/>점수</th><th>기본<br/>급여</th></tr><tr><td>1등급</td><td>320점~<br/>445점</td><td>520,000원</td></tr><tr><td>2등급</td><td>220점~<br/>319점</td><td>350,000원</td></tr></table> | 활동지원<br>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정<br>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본<br>급여 | 1등급 | 380점~445점 | 860,000원 | 2등급 | 320점~379점 | 690,000원 | 3등급 | 260점~319점 | 520,000원 | 4등급 | 220점~259점 | 350,000원 | 활동지원<br>등급 | 인정<br>점수 | 기본<br>급여 | 1등급 | 320점~<br>445점 | 520,000원 | 2등급 | 220점~<br>319점 | 350,000원 | 【성인(18세이상 수급자)】 <table><tr><th>활동지원<br/>등급</th><th>인정<br/>점수</th><th>기본<br/>급여</th></tr><tr><td>1등급</td><td>380점~445점</td><td>886,000원</td></tr><tr><td>2등급</td><td>320점~379점</td><td>711,000원</td></tr><tr><td>3등급</td><td>260점~319점</td><td>536,000원</td></tr><tr><td>4등급</td><td>220점~259점</td><td>361,000원</td></tr></table> | 활동지원<br>등급 | 인정<br>점수 | 기본<br>급여 | 1등급 | 380점~445점 | 886,000원 | 2등급 | 320점~379점 | 711,000원 | 3등급 | 260점~319점 | 536,000원 | 4등급 | 220점~259점 |
| 활동지원<br>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정<br>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본<br>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
| 1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80점~445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6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
| 2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20점~379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9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
| 3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60점~319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2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
| 4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20점~259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5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
| 활동지원<br>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정<br>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본<br>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
| 1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20점~<br>445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2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
| 2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20점~<br>319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5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
| 활동지원<br>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정<br>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본<br>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
| 1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80점~445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86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
| 2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20점~379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11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
| 3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60점~319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36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
| 4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20점~259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61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7. 장애인활동지원<br>신청자격 및 급여<br>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<br>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<br>되며, 추가급여 사유가 중<br>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<br>따라 산정되며,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<br>는 경우 모두 산정 | 보건복지부<br>장애인서비스팀<br>(02-2023-8664)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추가<br/>급여</th><th>구분</th><th>추가<br/>급여</th></tr><tr><td>최중증<br/>1인가구</td><td>664,000원</td><td>출산<br/>가구</td><td>664,000원</td></tr><tr><td>중증<br/>1인가구</td><td>166,000원</td><td>학교<br/>생활</td><td>83,000원</td></tr><tr><td>중증<br/>장애인<br/>가구</td><td>83,000원</td><td>직장<br/>생활</td><td>83,000원</td></tr><tr><td>취약<br/>가구</td><td>83,000원</td><td>자립<br/>준비</td><td>166,000원</td></tr></table> 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가<br>급여 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가<br>급여 | 최중증<br>1인가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64,000원 | 출산<br>가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64,000원 | 중증<br>1인가구 | 166,000원           | 학교<br>생활 | 83,000원                    | 중증<br>장애인<br>가구 | 83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직장<br>생활 | 83,000원 | 취약<br>가구 | 83,000원 | 자립<br>준비 | 166,000원 | <table><tr><th>분 류</th><th>추가급여</th></tr><tr><td>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 가구</td><td>684,000원</td></tr><tr><td>②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 가구</td><td>171,000원</td></tr><tr><td>③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1~2급장애<br/>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인 가<br/>족만으로 구성된 가구</td><td>684,000원</td></tr><tr><td>④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~2급 장<br/>애인 6세 이하 75세 이상인 가족만<br/>으로 구성된 가구</td><td>171,000원</td></tr><tr><td>⑤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<br/>산한 경우</td><td>684,000원</td></tr><tr><td>⑥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<br/>준비하는 경우</td><td>171,000원</td></tr><tr><td>⑦ 학교에 다니는 경우</td><td>86,000원</td></tr><tr><td>⑧ 직장에 다니는 경우</td><td>86,000원</td></tr><tr><td>⑨ 가족(실질적 보호자의 결혼, 출산,<br/>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<br/>부재한 경우</td><td>171,000원</td></tr></table> | 분 류 | 추가급여 |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 가구 | 684,000원 | ②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 가구 | 171,000원 | ③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1~2급장애<br>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인 가<br>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| 684,000원 | ④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~2급 장<br>애인 6세 이하 75세 이상인 가족만<br>으로 구성된 가구 | 171,000원 | ⑤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<br>산한 경우 | 684,000원 | ⑥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<br>준비하는 경우 | 171,000원 | ⑦ 학교에 다니는 경우 | 86,000원 | ⑧ 직장에 다니는 경우 | 86,000원 | ⑨ 가족(실질적 보호자의 결혼, 출산,<br>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<br>부재한 경우 | 171,000원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가<br>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분       | 추가<br>급여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중증<br>1인가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64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출산<br>가구 | 664,000원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증<br>1인가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66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학교<br>생활 | 83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중증<br>장애인<br>가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3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직장<br>생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3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취약<br>가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3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립<br>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66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분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가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 가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84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②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 가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71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③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1~2급장애<br>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인 가<br>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84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④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~2급 장<br>애인 6세 이하 75세 이상인 가족만<br>으로 구성된 가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71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⑤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<br>산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84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⑥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<br>준비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71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⑦ 학교에 다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6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⑧ 직장에 다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6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⑨ 가족(실질적 보호자의 결혼, 출산,<br>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<br>부재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71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○ 활동보조 급여 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활동보조 급여 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<table><tr><th>분 류</th><th>금액<br/>(원)</th></tr><tr><td>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<br/>하는 경우</td><td>8,300</td></tr><tr><td>② 22시 이후 6시 이전<br/>심야에 제공하는 경우</td><td>9,300</td></tr><tr><td>③ 『관공서의 공휴일에<br/>관한 규정』에 의한<br/>공휴일에 제공하는<br/>경우</td><td>9,300</td></tr></table> | 분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액<br>(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<br>하는 경우             | 8,300    | ② 22시 이후 6시 이전<br>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| 9,300    | ③ 『관공서의 공휴일에<br>관한 규정』에 의한<br>공휴일에 제공하는<br>경우 | 9,300    | <table><tr><th>분 류</th><th>금액<br/>(원)</th></tr><tr><td>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</td><td>8,550</td></tr><tr><td>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</td><td>10,260</td></tr><tr><td>③ 『관공서의 공휴일에<br/>관한 규정』에 의한<br/>공휴일에 제공하는<br/>경우</td><td>10,260</td></tr></table> | 분 류      | 금액<br>(원)  |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| 8,550    |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| 10,260          | ③ 『관공서의 공휴일에<br>관한 규정』에 의한<br>공휴일에 제공하는<br>경우 | 10,260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분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액<br>(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<br>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,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② 22시 이후 6시 이전<br>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,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③ 『관공서의 공휴일에<br>관한 규정』에 의한<br>공휴일에 제공하는<br>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,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분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액<br>(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,5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,2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③ 『관공서의 공휴일에<br>관한 규정』에 의한<br>공휴일에 제공하는<br>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,2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○ 원거리 교통비<br>- 교통비 : 1일 4,000원<br>- 대상지역 : 도서·벽지지<br>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원거리 교통비<br>- 교통비: 1일 6,000원<br>- 대상지역: 시·군의 읍·면 전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
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.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등록 시행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등록 시행</li> <li>※ 등록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 참조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인복지법 ('13.1.27.)<br><br>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(02-2023-8184)                      |
| 9.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대상 확대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국가구평균소득 100% 이하(31천명)</li> <li>- '12년 예산 : 48,111백만원</li> </ul>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50% 이하(40천명)로 확대</li> <li>- '13년 예산 : 57,811백만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<br><br>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(02-2023-8667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.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인 교육 및 정보통신·의사소통 관련 편의제공 대상기관 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신규대상기관) 사립유치원, 평생교육시설,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, 직업교육훈련기관, 국·공립 어린이집,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</li> </ul> </li> <li>장애인 고용 및 정보통신·의사소통 관련 편의제공 대상기관 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신규대상기관)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작업장</li> </ul> </li> <li>정보통신·의사소통 관련 편의제공 대상기관 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신규대상기관) 체육시설, 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</li> </ul> </li> </ul> |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('13.4.11.)<br><br>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(02-2023-8640) |
| 11.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화~3화 : 180만원 범위내 (기초수급자는 300만원)</li> <li>4화 : 100만원 범위내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화~4화 : 180만원 범위내 (기초수급자는 300만원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모자보건법 ('13.1월)<br><br>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(02-2023-8483)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. 만 3~5세 어린이 숲<br>계층 누리과정 확대<br>적용       | ○ 만 5세 어린이에 한정<br>누리과정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'13년 3월부터 만 3~5세 모든 어린이에<br>게 누리과정 확대 적용<br><br>☞ 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정책소개>영유아<br>보육>3-5세 연령별 누리과정 | 영유아보육법<br>(’13.3월)<br><br>보건복지부<br>보육정책과<br>(02-2023-8926) |
| 13. 국민기초생활 보장<br>수급자의 부양의무자<br>기준 등 선정기준완화 | ○ 최저생계비 1,495,550원<br>(4인가구 기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최저생계비 3.4%인상<br>1,546,399원(4인가구 기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민기초생활<br>보장법<br>(’13.1월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주거용 재산 환산율 월<br>4.17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주거용 재산 환산율 월 1.04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기본공제 재산액<br>대도시 133백만원<br>중소도시 108.5백만원<br>농어촌 101.5백만원                   | ○ 기본공제 재산액<br>대도시 228백만원<br>중소도시 136백만원<br>농어촌 116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<br>차등 지원<br>※ 100인 미만, 100인 이상~<br>300인 미만, 300인 이상          | ○ 30인 미만 소규모시설 기준 신설 및<br>9.5%인상(전체시설 평균 5.3%인상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건복지부<br>기초생활보장과<br>(02-2023-8128)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정부사업(희망키움통장 ,<br>취업성공패키지사업 , 희<br>망리본사업) 참여자 중<br>소득증가로 인한 탈수급<br>자 대상 지원 | ○ 전체 수급자 중 일반시장에 취업하여<br>소득증가로 탈수급한 대상자 전체로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자활사업 참여자의 소득<br>30%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자활사업 참여자 외에도 일반 시장에<br>취업한 수급자의 근로 소득 30% 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수급자 사망시 1인당 50<br>만원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1인당 75만원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국토해양부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감정<br>평가기준<br>명확화 | ① 감정<br>평가의<br>원칙 및<br>절차<br>규정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원칙, 예외 불명확 및 감정평가서 기재사항 등 절차규정 미비</li><li>○ 감정평가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규정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시장가치 기준평가, 현황평가, 개별평가 원칙 등을 명확히 하고, 예외적 평가시 그 사실과 이유를 기재토록 규정</li></ul></li><li>○ 감정평가업자와 의뢰인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정해야 하는 기본적 사항과 평가조건 부가관련 규정 신설</li><li>○ 국제표준에 부합하면서도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와 체계로 개편</li></ul> <p>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보도자료&gt;감정평가기준 전면 정비로 투명성·객관성 제고</p> | 감정평가에<br>관한 규칙<br>(’13.1.1.)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② 목적별,<br>물건별<br>구체적<br>평가방법<br>및 윤리<br>규정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미 규정</li><li>○ 목적별(담보, 경매, 도시정비 등) 및 물건별 감정평가(부동산, 권리, 동산 등) 방법과 절차 구체화, 감정평가업자의 윤리 규정 명문화</li></ul>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보도자료&gt;감정평가기준 전면 정비로 투명성·객관성 제고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감정평가<br>실무기준<br>(’13. 초)<br>*규제심사 중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③ 공공사업<br>보상평가<br>수수료<br>산정 시<br>종량제<br>방식<br>도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는 종가제(100%)</li><li>○ 공익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중 토·건·물에 한해 종량제(30%) 및 종가제(70%) 절충 도입</li></ul> <p>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보도자료&gt;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에 종량제 도입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감정평가업자의<br>보수에 관한 기준<br>(’13.1.1.)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해양부<br>부동산평가과<br>(044-201-3424)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해양부<br>부동산평가과<br>(044-201-3424)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해양부<br>부동산평가과<br>(044-201-3424)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 확인시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 열람 및 발급 신청</li> <li>○ 2012년 3월부터 4개 시범사업지역에서 서비스 (의왕시, 김해시, 남원시, 장흥군)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토지(임야)대장, 지적도(임야도), 건축물 대장, 토지이용계획확인서, 주택가격, 공시지가, 등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산 종합공부로 확인</li> <li>○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산종합증명서 형태로 발급 및 열람</li> <li>* 2013년부터는 부동산종합공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종합증명서 전국 확대 실시 서비스</li> </ul>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국토해양뉴스&gt;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서비스</p> |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('13.8월 예정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적기획과 (044-201-3480)                     |
| 3.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도입        | ○ 제도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민참여형 지적정보시스템(PPLIS)을 도입하여, 사업수행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의견제출,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양방향 공유시스템을 소관청에 구축하여 갈등 요인 해소</li> <li>* PPLIS(Public Participation Land Information System, 국민참여형 지적정보시스템)</li> </ul>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정보마당&gt;법령정보&gt;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</p>                 |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('13.9월)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해양부 지적재조사 기획단 (044-201-4651)           |
| 4. 국민주택 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 | ① 국민 주택 기금 대출 금리 인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근로자서민전세자금 : 연 4.0%</li> <li>○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: 연 4.2%</li> <li>○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: 연 5.2%</li> </ul> <p>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국토해양뉴스&gt;보도자료&gt;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민주택기금 세부운영규정 ('12.12.21)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(044-201-3338)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청약 저축 금리 인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가입기간 1년 미만 : 연 2.0%</li> <li>○ 가입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: 연 3.0%</li> <li>○ 가입기간 2년 이상 : 연 4.0%</li> </ul> <p>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국토해양뉴스&gt;보도자료&gt;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('12.12.21)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(044-201-3338)          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국민주택기금 대출<br>소득요건 조정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근로자서민전세자금<br/>: 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 이하<br/>(신혼부부 3천5백만원 이하)</li> <li>○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<br/>: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</li> <li>○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<br/>: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<br/>(신혼부부 4천만원 이하)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근로자서민전세자금<br/>: 부부합산 연소득(상여금포함) 4천만원 이하<br/>(신혼부부 4천5백만원 이하)</li> <li>○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<br/>: 부부합산 연소득(상여금포함) 5천5백만원 이하</li> <li>○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<br/>: 부부합산 연소득(상여금포함) 4천만원 이하<br/>(신혼부부 5천만원 이하)</li> </ul> <p>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보도자료&gt;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</p> | 국민주택기금<br>세부운영규정<br>(’13.1. 시행예정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해양부<br>주택기금과<br>(044-201-3338)  |
| 6. 소형저가주택의<br>청약가점제<br>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<br/>주택 기준<br/>- 전용면적 60㎡ 이하+<br/>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+<br/>10년 이상 보유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 주택 기준<br/>- 전용면적 60㎡ 이하 +<br/>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</li> </ul> <p>☞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정보마당&gt;법령<br/>정보&gt;주택공급에 관한 규칙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「주택공급에 관한<br>규칙」(2013.1월<br>시행예정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해양부<br>주택기금과<br>(044-201-3338)  |
| 7. 주택청약 부적격<br>당첨자에 대한<br>제재요건 완화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착오로 청약자격 사항을<br/>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<br/>첨자인 경우 소명여부에<br/>따라 제재조치를 차등화<br/>하여 운영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착오기재 소명이 인정 여부와 상관없<br/>이 ‘당첨취소, 청약통장 효력유지, 당첨<br/>사실 삭제, 일정기간 청약제한’ 제재</li> </ul> <p>☞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정보마당&gt;법령<br/>정보&gt;주택공급에 관한 규칙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「주택공급에 관한<br>규칙」(2013.1월<br>시행예정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해양부<br>주택기금과<br>(044-201-3338)  |
| 8. 외국인 주택단지에<br>입주할 수 있는<br>외국인 범위 확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외국인 주거안정을 위해<br/>별도의 주택단지를 조성<br/>하는 경우 외국국적<br/>보유자에 한해 우선공급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외국인 주택단지의 주택을 우선공급 받<br/>을 수 있는 범위를 거주지국의 영주권<br/>을 취득한 재외동포까지 확대</li> </ul> <p>☞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정보마당&gt;법령<br/>정보&gt;주택공급에 관한 규칙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「주택공급에 관한<br>규칙」(2013.1월<br>시행예정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해양부<br>주택기금과<br>(044-201-3338)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. 국민주택기금 관련<br>정보 통합제공으로<br>국민편의 증대 | 〈신 설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금 관련 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통합 제공</li> </ul> <p>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국토해양뉴스&gt;보도자료&gt;국민주택기금온라인포털 구축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택법 시행령<br>(’13.1월)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해양부<br>주택건설공급과<br>(044-201-3369)     |
| 10. 아파트 관리, 입주민<br>자율 크게 확대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직선제 선출</li> <li>○ 동별 대표자는 최대 2회, 4년간만 재임 가능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간선제 선출허용(관리규약에 정할 경우)</li> <li>○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(다만, 계속 재임은 2기)</li> </ul> <p>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국토해양뉴스&gt;보도자료&gt;아파트 관리,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</p>                | 주택법 시행령<br>(’13.1월)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해양부<br>주택건설공급과<br>(044-201-3369)     |
| 11. 주민공동시설 총량제<br>도입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은 시설물별 면적제한이 있어 자유로운 설치가 곤란하고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 등도 제한</li> </ul>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민공동시설 면적 총량제를 도입하여 지역 및 단지특성에 맞게 총량범위 내에서 원하는 시설물을 자유로이 설치하도록 하고 용도변경도 가능하게 함</li> </ul> <p>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국토해양뉴스&gt;보도자료&gt;국토부 22년만에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택건설기준<br>등에 관한 규정<br>(’13.7월)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해양부<br>주택건설공급과<br>(044-201-3367)     |
| 12. 디자인을 제약하는<br>기준 정비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동주택에는 확실적인 휴게시설 설치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는 등 디자인을 제약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을 정비하여 다양한 주택개발을 도모하고 공동주택 및 도시경과 개선</li> </ul> <p>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국토해양뉴스&gt;보도자료&gt;국토부 22년만에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택건설기준<br>등에 관한 규정<br>(’13.7월)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해양부<br>주택건설공급과<br>(044-201-3367)     |
| 13. 재건축부담금 한시적<br>면제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06.9.25이후(비수도권은 2009.7.1이후)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부과</li> </ul>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14.12.31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면제(단,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)</li> </ul> <p>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국토해양뉴스&gt;보도자료&gt;분양기상한제 원칙적 폐지,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</p> |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<br>(’12.12.18)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해양부<br>주택정비과<br>(044-201-3392, 3386)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4. 지도·영상이 중첩된 PDF 방식의 지도 배포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전자도면(CAD) 및 종이 형식의 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PDF 방식의 지도 배포<br><br>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등산로·자전거길 “나만의 맞춤지도” 만든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’13. 6월)<br><br>국토지리정보원<br>지리정보과<br>(031-210 -2720)                        |
| 15. 감리전문 회사의 입찰부담 완화 및 산장/준 공정성 제고 | ① 기술 제안서 평가<br>폐지,<br>기술자평가서<br>임의규정<br>전환 및<br>예시삭제            | ○ 용역비 30억원 이상 대 상공종의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<br>○ 용역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대상공종의 경우 기술자평가서 평가<br>○ 실적 및 경력 등 예시 제시 | ○ 폐지<br><br>○ 용역비 20억원 이상의 공공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자 평가서 평가<br><br>○ 예시 삭제<br><br>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,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개정            | 건설기술관리법<br>시행규칙, 고시<br>(’13.1월, 4월)<br><br>국토해양부<br>건설안전과<br>(044-201-3581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PQ평가 기준 마련 시<br>심의절차 도입 및<br>책임감리원<br>역량평가<br>비중확대<br>(2점→4점) | ○ 심의절차 별도규정 없음<br>○ 책임감리원 면접배점 (2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관계자 의견수렴, 위원회 심의 후 일반 공개<br>○ 책임감리원 면접배점(용역규모에 따라 2~4점)<br>- 20억원미만 2점, 20억원이상~30억원 미만 3점, 30억원이상 4점<br><br>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개정 | 고시<br>(’13.4월)<br><br>국토해양부<br>건설안전과<br>(044-201-3501)                 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6. 건설공사<br>감리대가<br>기준<br>정립         | ① 법정<br>공휴일에<br>해당하는<br>기간은<br>대가감액<br>대상에서<br>제외             | ○ 별도 규정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법정공휴일은 대가감액 하지 못하도록<br>명문화<br><br>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<br>보>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일부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건설공사<br>감리대가<br>기준고시<br>(’13.1월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저가낙찰<br>현장<br>감리원<br>추가배치<br>의무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발주청에서 부실우려가<br>있는 경우 감리원 추가<br>배치 | ○ 70%미만 저가낙찰 현장에 대해서는 감<br>리원 추가배치 의무화<br>- 낙찰율에 따라 총감리원 수의 20~50%<br><br>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<br>보>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일부개정                   | 국토해양부<br>건설안전과<br>(044-201-3581) |
| 17. 건설공사<br>안전관리<br>세부사용<br>기준<br>마련 | ① 안전<br>관리계획<br>의 작성<br>및<br>검토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별도 규정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작성 및 검토비용 사용과 대가 산정 기<br>준을 제시<br><br>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<br>보>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건설공사 안전<br>관리 지침 고시<br>(’13.1월)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발파.<br>굴착등의<br>건설공사<br>로 인한<br>주변건축<br>물 등의<br>피해방지<br>대책비용 | ○ 별도 규정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발파.굴착으로 인한 주변시설물의 사전<br>보강.보수.임시이전 등의 비용을 토목.<br>건축등의 관련 분야 설계기준으로 산<br>출 및 집행 가능<br><br>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<br>보>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 | 국토해양부<br>건설안전과<br>(044-201-3577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공사장<br>주변의<br>통행안전<br>관리대책<br>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별도 규정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공사로 인한 주변 도로의 우회해 따른<br>교통 안전시설물 등 비용 규정 마련<br><br>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<br>보>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8. 예정지역에<br>외국교육기관 설립<br>허용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〈신 설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외국학교법인이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</li> </ul>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국토해양뉴스&gt;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| 행정도시건설특별법<br>(‘13년)<br><br>기업복합<br>도시과<br>(044-201-3689)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9. 기업도시 개발이익<br>감소시 채투자 비용<br>사후조정 기준 개선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시 산정한 개발이익과 비교하여 준공시 개발이익이 20퍼센트 이상 차이나는 경우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시 산정한 개발이익과 비교하여 준공시 개발이익이 2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5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경우</li> </ul>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보도자료&gt;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 대책 시행</p> | 기업도시개발<br>특별법 시행령<br>(‘13.1.1.)<br><br>국토해양부<br>기업복합도시과<br>(044-201-3691)          |
| 20. 기업도시 개발<br>채투자율 하향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업도시 개발이익 채투자율은 최소 25퍼센트 이상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업도시 개발이익 채투자율을 12.5퍼센트P 하향조정</li> </ul>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보도자료&gt;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 대책 시행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업도시개발<br>특별법 시행령<br>(‘13.1.1.)<br><br>국토해양부<br>기업복합도시과<br>(044-201-3691)          |
| 21. 새만금개발청 설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〈신 설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새만금사업을 전담할 새만금개발청 신설</li> </ul>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정보마당&gt;법령정보&gt;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새만금사업 지원<br>및 추진에 관한<br>특별법<br>(‘13.9.11)<br><br>국토해양부<br>새만금개발팀<br>(044-201-3691) |
| 22. 도시<br>공원을<br>안전하고<br>쾌적한<br>휴식공간<br>으로<br>조성 | ① 공원<br>조성계획에<br>범죄예방<br>계획<br>수립 | 〈신 설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원조성계획에 토지이용, 동선, 공원시설배치와 더불어 범죄예방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도시공원법<br>시행규칙<br>(‘13.1월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범죄예방<br>일반기준<br>제시              | 〈신 설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도시공원의 조성관리에 범죄예방 자연적 감시, 접근통제, 영역성 강화 등 범죄예방 일반원칙 제시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해양부<br>녹색도시과<br>(044-201-375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|
| 23. 민간공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다양화    | ○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: 토지면적 2/3 소유, 토지 소유자 1/2 동의       | ○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: ① 토지면적 2/3 소유, 토지소유자 1/2 동의, ② 공원조성비 4/5 예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('13.7월)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(044-201-3751)  |
| 24. 반쯤차량 판매시 반쯤차량 고지의무 신설  | ○ 고지의무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고지의무 신설<br><br>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 > 정보마당 > 법령정보 > 자동차관리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동차관리법 ('12.12.18.)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(044-201-3843) |
| 25. 차량 판매·정비·폐차 내역 통지의무 신설 | ○ 전산정보처리조직 통지의무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전산정보처리조직 통지의무 신설<br><br>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 > 정보마당 > 법령정보 > 자동차관리법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동차관리법 ('13.9.)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(044-201-3844) |
| 26.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     | <없 음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2013년부터 신규 제작되는 승용차 및 3.5톤 이하 승합, 화물, 특수자동차에 의무 장착<br><br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        |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('13.1월)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(044-201-3851) |
| 27. 최고속도제한장치 적용대상 확대       | ○ 총중량 4.5톤 이상 승합 자동차<br>○ 총중량 3.5톤 이상 화물, 특수자동차 | ○ 총중량 4.5톤 이상 승합자동차 → 모든 승합자동차로 확대<br>○ 총중량 3.5톤 이상 화물, 특수자동차<br><br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|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('13.8월)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(044-201-3851)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8. 보행자보호를 위한<br>상해기준 강화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<없 음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013년부터 제작되는 승용차는 보행자 상해기준을 의무적용</li> </ul>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정보마당&gt;법령 정보&gt;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동차안전기준에<br>관한 규칙<br>(’13.1월)<br><br>국토해양부<br>자동차운영과<br>(044-201-3851)         |
| 29. 철도운전면허시험<br>응시수수료 감면제도<br>도입   |                   | ○ 전액 본인 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응시수수료 감면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대해 응시수수료 50% 감면</li> </ul> </li> </ul>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보도자료&gt;철도 차량 운전면허 시험시행지침</p> | 철도차량<br>운전면허시험<br>시행 지침<br>(’13.1.1)<br><br>국토해양부<br>철도기술안전과<br>(044-201-4602) |
| 30. 항만재개발<br>사업시행자 에게<br>국유지 임대    |                   | ○ 국유지 매입 또는 5년이<br>내 단기 사용 허가<br>- 영구시설물 설치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0년(1회 연장)까지 국유지 임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임대 받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</li> </ul> </li> </ul>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정보마당&gt;법령정보&gt;항만법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항만법<br>(’13.6월)<br><br>국토해양부<br>항만지역발전과<br>(044-201-4177)                      |
| 31. 항만<br>공사<br>실시계획<br>승인절차<br>개선 | ① 인허가<br>의제시점     | ○ 항만공사 시행 또는 허<br>가사실을 고시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항만공사 실시계획 수립 공고한 경우</li> </ul>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정보마당&gt;법령 정보&gt;항만법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항만법<br>(’13.6월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관계기관<br>협의      | ○ 항만공사 시행 또는 항<br>만재개발 사업 실시계획<br>승인시 관계법령에 따른<br>인허가 사항 등의 의제<br>처리를 위한 관계기관<br>협의<br>- 20일 이내 의견 제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관계행정기관이 협의요청에 대하여 20<br/>일 이내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 협의<br/>된 것으로 간주</li> </ul>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정보마당&gt;법령 정보&gt;항만법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일괄<br>협의회<br>제도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허가 등의 의제를 위해 관계행정기<br/>관 일괄협의회 제도 신설</li> </ul>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정보마당&gt;법령 정보&gt;항만법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해양부<br>항만정책과<br>(044-201-4145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2. 국제<br>물류주선<br>업의<br>등록기준<br>신고제도<br>시행 | ① 변경등록<br>신고의무를<br>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천만원 이하 벌금</li> <li>○ 200만원 이하 과태료</li> </ul>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정보마당&gt;법령<br/>정보&gt;물류정책기본법</p> | 물류정책기본법<br>(’12.12월)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변경등록<br>신고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30일</li> <li>○ 60일</li> </ul>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정보마당&gt;법령<br/>정보&gt;물류정책기본법</p>                 | 국토해양부<br>물류정책과<br>(044-201-4003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양도,<br>양수,<br>상속,<br>법인<br>합병,<br>휴업<br>신고기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5일</li> <li>○ 30일</li> </ul>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정보마당&gt;법령<br/>정보&gt;물류정책기본법</p>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휴업제한<br>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6개월</li> <li>○ 1년</li> </ul>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정보마당&gt;법령<br/>정보&gt;물류정책기본법</p>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⑤ 폐업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5일 이내에 신고</li> <li>○ 폐지</li> </ul>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정보마당&gt;법령<br/>정보&gt;물류정책기본법</p>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3. 물류단지 개발절차<br>명확화 및 규제완화 등<br>제도개선  | -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복합물류터미널 폐업 또는 법인 해산시 직권말소제도 도입</li> <li>○ 물류터미널공사 시행인가 및 물류단지 계획승인 처리기간 명시 및 자동 인허가제도 도입</li> <li>○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준용규정을 물류시설법에서 직접 규정</li> <li>○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자에서 수분양자 제외 및 부과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신설 등</li> </ul>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정보마당&gt;법령 정보&gt;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</p> | 물류시설의 개발<br>및 운영에 관한<br>법률<br>(’13.6월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해양부<br>물류시설정보과<br>(044-201-4007)     |
| 34. 복합물류터미널사업<br>등록제도 원칙적<br>허용방식으로 전환 | -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민 중심의 예측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를 원칙허용(네거티브) 방식으로 전환</li> </ul>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정보마당&gt;법령 정보&gt;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물류시설의 개발<br>및 운영에 관한<br>법률<br>(’13.7월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해양부<br>물류시설정보과<br>(044-201-4007)     |
| 35.과징금·벌칙 병과<br>제도개선                   | -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자의 부담 경감 및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과징금·벌금 병과 규정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사항 임의변경 및 공사 임의시행에 대해 벌칙(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)을 삭제</li> </ul>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정보마당&gt;법령 정보&gt;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물류시설의 개발<br>및 운영에 관한<br>법률<br>(’13.7월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해양부<br>물류시설정보과<br>(044-201-4007)     |
| 36.물류창고업등록관리<br>대국민 민원 서비스<br>실시       | -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에 등록</li> <li>○ 2012년 창고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 연계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( ’13.1)</li> </ul>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정보마당&gt;법령 정보&gt;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물류시설의 개발<br>및 운영에 관한<br>법률(’13.1월)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해양부<br>물류시설정보과<br>(044-201-4011)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7. 직접운송의무비율제,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실제고제 | <없 음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직접운송의무비율제,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</li> </ul> <p>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정보마당&gt;법령 정보&gt;화물자동차 운수사업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('13.1월)<br><br>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(044-201-4018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8.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일부 변경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사무소는 20제곱미터 이상, 영업소는 10제곱미터 이상일 것. 다만,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65제곱미터 이상 (영업소의 경우에는 영업소마다 39제곱미터 이상)의 민영 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.</li> <li>피해보상을 위한 500만 원 이상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것(이사회물을 주선하는 운송주선사업자만 해당한다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영업에 필요한 면적. 다만,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민영 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.</li> </ul> <p>※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필요</p> <p>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정보마당&gt;법령 정보&gt;화물자동차 운수사업</p> |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('13.1.1.)<br><br><br><br><br><br><br><br><br>국토부 물류산업과 (044-201-4022)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9. 헬기장 활주로 길이폭                   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A급</th><th>B급</th><th>C급</th><th>D급<br/>(또는<br/>육상헬기장)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90M<br/>이상</td><td>90M<br/>미만<br/>40M<br/>이상</td><td>40M<br/>미만<br/>15M<br/>이상</td><td>항공기 기<br/>체 길이<br/>의 1.2배<br/>로서 최<br/>소 15M<br/>이상</td></tr> <tr> <td>30M<br/>이상</td><td>20M<br/>이상</td><td>15M<br/>이상</td><td>항공기 기<br/>체폭의 1.2<br/>배</td></tr> </tbody> </table> | A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B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C급 | D급<br>(또는<br>육상헬기장) | 90M<br>이상 | 90M<br>미만<br>40M<br>이상 | 40M<br>미만<br>15M<br>이상 | 항공기 기<br>체 길이<br>의 1.2배<br>로서 최<br>소 15M<br>이상 | 30M<br>이상 | 20M<br>이상 | 15M<br>이상 | 항공기 기<br>체폭의 1.2<br>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항공기 크기의 1.2배 이상으로서 최소 15m 이상</li> </ul>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정보마당&gt;법령정보&gt;항공법</p> | 항공법 시행규칙 ('13.1월)<br><br><br><br><br><br><br>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(044-201-4349) |
| A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B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C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D급<br>(또는<br>육상헬기장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0M<br>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| 90M<br>미만<br>40M<br>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M<br>미만<br>15M<br>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항공기 기<br>체 길이<br>의 1.2배<br>로서 최<br>소 15M<br>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0M<br>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M<br>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M<br>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항공기 기<br>체폭의 1.2<br>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0. 육상헬기장 갯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활주로·유도로의 양측과 계류장의 가장자리에 갯길(Shoulder)을 설치할 의무화 | ○ 갯길 설치를 폐지<br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항공법 시행규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항공법 시행규칙 ('13.1월)<br>국토해양부<br>공항안전과<br>(044-201-4349)            |
| 41. 지진 분야 비상대처 계획 공항시설 물 지정 및 비상대처 계획 수립 | ① 지진분야 비상대처 계획 수립대상 공항시설 지정 | ○ 미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지진으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전국 15개 공항여객터미널 지정<br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자연재해대책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('13.1월)<br>국토해양부<br>공항안전과<br>(044-201-4350)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지진분야 공항시설 비상대처 계획 수립      | ○ 미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지진으로 전국 15개 공항 여객터미널의 피해경감을 위하여 지진위험 평가, 긴급대피, 비상운영계획, 긴급복구 등 비상대처계획 수립<br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자연재해대책법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2. 공항운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 공항운영자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「인천국제공항공사법」, 「한국공항공사법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·이전받은 자<br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항공법 시행규칙 | 항공법 시행규칙 ('13.2월)<br>국토해양부<br>공항안전과<br>(044-201-4355)            |
| 43.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박람회장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(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간은 100%, 이후 2년간은 50% 감면)<br>○ 여수박람회장을 해양박람회특구로 지정<br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여수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   |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 전면개정 ('13.3월)<br>국토해양부<br>해양정책과<br>(044-201-4377)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4. 시화호<br>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질('10년 기준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화학적산소요구량 : 3.8mg/L</li> <li>총인 : 0.074mg/L</li> </ul> </li> <li>오염물질 배출량('10년 기준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화학적 산소요구량 : 7,761.7kg/일</li> <li>총인 : 203.11kg/일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질 : 화학적 산소요구량(3.3mg/L), 총인(0.065mg/L)</li> <li>오염물질 배출량('17년 기준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화학적 산소요구량 : 7,241.3kg/일</li> <li>총인(193.00kg/일)</li> </ul> </li> </ul>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&gt;보도자료&gt;시화호 총량관리 시행</p> | 시화호 총량관리<br>시행계획 승인<br>( '13.7월)<br><br>국토해양부<br>해양환경정책과<br>(044-201-4422) |
| 45.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가능한 폐기물 축소<br>(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) | <p>&lt;분 노&gt; 제1호 가목</p> <p>&lt;분노오니&gt; 제1호 다목1</p> <p>&lt;음식물류 폐기물 폐수&gt; 제1호 라목</p> <p>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폐수 중 다음의 것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계적 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연료화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</li> <li>생물학적 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료화·퇴비화시설 및 호기성(好氣性)·혐기성(嫌氣性) 분해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 (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4 제2호의 배출시설란 제10호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료로 사료제조시설에서 발생된 것을 포함한다)</li> </ul> |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양환경관리법<br>시행규칙 별표6<br>( '13.1월)<br><br>국토해양부<br>해양보전과<br>(044-201-4427)   |



| 여성가족부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        | 〈신 설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서·행동장애 청소년들에게 상담, 보호, 치료, 자립, 교육 등 종합적·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“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” 운영(’12.12.17일 개소)</li> </ul> <p>☞ (참고)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홈페이지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청소년복지지원법(’12.8월)<br>(’12.12.17. 적용)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여성가족부<br>청소년정책과<br>(02-2075-8613, 8617) |
| 2. 청소년지도사·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의무화 | 〈신 설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청소년지도사·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의무화</li> <li>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</li> </ul> <p>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&gt; ‘청소년기본법’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청소년기본법(’13.1.1.)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여성가족부<br>청소년정책과<br>(02-2075-8614)       |
| 3. 저소득한부모이동양육비 지원         | ○ 월 5만원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월 7만원으로 인상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부모가족지원법(’13.1.1.)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여성가족부<br>가족지원과<br>(02-2075-8713)        |
| 4.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무기관 확대  | ○ 유치원, 어린이집, 각급 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 추가</li> </ul> <p>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&gt; 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(’13.6.19)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여성가족부<br>권익지원과<br>(02-2075-8766)        |
| 5. 성폭력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 혹은 보호자에게 의료비 지원</li> <li>장애인과 비장애인 보호 시설 입소기간 동일</li> <li>〈신 설〉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피해자의 직계존비속, 형제 및 자매, 배우자 및 보호자까지 확대 : (’12.10.25.)</li> </ul> <p>☞ (참고) 여성가족부 홈페이지&gt;뉴스&gt;소식&gt;보도해당&gt;보도자료&gt; ‘성폭력피해자 가족 의료비 지원 확대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인은 ‘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’까지 입소기간 연장 기능 : ’13.6월 시행</li> <li>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 의무화 : ’13. 6월 시행</li> </ul> <p>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&gt; 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</p> |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(기시행/’13.6.19)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여성가족부<br>권익지원과<br>(02-2075-8768)   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아동·청소년대상<br>성범죄 처벌관리 강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반의사불벌죄(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,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)</li> <li>성범죄 형량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강간 : 5년 이상</li> <li>유사강간 : 3년 이상</li> <li>강제추행 : 1년 이상, 5백만~2천만 벌금</li> <li>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입수출 : 5년 이상</li> <li>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: 2천만원 이하 벌금</li> <li>아동·청소년의성우시행위 : 5년 이하, 3천만원 이하 벌금</li> </ul> </li> <li>공소시효 배제대상 : 13세 미만의 여자, 장애가 있는 여자</li> <li>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배제 범죄 :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제3조~제11조까지의 죄</li> <li>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및 소지죄 요건</li> <li>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: 유치원, 어린이집, 학교, 청소년활동시설, 청소년복지시설 등</li> <li>성범죄자 신상등록·공개·고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: 여성가족부</li> <li>성인대상 성범죄: 법무부</li> </ul> </li> <li>신상정보 우편고지 대상 : 지역주민과 교육시설의 장</li> <li>신상정보 주소공개 범위: 읍·면·동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반의사불벌죄 전면폐지</li> <li>성범죄 형량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강간 : 무기 또는 5년 이상</li> <li>유사강간 : 5년 이상</li> <li>강제추행 : 2년 이상, 1천만~3천만 벌금</li> <li>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입수출 : 무기 또는 5년 이상</li> <li>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: 1년 이하, 2천만원 이하 벌금</li> <li>아동·청소년의성우시행위 : 1년~10년, 2천~5천만원 벌금</li> </ul> </li> <li>공소시효 배제대상 : 13세 미만의 사람, 장애가 있는 사람</li> <li>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배제 범죄 : 아동·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</li> <li>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및 소지죄 요건 변경</li> <li>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: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현행)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·체육시설 → (변경)아동·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·체육시설</li> <li>경비업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(일반 PC방), 청소년활동기획업소,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추가</li> </ul> </li> <li>성범죄자 신상등록·공개·고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상정보 등록 : 법무부</li> <li>신상정보 공개·고지 : 여성가족부</li> </ul> </li> <li>신상정보 우편고지 대상 : 읍면동사무소장, 지역아동센터장, 청소년수련시설장, 학교교과교육학원의 장으로 확대, 경계를 같이 하는 읍·면·동사무소 게시판 게시</li> <li>신상정보 주소공개 범위 :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</li> </ul> | 아동·청소년의<br>성보호에 관한<br>법률<br>(’13.6.19)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여성가족부<br>아동·청소년<br>성보호과<br>(02-2075-8783) |

☞ (참고)여성가족부 홈페이지>뉴스·소식>보도자료>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 국회 통과

| 고용노동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고용창출지원 사업 중<br>유망창업기업<br>고용지원대상 업종 확대 | ○ 2개 업종 (신재생에너지<br>산업, 콘텐츠소프트웨어<br>산업)에 한정하여 유망창<br>업기업 고용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17개업 업종(①신·재생에너지, ②탄소<br>저감 에너지, ③고도 물처리, ④LED 응<br>용, ⑤그린수송시스템, ⑥첨단 그린도시<br>⑦방송통신융합산업, ⑧IT융합시스템,<br>⑨로봇 응용, ⑩신소재나노 융합, ⑪바<br>이오제약(자원)의료기기, ⑫고부가 식<br>품산업, ⑬콘텐츠소프트웨어 ⑭글로벌<br>헬스케어 ⑮글로벌 교육서비스 ⑯녹색<br>금융 ⑰MICE-융합관광)으로 확대<br>○ 국내복귀(U턴) 기업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| 고용창출지원사업<br>시행지침<br>(’13.1월)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용노동부<br>노동시장정책과<br>(02-6902-8474)       |
| 2. 고용촉진지원금<br>지원요건 완화                    | ○ 6개월 단위로 2회 지원<br>○ 고용촉진지원대상이 된<br>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<br>직하는 경우 이를 고용<br>한 사업주는 고용촉진지<br>원금 지원대상 제외 | ○ 3개월 단위로 4회 지원<br>○ 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촉진지원금 대<br>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용창출지원사업<br>시행지침<br>(’13.1월)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용노동부<br>노동시장정책과<br>(02-6902-8474)       |
| 3. (예비)사회적기업<br>일자리 창출사업<br>지원비율 변경      | ○ 사회적기업 1년차 90%,<br>2년차 80%, 3년차 7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사회적기업 1년차 90%, 2년차 70%, 3년<br>차 5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예비)사회적기업<br>재정지원사업<br>시행지침<br>(’13. 1월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용노동부<br>사회적기업과<br>(02-2110-7172)        |
| 4. 중소기업 청년인턴제<br>사업규모 확대                 | ○ 중소기업 청년인턴 4만<br>명 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5만명으로 확대(잠정, 예산 심의중)<br><br>☞ (참고) <a href="http://www.work.go.kr/intern/">www.work.go.kr/intern/</a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3년 중소기업<br>청년인턴제<br>시행지침<br>(’13.1월)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용노동부<br>청년고용기획과<br>(02-2110-7178)  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장애인 표준사업장의<br>중증장애인 요건<br>차등적용 | ○ 상시근로자수의 15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15%</li> <li>○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10% + 5명</li> <li>○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5% + 20명</li> </ul> <p>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&gt;알림마당&gt;고용노동뉴스&gt;보도자료&gt;고용노동부,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높이기 위해 고배전다</p> | 장애인고용촉진<br>및 직업재활법,<br>(‘12.12월)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용노동부<br>장애인고용과<br>(02-2110-7306)                     |
| 6. 장애인 부담기초액<br>인상                | ○ '12년 : 월 590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13년 기준: 월 626,000</li> </ul> <p>☞ (참고) 전자관보(<a href="http://gwanbo.korea.go.kr">http://gwanbo.korea.go.kr</a>)&gt;관보구분별 보기&gt;고시(12.14예정)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인고용촉진<br>및 직업재활법,<br>장애인 고용<br>부담기초액 고시<br>(‘13.1월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용노동부<br>장애인고용과<br>(02-2110-7313)                     |
| 7. 장애인 부담기초액<br>산정기준 세분화          | ○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1/2이상 인원은 부담기초액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의무고용인원의 3/4이상 인원은 부담기초액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인고용촉진<br>및 직업재활법,<br>장애인 고용부담<br>기초액 고시<br>(‘13.1월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1/2 이상이면서 3/4미만 인원은 부담기초액+부담기초액의 1/4 가산</li> </ul> <p>☞ (참고) 전자관보(<a href="http://gwanbo.korea.go.kr">http://gwanbo.korea.go.kr</a>)&gt;관보구분별 보기&gt;고시(12.14예정)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. 장애인 고용부담금<br>최저임금액 부과 대상<br>확대 | ○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부과(상시 200명이상 고용 사업주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부과(상시 100명이상 고용 사업주)</li> </ul> <p>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&gt;알림마당&gt;고용노동뉴스&gt;보도자료&gt;고용노동부,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부담금 부과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용노동부<br>장애인고용과<br>(02-2110-7313)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용노동부<br>장애인고용과<br>(02-2110-7313)                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.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실시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장애대학생에게 기업 등에서 1~2개월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‘13.1월)<br>고용노동부<br>장애인고용과<br>(02-2110-7307)                 |
| 10.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특수학교(급)학생들에게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일반사업체에서 현장훈련 실습을 받도록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‘13.1월)<br>고용노동부<br>장애인고용과<br>(02-2110-7310)                 |
| 11. 워크투게더센터 운영 전국 확대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‘워크투게더 센터’를 통해 학교교육, 복지, 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특수학교(급), 전공과, 일반학급 장애학생등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<br>* 서비스내용: 직업설계컨설팅, 직업훈련체험, 직업훈련기관 연계, 구직역량강화, 현장 체험, 학부모설명회, 장애인식개선 등<br><br>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e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고용노동부, 장애학생, 진로설계에서 취업까지 원스톱서비스 받는다 | (‘13.1월)<br>고용노동부<br>장애인고용과<br>(02-2110-7307)                 |
| 12.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     | ○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 전 피크임금 시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50% 미만으로 감소<br>○ 해당 연도 임금이 피크 임금 대비 50% 이상 감액 | ○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감소<br>○ 해당 연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30% 이상 감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용보험법시행령<br>(‘13.1월)<br>고용노동부<br>고령사회인력정책팀<br>(02-2110-7305)  |
| 13. 최저임금액 인상                      | ○ 시간급 4,58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시간급 4,860원<br><br>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e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내년도 최저임금액 시간급 4,860원으로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저임금법<br>(‘13.1.1)<br>고용노동부<br>근로개선정책과<br>(02-2110-7399)      |
| 14.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 상향 | ○ 법정 퇴직급여의 100분의 50 이상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법정 퇴직급여의 100분의 100 이상 적용<br><br>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팜플렛>브로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<br>(‘13.1.1.)<br>고용노동부<br>근로복지과<br>(02-2110-7420)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5. 사업장 위험성평가<br>본격 시행     | ○ '10~'12년 일부지역에 시<br>범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모든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제도를<br/>본격 시행</li> <li>위험성평가의 원활히 시행을 위한 지원<br/>강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주(모든 사업장) 및 평가담당자교<br/>육(100인 미만 사업장) 및 컨설팅(30<br/>명 미만 사업장)</li> <li>위험성평가 사례집, 모델, 가상체험프<br/>로그램 등 관련정보·자료 제공</li> <li>우수사업장으로 인정(소규모 사업장 대<br/>상)된 경우 안전보건 감독 유예, 산재<br/>보험료 할인(관련 법 국회 심의 중) 등<br/>인센티브 부여</li> </ul> </li> </ul> <p>☞ (참고) 「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(<a href="http://kras.kosha.or.kr">http://kras.kosha.or.kr</a>)」 ( '13.1.1. 오픈 예정)</p> | 산업안전보건법<br>관련고시<br>( '13.1.1.)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용노동부<br>산재예방정책과<br>(02-6922-0913,0914) |
| 16. 안전인증 대상 확대             | ○ 프레스, 전단기, 크레인,<br>리프트, 압력용기, 롤러<br>기, 사출성형기, 고소작<br>업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프레스, 전단기 및 절곡기, 크레인, 리<br/>프트, 압력용기, 롤러기, 사출성형기,<br/>고소작업대, 곤돌라, 기계톱(이동식)</li> </ul> <p>☞ (참고) 고용노동부홈페이지&gt;알림마당&gt;e-고용<br/>노동뉴스&gt;보도자료&gt;재해예방 위해 산업 기<br/>계·설비 안전인증 대상 늘린다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산업안전보건법<br>시행령 제28조<br>( '13.3월)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용노동부<br>제조산재예방과<br>(02-6922-0935)      |
| 17. 자율안전확인신고<br>대상확대       | ○ 원심기, 공기압축기, 곤<br>돌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삭기 또는 연마기, 산업용 로봇, 혼합<br/>기, 파쇄기 또는 분쇄기, 식품가공용기<br/>계, 컨베이어, 자동차정비용 리프트, 공<br/>작기계,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, 인쇄<br/>기, 기압조절실</li> </ul> <p>☞ (참고) 고용노동부홈페이지&gt;알림마당&gt;e-고용<br/>노동뉴스&gt;보도자료&gt;재해예방 위해 산업 기<br/>계·설비 안전인증 대상 늘린다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산업안전보건법<br>시행령<br>제28조의5<br>( '13.3월)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용노동부<br>제조산재예방과<br>(02-6922-0935)      |
| 18. 건설업 시스템비계<br>재정지원사업 도입 | ○ 2013년 신규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<br/>을 위해 시스템 비계 임차비용을 매칭<br/>펀드 방식으로 지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원대상 : 10억원 미만 건축공사</li> <li>지원액 : 업체당 1천만원 이내</li> </ul> </li> <li>시행일 : 2013년 1월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산업안전보건법<br>관련 고시<br>( '13.1월)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용노동부<br>건설산재예방과<br>(02-6922-0951) 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9. 석면해체·제거업자<br>안전성평가 실시            | ○ 2013년 신규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석면해체·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<br>하기 위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안전<br>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<br><br>☞ (참고)고용노동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<br>보>훈령·예규·고시>석면조사및안전성평가등<br>에 관한고시(고시 제2012-9호)          | 산업안전보건법<br>시행규칙, 고시<br>(‘13.1월)<br><br>고용노동부<br>건설산업예방과<br>(02-6922-0953)   |
| 20. 산재보험 유족연금<br>수급자격 확대             | ○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<br>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,<br>형제자매의 연령을 18세<br>미만 제한<br>○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<br>이 해당 근로자의 처의<br>경우 연령과 무관하나,<br>남편의 경우 60세 이상<br>인 자에게 지급 | ○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<br>에 대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, 형제자매<br>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<br>○ 유족연금 수급자격의 남자배우자 연령<br>제한을 삭제<br><br>☞ (참고)고용노동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<br>보>최근 제개정 법률    | 산업재해보상<br>보험법<br>(‘12.12.18)<br><br>고용노동부<br>산재보상정책과<br>(02-2110-7219)      |
| 21. 근로자가 아닌<br>예술인에 대한<br>산재보험 적용 확대 | ○ 산재보험 가입 안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예술인으로<br>서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계약에 따라 예<br>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산재보<br>험 가입 확대<br><br>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e-고<br>용노동뉴스>보도자료>예술인도 산재보험 가<br>입할 수 있다 | 산업재해보상<br>보험법 시행령<br>(‘12.11.18)<br><br>고용노동부산재<br>보상정책과<br>(02-2110-7223)  |
| <b>방송통신위원회</b>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지상파 디지털 TV방송<br>전면실시              | ○ 지상파 TV방송은 아날로<br>그방송과 디지털방송 병<br>행 송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완전 종료,<br>지상파 디지털TV방송 전면 시행<br>※ 아날로그방송종료 : ‘12.12.31.<br><br>☞ (참고)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<br>공지사항> “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 정부지<br>원 안내”                | 디지털전환<br>특별법, 시행령<br>(‘13.1.1.)<br><br>방송통신위원회<br>디지털방송정책과<br>(02-750-2337)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통신중계서비스 번호<br>통합 및 명칭 변경 | ○ 다수의 접속번호 사용<br>(1599-0042 등) | ○ 단일번호 107번으로 통합<br>○ 통신중계서비스를 『107 손말아름』으<br>로 명칭 변경<br><br>☞ (참고)통신중계서비스 홈페이지<br>( <a href="http://www.relaycall.or.kr">http://www.relaycall.or.kr</a> ) | 장애인 차별금지<br>및 권리구제<br>등에 관한 법률<br>(’13.1월)<br><br>방송통신위원회<br>와이브로활성화팀<br>(02-750-2542) |
| 3. 700MHz 대역<br>무선마이크 사용 종료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특정 소출력(음성 및 음향 신호전송용)<br>으로 사용되는 740~752MHz의 주파수<br>대역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<br>허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파법 고시<br>(’13.1월)<br><br>방송통신위원회<br>주파수정책과<br>(02-750-2271)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전자파<br>인체보호<br>기준 강화     | ① 전자파<br>인체보호<br>기준            | ○ 인체의 적용부위 : 머리<br><br>○ 인체의 적용부위:<br>머리/몸통/전신/사지로 기준 세분화<br><br>☞ (참고)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>정책/정보센<br>타>법령정보>고시> “전자파인체보호기준 고<br>시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자파법<br>제47조의2<br>(’13.1월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전자파<br>흡수율<br>측정대상<br>기자재    | ○ 대상기자재 : 휴대전화<br><br>○ 대상기자재:<br>인체 근접(20 cm 이내) 사용 무선기기로<br>확대<br><br>☞ (참고)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>정책/정보센<br>타>법령정보>고시> “전자파강도 및 전자파<br>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”           | 방송통신위원회<br>전파기반팀<br>(02-750-2244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전자파흡<br>수율<br>측정기준           | ○ 측정대상: 머리<br><br>○ 측정대상: 머리 → 머리, 몸통<br><br>☞ (참고)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>자료실>법<br>령자료실>무선기가> “전자파흡수율 측정기<br>준 고시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

| 구 분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화 | ○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수검 | ○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의무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<br><br>☞ (참고)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내년부터 달라지는 기업 정보보호 제도 설명회 개최, 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|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'13.2월)<br><br>방송통신 위원회 네트워크 정보보호팀 (02-750-2753) |

### 국가보훈처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<br><br>※ 최종금액 및 인상을 등 변동될 수 있음 |  | ○ 보상금 : 2012년 대비 4% 인상<br>○ 중상이부가수당 : 2012년 대비 5~15%인상<br>○ 참전무공영예수당 : 2012년 대비 각 2만원 인상<br><br>☞ (참고) 국가보훈처 홈페이지>보훈지원>보훈급여금>2013년 보훈급여금 지급액 |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('13.1.1.)<br><br>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(02-2020-5179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### 금융위원회
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실손 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 | ① 실손 의료보험 상품형태     | ○ 다른 보장과 함께 특약 형태로 판매 중 (통합상품 형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 병행 판매 : 소비자가 단독 또는 통합상품 선택 가능<br><br>☞ (참고) 금융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위원회소식>보도자료>실손의료보험 중합개선평대책 금융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위원회소식>보도자료>보험업감독규정 개정 | 보험업감독규정 ('13.1월)<br><br>금융위원회 보험과 (02-2156-9831)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실손 의료보험 자기부담금 종류 | ○ 자기부담금 10%인 상품만 판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자기부담금 10% 또는 20%인 상품 동시 판매<br><br>☞ (참고) 상 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실손 의료보험 보험료 변경   | ○ 대부분 3년마다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적정성을 검증하여 매년 변경<br><br>☞ (참고) 상 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실손 의료보험 보장내용 변경  | ○ 특정연령(예:100세)까지 동일 보장*<br><br>* 보험료 인상폭이 커서 고연령에서 계약을 유지하기 사실상 불가능 | ○ 보장내용 변경주기(보험기간)를 15년 이내로 설정하고, 재가입 안내<br><br>☞ (참고) 상 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신용카드<br>발급 기준<br>강화 및<br>이용한도<br>합리화  | ① 신용카드<br>발급기준<br>강화          | ○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만 18세 이상인 자는 신용카드 발급가능                   | ○ 일정한 신용도(개인신용 1-6등급)가 있는 민법상 성년자에 한하여 신용카드 발급<br><br>☞ (참고)금융위원회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 등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여신전문금융업법<br>시행령<br>(’12.10.15)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신용카드<br>이용한도<br>책정기준<br>합리화 | ○ 카드회원 및 발급 신청자의 결제능력 평가기준에 월 평균 결제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포함  | ○ 가처분 소득·월 소득·월 채무상환금에 따른 월 평균 결제능력을 평가기준에 포함<br><br>☞ (참고)상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융위원회<br>중소금융과<br>(02-2156-9856)          |
| 3. 「대부중개수수료<br>상한제」 시행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제한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대부중개수수료를 5%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로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<br>(’13.6.12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융위원회<br>서민금융과<br>(02-2156-9475)          |
| 4.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<br>및 유통에 관한 법률<br>시행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기업어음증권(CP) 실물 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기업어음증권(CP)의 문제점*을 해결하기 위한 전자단기사채제도 도입·시행<br>* 실물발행 위험, 유통의 불편함, 투자자 보호 미흡<br>※ 현행 기업어음증권(CP)제도는 병행 유지<br><br>☞ (참고)금융위원회 홈페이지>보도자료>전자단기사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|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<br>(’13.1.15)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융위원회<br>자본시장과<br>(02-2156-9874)          |
| 관세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보세사 자격증<br>취득요건 중 기본교육<br>사전 이수제도를 폐지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3년 이상 보세화물 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서 기본교육을 이수해야만 시험 응시 가능 | ○ 3년 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있으면 기본교육 이수 없이 보세사 시험 응시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<br>(’13년)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세청<br>수출입물류과<br>(042-481-7906)           |

| 병무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중앙신체검사소<br>대구혁신도시 이전            | ○ 수도권지역 위치<br>(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<br>방로 43길 13)               | ○ 대구혁신도시(대구 동구 동내동 384)<br>- 이전 : 2012.12.21.<br>- 대중교통 노선 개설시까지 자체 승합차<br>운행<br>- 음식점 등 모범업소 파악, 통지서<br>교부 시 사전 안내    | 공공기관<br>지방이전 계획<br>(‘12.12.21.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병무청<br>징병검사와<br>(042-481-2918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장애인 등록자<br>병역감면 후속처리 강화         | ○ 장애인 등록자는 병역감<br>면 시점의 등록 사실 등<br>을 확인하여 병역처분          | ○ 장애인 등록자가 병역을 면제받은 후<br>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장<br>애등급 조정을 위한 장애진단 등 필요<br>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병<br>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 실시 | 병역법 시행령<br>(‘12.12.2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병무청<br>징병검사와<br>(042-481-2946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해양경찰 선발업무<br>해양경찰청 이관           | ○ 병무청장이 해양경찰순<br>경 모집선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순경<br>모집선발 후 병무청장에게 추천<br><br>☞ (참고)해양경찰청 홈페이지>뉴스소식>공지/<br>공고>해양경찰 전경 모집계획 알림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병역법 및 전투<br>경찰대 설치법<br>(‘13년 입영자부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병무청<br>현역입영과<br>(042-481-2738)<br>해양경찰청<br>운영지원과<br>(032-835-2736) |
| 4. 자녀가 있는 사람의<br>상근예비역 편입 범위<br>확대 | ○ 정상적인 가정에서<br>자녀를 양육하고<br>있는 사람에 한함<br>(이혼자, 미혼자 제외)   | ○ 자녀 출산 및 양육하고 있는 이혼자,<br>미혼자도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역병 입영<br>업무 규정<br>(‘13.1.1.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병무청<br>현역입영과<br>(042-481-2716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<br>분야 선박기준 조정       | ○ 승선근무예비역이<br>근무할 수 있는 수산업<br>분야 선박 기준 :<br>총톤수 200톤 이상 | ○ 총톤수 100톤 이상으로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병역법 시행령<br>(‘12.12.20.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병무청<br>산업지원과<br>(042-481-277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공익법무관 편입지원<br>시기 및 절차 개선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편입지원 시기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편입되는 해의 2월10일 까지</li> </ul> </li> <li>○ 편입지원 절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학교의 장 등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</li> </ul> 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편입지원 시기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편입되는 해의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</li> </ul> </li> <li>○ 편입지원 절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본인이 직접 병무청장에게 제출</li> </ul> </li> </ul> | 병역법 시행령<br>(‘12.12.20.)<br><br>병무청<br>산업지원과<br>(042-481-2771)             |
| 7. ‘유학’ 사유<br>국외여행 허가기간<br>제한연령<br>상향 조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‘유학’ 사유 국외여행<br/>기간연장은 28세를 초과<br/>하지 않는 범위에서 1년<br/>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</li> <li>○ 29세 되는 해 6월말까지<br/>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할<br/>경우 그때까지 국외여행<br/>기간연장 허가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‘유학’ 사유 국외여행 기간연장은 29세<br/>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년을 더한<br/>기간까지 허가</li> <li>○ 30세 되는 해 6월말까지 박사 학위 취<br/>득이 가능할 경우 그때까지 국외여행<br/>기간연장 허가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병역법 시행령<br>(‘12.12.20)<br><br>병무청<br>병역지원과<br>(042-481-2965)              |
| 8. 국외여행허가자의 국내<br>장기체제 시 허가취소            | 〈신 설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<br/>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이 ‘국외이<br/>주’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<br/>아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 3<br/>개월 이상 계속 국내 체제 시 국외여<br/>행허가 취소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병역법 시행령<br>(‘12.12.20)<br><br>병무청<br>병역지원과<br>(042-481-2965)              |
| 9. 「병역명문가 찾기」<br>접수시기 변경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접수 : 매년 3월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접수 : 매년 2월</li> </ul> <p>☞ (참고)병무청홈페이지&gt;공지사항&gt;달라진<br/>병역명문가 선양사업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병역명문가 선정<br>및 운영규정<br>(‘13.2월)<br><br>병무청<br>행정관리담당관실<br>(042-481-2992~3) |
| 10. 병역명문가 선정기준<br>조정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<br/>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<br/>을 병역명문가로 선정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남성이 없는 경우 군복무를 마친 모든<br/>여성 및 비군인 신분으로 6·25 전쟁<br/>에 참전한 사람 선정기준에 포함</li> </ul> <p>☞ (참고)병무청홈페이지&gt;공지사항&gt;달라진<br/>병역명문가 선양사업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병역명문가 선정<br>및 운영규정<br>(‘13년)<br><br>병무청<br>행정관리담당관실<br>(042-481-2992~3)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1. 예술경연대회<br>공동수상자 등에 대한<br>예술요원 추천기준<br>명확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예술요원 편입기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,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</li> </ul> </li> <li>※ 동점자, 공동수상자,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공동수상자에 대한 추천기준이 불명확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동수상자 등에 대한 예술요원 추천 기준 명확화</li> <li>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성적으로 2위이상 입상한 사람</li> <li>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성적으로 1위로 입상한 사람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| 병역법 시행령<br>(’13.1월, 잠정)<br><br>병무청<br>사회복무정책과<br>(042-481-3005)                     |
| 12. 사회복지시설 장의<br>직계비속 복무기관<br>지정 개선           | 〈신 설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직계비속인 공익근무요원은 같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지 아니하도록 복무기관을 지정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병무청 훈령<br>(공익근무요원<br>소집업무 규정)<br>(’13.1.1.)<br><br>병무청<br>사회복무정책과<br>(042-481-3007) |
| 방위사업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방산원가 계산 시<br>근로시간 상한 적용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계약상대자의 실제 발생한 노무비 전액 인정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근로기준법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상한을 초과한 작업시간 및 해당 작업시간에 대한 비용은 방산원가 계산 시 불인정</li> </ul> <p>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&gt;방위사업정보&gt;법령&gt;행정규칙</p> | 방산원가대상물자의<br>원가계산에<br>관한 규칙<br>(’13. 2월)<br><br>방위사업청<br>방산지원과<br>(02-2079-6445)    |
| 2. 방산원가 계산 시<br>생산성경영 인증에 대한<br>추가이윤 보상       | 〈신 설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산업발전법」에 따른 생산성경영 인증 취득 업체에 대해 인증등급 별 추가이윤 보상(최대 1%p)</li> </ul> <p>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&gt;방위사업정보&gt;법령&gt;행정규칙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| 회계처리 및 구분<br>회계 기준에<br>관한 훈령<br>(’13. 1월)<br><br>방위사업청<br>방산지원과<br>(02-2079-6445)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방산원가 계산 시<br>상용품 적용 등에 대한<br>인센티브 제공  | 〈신 설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용품 적용 및 상용·성능형 규격 전환 등을 통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부품 단가를 20% 이상 절감 시 향후 5년간 실적가격을 원가로 인정</li> </ul> <p>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&gt;방위사업정보&gt;법령&gt;행정규칙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동 시행세칙 ('13.2월)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(02-2079-6445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방산원가제도 개선을<br>통한 중소·중견기업에<br>대한 지원 확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방통합원가시스템 연계 비용은 2년간 일반관리비로 보상</li> <li>○ 방산원가 계산 시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</li> </ul>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소기업의 국방통합원가시스템 연계 비용 일부(50%)를 계약 시 직접 지원</li> <li>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인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방산원가 계산 시 중소기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</li> </ul> <p>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&gt;방위사업정보&gt;법령&gt;행정규칙</p>        |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동 시행세칙 ('13. 2월)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(02-2079-6445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방산원가제도 개선을<br>통한 방산수출에 대한<br>지원 확대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방산총원가 대비 수출액 비율에 따라 방산수출에 대한 이윤 보상</li> <li>○ 해외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필요 최소한의 비용 지원 (지원율 : 100%)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행과 같이 방산총원가 대비 수출액 비율에 따라 방산수출에 대한 이윤을 보상하되, 최초수출·수출확대 기업은 추가이윤(0.5%p) 보상</li> <li>○ 해외 시험평가비 지원기준 구체화, 지원범위에 유류·탄약비 추가, 업체 부담비율(10%) 설정</li> </ul> <p>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&gt;방위사업정보&gt;법령&gt;행정규칙</p> |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,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('13.1월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(02-2079-6445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중견기업에 대한<br>기술료 감면 확대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 2조의 중소기업인 경우 기술료 50% 감면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중견기업 중 그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액의 50% 감면</li> </ul> <p>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&gt;방위사업정보&gt;법령&gt;행정규칙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방위사업 관리규정 ('13.2월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방위사업청 수출진흥과 (02-2079-6454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. 「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」 개정 | ① 경찰용·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    | ○ 미적용대상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기관 항공기(경찰용·세관용)의 군 감항 인증 준용</li> <li>- 군용으로 개발 및 운용 중이던 항공기를 경찰 및 세관용으로 개조 시 비행 안전성을 국가에서 인증</li> </ul> <p>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&gt;방위사업정보&gt;법령</p> |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('13.3.19)<br><br>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 (02-2079-6707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기존 운용 중인 군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| ○ 미적용대상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법 시행이전('09.7.31)부터 운용 중인 군용항공기의 개조개량 시에 개조개량되는 부분의 비행안전성을 정부에서 인증 가능토록 함.</li> </ul> <p>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&gt;방위사업정보&gt;법령</p>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단계별 감항성 심사 구체화        | ○ 미구체화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정 법률 제4조제5항의 단계별 감항성 심사 절차를 설계단계의 형식인증과 양산단계의 생산확인으로 구체화하여 감항인증 절차의 투명성 제고</li> </ul> <p>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&gt;방위사업정보&gt;법령</p>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수수료 부과대상 확대           | ○ 수출용 군용항공기만 수수료 부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출용 군용항공기에만 부과하던 수수료를 국내판매용의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.</li> </ul> <p>※ 수수료율 : 판매가의 1/10,000</p> <p>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&gt;방위사업정보&gt;법령</p>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.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<br>확인체계 강화 | <신 설>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품질하자 예방을 위하여 신규조달 및 성능개량 품목 등에 대하여 시제품검사를 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 및 검사 절차 추가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<br>확인지침<br>(‘12.12월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신 설><br>○ 면제제의 규정 미운용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업체 요청 시 입찰공고 이전에도 시제품 검사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</li> <li>계약불이행업체, 규격면제업체를 업체 생산·정비능력 확인 면제 제외대상으로 명시하고, 면제제외 기간을 해당품목에 대한 새로운 납품실적이 있을 때까지로 규정</li> </ul> | 방위사업청<br>제도심사팀<br>(02-2079-4123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신 설>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업체 생산·정비능력 확인을 위한 설비 및인력 보유기준일 명시</li> </ul> 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경찰청</b>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경범죄<br>처벌법<br>개정시행      | ① 통고처분<br>대상<br>확대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7개 항목은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</li> <li>- 28개 항목은 즉결심판</li> <li>※ 통고처분 항목은 즉결심판도 가능하나 즉결심판 항목은 통고처분 불가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범죄처벌법<br>(‘12.3월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처벌행위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처벌근거 없음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찰청<br>생활질서과<br>(02-3150-1355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열차내<br>위반행위<br>즉시<br>단속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철도특별사법경찰은 단속권한이 없어 열차내 위반행위 즉시 단속 곤란</li> <li>※ 철도특별사법경찰이 현장 억류 후 정차역 인근의 지구대로 인계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45개 항목으로 통고처분 확대</li> <li>☞ 통고처분 대상이 되어 적발시 범칙금을 은행에 납부하는 것으로 형사절차 종료</li> <li>○ 관공서 주취소란시 60만원 이하 벌금, 구류, 과료로 처벌</li> <li>○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따라다니는 등 행위시 10만원 이하 벌금, 구류, 과료로 처벌</li> <li>○ 거리에 전단지를 뿌리는 행위시 10만원 이하 벌금, 구류, 과료로 처벌</li> <li>○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위반자에 즉시 통고처분 등 조치 가능</li> </ul> |



| 소방방재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다중<br>이용업소<br>화재배상<br>책임보험<br>시행                | ① 화재<br>배상책임<br>보험<br>의무가입<br>시기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시기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규다중이용업소 : 2013. 2.23부터</li> <li>- 기존다중이용업소 : 2013. 2.23 ~ 8.22 까지</li> </ul> </li> <li>※ 150㎡ 미만 휴게·일반음식점, 게임제공업 PC방,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. 2.23부터</li> </ul> | 다중이용업소의전<br>관리에관한특별법<br>및 동법시행령<br>(’13.2월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화재<br>배상책임<br>보험의<br>보험금<br>(보상<br>한도액)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(보상한도액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망자 1명당 최대 1억원</li> <li>※ 1사고당 사망자수 무한</li> <li>- 부상자 최대 2천만원 보상</li> <li>- 후유장애 최대 1억원 보상</li> <li>- 재산피해 최대 1억원 보상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| 소방방재청<br>소방제도과<br>(02-2100-5338)            |
| 2. 소방<br>공무원<br>채용시험<br>응시연령<br>상향 및<br>시험과목<br>변경 | ① 소방<br>공무원<br>채용시험<br>응시연령<br>상향<br>상향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: 21세 이상 30세 이하</li> <li>○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: 21세 이상 30세 이하</li> <li>○ 소방사 특별채용시험 : 20세 이상 30세 이하</li> <li>○ 소방장·소방교 특별채용시험 : 20세 이상 35세 이하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: 21세 이상 40세 이하</li> <li>○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: 21세 이상 40세 이하</li> <li>○ 소방사 특별채용시험 : 20세 이상 40세 이하</li> <li>○ 소방장·소방교 특별채용시험 : 20세 이상 40세 이하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방공무원<br>임용령<br>(’13. 1.1)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소방사공<br>개경쟁채<br>용시험<br>과목 변경            | ○ 필수(5과목) : 국어, 한국사, 영어, 소방학개론, 행정법총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필수(3과목) : 국어, 한국사, 영어</li> <li>○ 선택(2과목) : 소방학개론, 행정법총론, 소방관계법규, 사회, 과학, 수학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방방재청<br>소방정책과<br>(02-2100-5316)            |

| 산림청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 분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도입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〈신 설〉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입목·죽을 벌채·제재·유통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등록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<br>(‘13.5.24)<br><br>산림청<br>목재생산과<br>(042-481-4204, 8875) |
| 2. 산림 교육전문가자격증 발급 | ② 산림 교육 전문가 자격 증발급                  | 〈신 설〉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</li> <li>- 산림교육전문가는 숲해설가, 유아숲지도사, 숲길체험지도사를 말함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|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<br>(‘13.상반기)<br><br>산림청<br>산림휴양문화과<br>(042-481-4216)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③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                 | 〈신 설〉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</li> <li>- 숲해설가 전문과정(170시간이상), 유아숲지도사 전문과정(210시간이상),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(130시간 이상)</li> </ul> |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<br>(‘12.7.26)<br><br>산림청<br>산림휴양문화과<br>(042-481-4216)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3.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 지정범위 축소 | ○ 금지구역 3km | ○ 금지구역 2km로 축소<br><br>☞ (참고) 「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」 시행령 제3조의3,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<br>(‘12.12월)<br><br>산림병해충과<br>(042-481-4076)   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목재펠릿 보급 대상 확대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는 농산어촌 거주자만 설치 가능</li><li>주민편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용 목재펠릿 보일러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만 설치 가능</li>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도시 지역에도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가능</li><li>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편의 및 복지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민편의 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도 설치 가능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보급기준('13.1.1시행)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산림청<br>목재생산과<br>(042-481-4201)     |
| 중소기업청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협력 기술개발 사업 확대 | ① 구조 개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지역사업(지자체 매칭)</li><li>전국사업</li><li>국제사업</li><li>중점사업</li><li>기업부설연구소 사업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리지침('13.1월)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수요자 선택방식 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대학연구기관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공동연구개발 수행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소기업청<br>공정혁신과<br>(042-481-4453)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없 음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상시 지원체계 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연 1회 신청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신 설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지원분야 : 공동브랜드, 공동마케팅, 공동설비, 공동구매, 기술개발 등</li><li>지원업종 : 빵집제과, 세탁소, 꽃집, 이미용, 공예, 가구 등 10개 업종(시범운영)</li><li>지원규모 : 협동조합 당 일정규모(예시 : 1억원 한도) 한도 내(국비 80%, 자부담 20%)</li><li>지원절차 : 자발적협업체 신청→교육·컨설팅→조합설립→사업신청→선정→지원→성과평가</li></ul> | 2013년도 협업화 지원사업 공고('13. 1월 잠정)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소기업청<br>소상공인지원과<br>(042-481-4491) |

| 특허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달라지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법규<br>(제도 시행일)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계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중견기업 특허수수료<br>감면제도 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중견기업에 대한 특허수<br>료 감면제도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산업발전법상의 중견기업에 대해 특허<br>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료·심사청구료<br>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 30% 감면                | 특허료 등의<br>징수규칙<br>(’13.1.1.)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특허청<br>고객협력정책과<br>(042-481-5195)     |
| 2. 특허수수료<br>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<br>확대 및<br>자동화기기(ATM) 납부<br>특허수수료 확대 | ○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<br>청 금융기관 :<br>기업은행만 실시<br><br>○ 자동화기기(ATM) 납부<br>특허수수료:<br>연차등록료만 실시  | ○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을<br>농협은행으로 추가 확대<br><br>○ 자동화기기(ATM) 납부 특허수수료를<br>설정등록료로 추가 확대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특허청<br>고객협력정책과<br>(042-481-5195)     |
| 3. 특허청 인증체계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특허청 사설인증서 및<br>일반 공인인증서를 통한<br>전자문서 이용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특허청 사설인증서 발급 중단<br>○ 공인인증서만을 통한 전자문서 이용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특허법<br>시행규칙<br>(’13.1월)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특허청<br>고객협력정책과<br>(042-481-8238)     |
| 식품의약품안전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건강기능식품 부작용<br>추정사례 보고기관<br>일원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부작용 보고기관<br>- 보고기관 : 한국소비자<br>연맹(소비자), 한국건강<br>기능식품협회(영업자),<br>식품의약품안전청(의료<br>전문가) | ○ 부작용 보고기관 일원화<br>- 보고기관 : 식품안전정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건강기능식품에<br>관한 법률<br>시행규칙<br>(’13.1월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식품의약품안전청<br>영양정책과<br>(043-719-2257)  |